

arts change the world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 2010. 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2010년 7월 인쇄
2010년 7월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52-05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6-1 번지
전화 02-760-4500
팩스 02-760-4600
홈페이지 www.arko.or.kr
이메일 arko@arko.or.kr

본 보고서는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 및 인용시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라고
밝히셔야 합니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에 관한 문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

/ 2010. 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출 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귀하

본 보고서를 「건축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방안 및 표준조례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년 07월 21일

주 관 기 관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양현미

연 구 원 : 윤제, 윤태건, 이준형

연구보조원 : 최현주

연 구 조 원 : 안승기

목 차

제1장		
서론		13
1. 연구목적		14
2. 연구내용		15
3. 연구방법		16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19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근거		20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용대상		21
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와 방법		23
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현황		25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27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개편		29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		30
2. 개정안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편		33
3.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의 변화		36
4.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38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39
1.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40
2.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41
3.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43
4. 주요 조항 비교		53

5.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업무 표준화의 필요성	57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 사례	59
1. 조사개요	60
2. 국가별 해외사례 고찰	62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107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제도 개선방안	113
1. 심의제도 현황	114
2.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1
3. 심의제도 가이드라인	132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139
1. 사후관리 현황	140
2.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7
3.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49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169
1. 현행 법률과 개정안	170
2. 시행령 개정안	172
3. 표준조례안	183
참고문헌	191
부록	193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가이드라인	194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서식	201
3. 건축물 미술장식 표준계약서 사례	216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민원 Q&A	227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미술장식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별표2]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에 따르면, 이 제도에 의해 조성된 미술장식품의 수는 2009년 말 누계로 1만여 점이 넘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는 총 11,016 점¹⁾
 - 2006년부터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을 구축하여 미술장식품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가 효율적이지 않음
 - 연간 1,000점에 달하는 미술장식품이 설치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로 주기적인 점검과 필요한 보수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음
 - 8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8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표 1-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현황

구분	역할	비고	
중앙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법령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방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	6개 광역시 직접 관리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감독	

1)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www.publicart.or.kr

제1장 서론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조례가 자치단체마다 다르고 관리규정이 미비하여 심의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법인인 민간 건축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심의 신청시기, 심의주기, 심의방식 등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많아 지자체 담당자 및 건축주 등에게 혼란 야기
 -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망실, 훼손된 작품이 많고 관리 대응이 담당자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음
- 정부는 2009년 9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함
 - 민간건축주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례에 관련 조항 신설 필요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운영시스템 개선을 위해 한국문화예술회위원회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미술 전담조직의 역할에 따라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규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사후관리 방안과 표준조례안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장식 업무를 지원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연구내용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변화
 - 현행 법률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분석
 - 법률 개정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변화 분석
 - 보완 및 신규 제정이 필요한 조례 항목 도출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실태
 -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 설치절차에 따른 조례 및 운영실태 분석
 - 지자체 관리기준 보장 및 관리업무 표준화의 필요성 도출

제1장 서론

- 해외 사례 조사
 - 해외의 공공미술 조례 분석
 - 해외의 공공미술 사후관리 제도 분석
 - 기존 조례 보완 및 신규 제정에 필요한 조항의 유사사례 분석
- 심의제도 개선방안
 - 심의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 사후관리 개선방안
 - 사후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사후관리 개선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
 -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업무 표준화 방향
 - 건축물 미술장식품 관련 표준조례안 마련

3. 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
 - 지자체 관점에서 관리기준 강화 필요부분 자문
 - 건축주 관점에서 업무 표준화 필요부분 자문
 -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방안 관련 자문

〈표 1-2〉 자문위원

성명	현직
박범진	대림건설 과장, 건축물 미술장식품 주문설치 담당
신치현	공공미술 작가
안성희	경원대학교 공공디자인센터
김운기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디자인기획담당관 문화디자인팀
양시섭	경기도 성남시 문화정책과 건축물 미술장식 담당

제1장 서론

□ 지방자치단체 운영 실태조사

- (조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운영 실태 파악
- (조사대상) 16개 시·도
- (조사방법) 인터넷 검색
- (조사내용) 조례 제정여부, 심의제도, 사후관리 등

□ 해외사례 조사

- (조사목적)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표준조례안 마련시 시사점 도출
- (조사범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3~4개 지자체 조례 사례
- (조사방법) 인터넷 검색, 기관에 대한 이메일 조사
- (조사내용) 공공미술 조례, 공공미술 사후관리 매뉴얼 등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근거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용대상
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와 방법
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현황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표 2-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9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

- 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제13조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 제14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 제15조 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별표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 금액(제12조제5항 관련)

□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

-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 금액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 7월 7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보칙에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규제 재검토 조항이 신설되었음
- 2009년 9월 14일 정부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가 끝난 상태로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적용대상

1) 건축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함
-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표2-2>와 같은 10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함
- 건축물의 규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물을 말함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함

〈표 2-2〉 건축물의 종류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

2) 미술장식

- 미술장식이란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함
 -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3) 미술장식 사용금액

-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건축비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미술장식 사용금액 = 연면적×표준건축비×적용 비율

〈표 2-3〉 미술장식비용 산출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도 표준건축비 1,441,000원/㎡ - 연면적 10,000㎡ 건축비 14,410,000,000원 - 미술장식비용 1%일 경우 144,100,000원 - 미술장식비용 0.7%일 경우 100,870,000원 |
|--|

- 건축비용
 -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함
 -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¹⁾
 -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건축물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다름
 -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인가 혹은 그 외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인가에 따라 미술장식 비율이 다르며 다음 표와 같음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09.8.7] [대통령령 제21676호, 2009.8.6, 타법개정]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제5항 관련)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표 2-4〉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와 방법

1) 개관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설치절차는 크게 8단계로 구분됨

〈표 2-5〉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 8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설치의무 통보	미술장식 계획 수립 및 심의신청	심의	국세청에 신고	설치보고	설치확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사후관리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2) 세부 설치 절차

- 단계별 세부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음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표 2-6〉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절차

단계	설치절차
1. 설치의무 통보	- 자치단체장이 건축주에게 설치의무 통보
2. 미술장식 계획 수립 및 심의신청	- 건축주가 미술장식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 신청 <미술장식 계획 수립> -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 '심의 신청 시기까지' 수립 - 공간, 역사, 환경 분석 → 도면 및 설치장소 분석 → 설치장소 선정 → 작품의 설치방식 확정 → 작가, 작품 선정 및 계약 → 설치 계획서 확정 <작가선정 및 계약방법> - 작가선정 방법 : ㉠ 건축주가 직접 선정, ㉡ 중개업체 등을 통한 선정, ㉢ 공모를 통한 선정 - 계약(작가와 건축주 간의 체결) : 작품가격, 심의신청서에 필요한 작품계획안 제출시기, 작품의 제작과 설치 기한, 작품설치 후 일정기간 내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규정, 지불액수와 지불시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명시
3. 심의	-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심의
4. 국세청에 신고	- 자치단체장이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을 지방 국세청에 신고
5. 설치보고	-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장에게 보고
6. 설치확인	- 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의 설치여부 확인 ㉠ 계획안과의 비교를 통한 제작, 설치 여부 ㉡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안전한가의 여부 ㉢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도 여부 ㉣ 안내판 등 미술장식품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반 편의 조치 여부 ㉤ 기타 공공적 기능에 부합한지의 여부
7.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 절차 : 건축주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장은 사용승인 필증 교부(5일 이내) → 건축주가 자치단체장에게 미술장식품 관리대장 제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별자17]
8. 사후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단,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출처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www.publicart.or.kr)의 제도소개(제도운영) 참고.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수정.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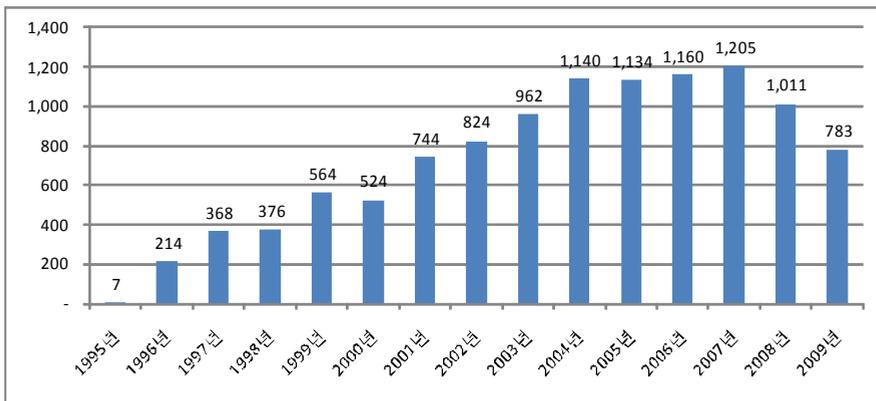
1)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

□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

-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는 총 11,016점

[그림2-1] 연도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1995~2009)

(단위 : 점)



자료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2) 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 건축물의 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 경기 3,052점, 서울 2,613점으로 수도권에 전체 미술장식품의 40% 이상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지역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1995~2009)

(단위: 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613	1,003	670	594	422	415	218	3,052	271	200	235	209	141	206	602	151	11,016

자료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3)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 미술장식품의 장르 구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은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장르를 벽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과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의 조형예술물로 구분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르를 기준으로 할 때 조각 8,094점, 회화 1,871점으로 대부분 조각이 차지하고 있음

〈표 2-8〉 장르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1995~2009)

(단위: 점)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계
1,871	8,094	23	17	42	65	7	8	13	1,020	11,160

자료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4)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통계

□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설치 현황

- 공공 건축주가 설치한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와 설치금액은 평균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 건축주의 경우에는 설치 건수는 평균 79%, 설치금액은 평균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9〉 건축주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2002~2008)

(단위 : 건)

연도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공공	115	207	107	103	100	124	140
민간	902	1,207	882	1,012	851	702	601
기타	39	45	210	32	197	974	106
합계	1,056	1,459	1,199	1,147	1,148	974	847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9

주1. 공공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정의에 따름

주2. 기타는 건축주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임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5.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현황

□ 중앙정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법령을 관리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 현재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은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8개 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제정,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8개 시·도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

〈표 2-10〉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관리 시스템 현황

구분		역할	비고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법령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운영	국고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	6개 광역시 직접 관리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감독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 심의의 공정성 미흡 및 사후심의 한계

-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심의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되다보니 심의위원 풀이 제한되어 심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함
- 현재의 심의제도는 설치 장소와 작가가 이미 결정된 미술장식 계획을 사후 심의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수정을 요구하는 이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 리베이트 문제 때문에 가격심의를 하지만 극단적으로 터무니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제2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 설치확인 및 사후관리 한계

-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력 부족 때문에 작가로부터 사진자료를 받아 서류철을 해두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작품이 파손되거나 위치가 옮겨지거나 간판 등으로 가려지더라도 시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미술장식품의 설치장소 변경은 심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술장식품의 철거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주변 환경의 변화로 조화가 되지 않거나 작품이 훼손되었는데도 그대로 설치할 수밖에 없음
- 미술장식품의 훼손 및 철거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벌칙 조항이 없어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

□ 중앙정부의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 부족

-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를 2006년부터 구축하여 미술장식품의 목록을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부족으로 미술장식품의 목록 확보, 관련 정보 수집, 사진 촬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 연구,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기반이 되는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 운영방식과 서식 다양

- 법인인 민간 건축주의 경우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자치단체마다 심의 절차와 관련 서식이 상이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의 개편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
2. 개정안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편
3.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의 변화
4.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

1) 개정경과

□ 개정배경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제고 하며 예술가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는데 이바지해 왔음
-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경제계의 규제 완화 요구와 관행적인 작품 설치, 리베이트,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미술계의 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문화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음

〈표 3-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 경과

시기	경과	비고
2009.5.19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7.10	건축물 미술장식 법제도 개선 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7.10	김효재의원 대표발의안	
2009.9.21~10.12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2009.9.30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9.11~2010.7	각 부처 및 분야별 의견 수렴	
2010.8	정부안 국회 상정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 2009 : 최근 입법추진 경과 추가

2) 정부 개정안

□ 정부 개정안

-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개정안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음

□ 개정대상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 개정방향

- 공공미술 개념을 도입하고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대신 ‘미술작품 설치’로 대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체함으로써 계속 논란이 되어온 용어의 한계를 극복함

-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하여 민간 건축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표 3-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대한 정부개정안(법제처 심사후)

개정방향	개정안	개정안 관련조항
미술장식 용어를 미술작품으로 변경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변경	제9조제1항
선택적 기금제 도입 통한 민간 규제 완화	- 민간건축주에 한해 선택적 기금제 도입 - 미술작품 설치 대신 더 낮은 비율의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함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기금관리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공공미술 진흥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공공미술을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	제18조8호

□ 미술장식 용어 변경 및 공공미술 개념 도입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고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로 변경함
- 공공미술을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공공미술 개념 도입

□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통한 민간 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 선택적 기금제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것 외에 소요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 적용 요율을 일정 정도 낮출 예정이어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게 됨. 또한 직접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건축기간이 단축되는 등 직·간접적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음
- 선택적 기금제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형식적·관행적 미술작품의 설치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민간 건축주의 법적 의무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의무 강화

- 정부개정안은 민간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도시경관 조성과 국민 문화향유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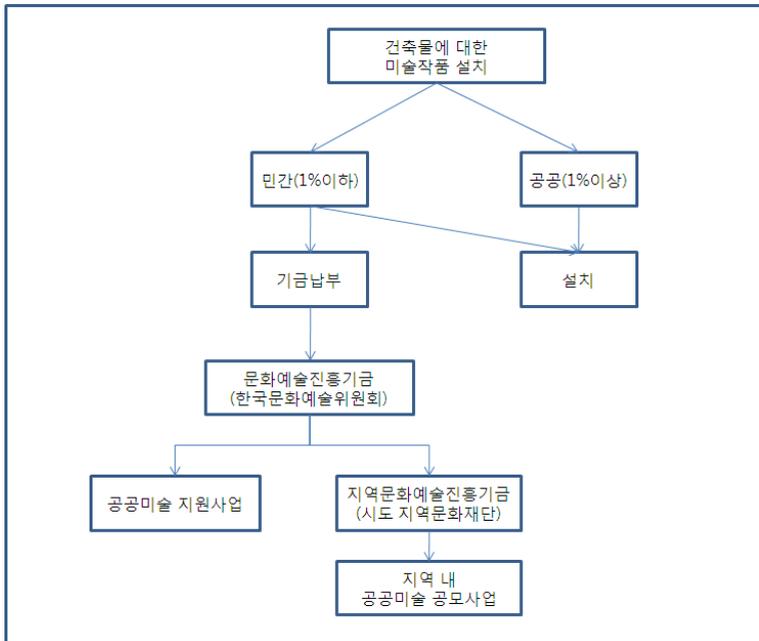
증진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미술작품 설치의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법률에 반영하지는 않았음

- 그러나 2000년 민간 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1% 이상이었던 미술작품 사용금액을 1% 이하로 하향 조정할 때, 해당 사항이 없는 공공 부문까지 적용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임
- 현재 0.7%인 적용 요율이 다시 1%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건축주가 되는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에 0.3%의 요율만큼 추가적인 소요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개선

-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에 공공미술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및 공공미술 관련 각종 조사, 교육,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그림 3-1]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변화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2. 개정안에 따른 관리시스템 개편

1) 기본방향

- 공공미술 관리시스템의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임
 - 민간건축주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도입되는 선택적 기금제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외에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에 공공미술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간시설에서의 공공미술, 공공미술사업 등을 촉진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공공미술 관리시스템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분담에 기초한 효율적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전환

2) 공공미술 관리시스템 개편방안

- 중앙정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시 문화환경 개선과 예술진흥을 위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공공미술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선택적 기금제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관리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며 공공미술기금은 법적으로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
- 지방자치단체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오던 조례 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사후관리 업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관할하도록 함
 - 그러나 사·도의 미술장식 제도 관리 역량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사·도 산하 지역문화재단에 위임하도록 함
 - 지역문화재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공공미술기금과 지자체의 매칭펀드를 근간으로 지역 내에서 공공미술 공모사업을 수행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표 3-3〉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시스템 개편방안

구분		현재 관리 시스템	개편안
중앙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법령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법령 관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운영	공공미술기금 관리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관리 사·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업무지원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운영
지방 자치 단체	광역시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사·도 산하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로 배분된 공공미술기금으로 공공미술 지원사업 운영 (광역시자치단체의 업무 위임 가능)
	기초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러한 개편방향에 입각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구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부서의 임무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미술의 진흥으로 규정할 수 있음
 - 공공미술 지원조직은 일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와 관련하여 기금운영계획,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지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관장
 - 건축물 미술장식 외에 공간시설에서의 공공미술 설치를 권장하고 있고 전반적인 공공미술 진흥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
- 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는 공공미술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선택적 기금제 운영
 -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지원
 -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관리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표 3-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지원 업무

구분	업무	비고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	선택적 기금제 관리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 관리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공공미술 사후관리 지원	지자체 지원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공공미술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공공미술 관련 조사연구 공공미술 교육 공공미술 관련 정보서비스	
기 타	공간시설에 대한 공공미술 설치와 관련된 업무 공공미술사업 통합관리 지역 이전 기관과 공공미술에 대한 공동프로젝트 수행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3.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의 변화

1) 기존의 시행절차

□ 기존 법률에 따른 시행절차는 8단계로 구분됨

〈표 3-5〉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 8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설치의무 통보	미술장식 계획 수립 및 심의신청	심의	국세청에 신고	설치보고	설치확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사후관리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지자체	건축주 지자체

2)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

□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

- 시행절차는 크게 설치와 기금납부 경로로 구분됨
- 시행관여 주체는 광역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위임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주임

〈표 3-6〉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절차 : 설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설치	설치 의무 통보	미술장식 계획수립 및 심의신청	심의	국세청에 신고	설치 보고	설치 확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사후 관리
	지자체 ↓ 건축주	건축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문화부 ↓ 국세청	건축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건축주	건축주 지자체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표 3-7〉 개정안에 따른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절차 : 기금납부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기금 납부	설치 의무 통보	기금 납부 신청	기금 납부 통보	국세청에 신고	기금 납부	기금 납부 확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지자체 ↓ 건축주	건축주 ↓ 지자체	지자체 ↓ 예술위	예술위 ↓ 문화부 ↓ 국세청	건축주 ↓ 예술위	예술위 ↓ 건축주 지자체	지자체 ↓ 건축주

□ 선택적 기금제에 의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시행절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자체 이관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
- 시행운영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임
- 공공미술 진흥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미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에서 사후관리를 담당

〈표 3-8〉 선택적 기금제에 의한 기금의 사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기금 사용	운영 계획 수립	기금 배분	지원 사업 공고	지원 신청	지원	지원 사업 평가	기금 사용 보고	기금 사용 평가
	예술위	예술위 ↓ 지역 재단	지역 재단	예술가 ↓ 지역 재단	지역 재단 ↓ 예술가	지역 재단 ↓ 예술가	지역 재단 ↓ 예술위	예술위 ↓ 지역 재단

제3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리시스템 개편

4.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 선택적 기금제 도입 관련
 - 기금납부 선택시 절차와 방법
 - 지역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 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 심의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
 - 광역자치단체에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시 전문가의 비율 제고
 - 심의위원회의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심의신청 및 통과 기한의 설정
 - 심의기간 내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기금출연 권장
- 사후관리 개념 확대 및 체계화
 - 시·도에서 미술장식품 대장을 생성·관리하도록 함
 -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데이터 제출 절차 마련
 - 지자체에 주기적인 관리 책임 부여
 -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 작품변경시 절차 마련
 - 미술장식품의 분실, 훼손시 조치 마련
 - 미술장식품의 철거 관련 규정 신설
- 지자체 마다 상이한 서식 통일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1.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2.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3.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4. 주요 조항 비교
5.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업무 표준화의 필요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1.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지방자치단체(광역 16개, 기초 230개)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 곳은 총 143개(광역8개, 기초 135개)임
- 서울특별시(25개 기초자치구)를 비롯하여 부산(16개)·대구(8개)·광주(5개)·대전(5개)·울산(5개)·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구에서는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가지고 있지 않고 광역시에서 통합하여 제정
- 경기도를 비롯한 8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광역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광역 조례와 함께 기초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시행규칙을 함께 제정하고 있는 곳은 광역7개, 기초 38개로 총 45개임

〈표 4-1〉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및 규칙 제정현황

구분	사·도 조례제정	시·군·구 조례제정	시·군·구 조례	
			제정	미제정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	7	3
경기도		○	31	0
강원도		○	16	3
충청북도		○	12	0
충청남도		○	13	3
전라북도		○	9	5
전라남도		○	12	10
경상북도		○	17	6
경상남도		○	18	2
제주특별자치도	○			
계	8	8	135	32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2. 광역자치단체 조례 현황

□ 조례 제정 현황

- 광역단체 16개 중 8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인천·제주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로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공통 조항

- 총 8개의 광역단체의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조항을 살펴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조항목록은 다음과 같음
 -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 미술장식 설치여부 확인
 - 미술장식 사후관리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조례항목을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여 조례를 세부적으로 구성
- 세부적으로 구성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조항으로는 기능, 구성, 위원의 해촉, 운영, 권한의 위임 등이 구성되어 있음
- 건축주가 서울시에 공모를 통한 미술장식품 선정을 의뢰할 수 있는 공모대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건축물 미술장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1년에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근거하여 미술장식품의 분실·훼손 현황을 파악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있음
- 시 차원에서의 공공시설 건축물 및 공원 조성 시 공공미술 설치 권장을 명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 다른 광역단체들이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통보’ 조항에 미술장식 심의신청 및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감정, 심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반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별도의 조항으로 ‘미술장식 감정·평가 신청 등’을 제정하여 조례를 구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조례항목을 설치, 구성, 임기, 직무,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의 각 6개의 ‘조’로 세분화 하여 구성
- ‘미술장식품의 지역작가 작품 설치 권고’라는 조항을 제정하여 제주미술인 육성을 위해 미술장식품 설치시 제주지역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의 경우 다른 지역의 조례에서는 볼 수 없는 ‘제8장 미술품 구입 및 관리’를 제정
- 이 조항의 내용은 시 차원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심의를 거쳐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입한 뒤 이를 시 본청 및 시 산하기관에 전시 및 보유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음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타 광역시의 조례들에 비해 조항들의 수가 적으며 내용 또한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음

〈표 4-2〉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구성 현황

광역자치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가격결정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시행 규칙
서울특별시	0	0	0	0	0	0	0
부산광역시	0	0	0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광주광역시	0	0	0	0	0	0	0
대전광역시	0	0		0	0		0
울산광역시	0	0	0	0	0		0
인천광역시	0	0		0	0		0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3.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 조례 제정 현황

- 230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135개임
-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명칭으로 제정하고 있음

1) 인천광역시

□ 조례 제정 현황

- 10개 기초자치단체 중 8개 단체에서 조례 제정
- 사후관리의 경우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 특이사항

- 연수구의 경우 광역단체들과 동일하게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미술장식 설치 조례를 구성하고 있음

〈표 4-3〉 인천광역시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시행 규칙
인천 광역시	중구	0	0	0	0	0	0	0
	동구							
	남구	0	0		0			0
	연수구	0		0	0	0		0
	남동구	0	0			0		
	부평구							
	계양구	0	0		0		0	0
	서구	0		0	0	0		
	강화군	0	0	0	0		0	
옹진군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2) 경기도

□ 조례 제정 현황

- 31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 제정
-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은 총 31개 중 4곳(12.9%)에 나타나고 있음

□ 특이사항

- 고양시, 부천시 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조례 조항을 제정

〈표 4-4〉 고양시, 부천시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조항

제6조의2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의 예치금) ①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미술장식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예치할 수 있다.

1. 위원회 심의에서 3회 이상 연속 부결된 경우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건축주가 미술장식설치 해당금액을 예치할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확인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 할 수 있다.

③건축주는 예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건축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설치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설치 예치금액으로 미술장식을 공모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모된 미술장식을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공공시설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04.4.1)]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표 4-5〉 경기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경기도	가평군	0	0		0	0	0	0
	고양시	0	0		0		0	0
	과천시	0	0		0	0	0	
	광명시	0	0		0	0	0	
	광주시	0			0	0	0	0
	구리시	0	0		0	0	0	
	군포시	0	0	0	0	0	0	
	김포시	0	0		0	0	0	
	남양주시	0	0			0	0	
	동두천시	0	0		0	0	0	
	부천시	0	0		0	0	0	0
	성남시	0	0		0	0	0	0
	수원시	0			0	0	0	
	시흥시	0	0	0	0	0	0	
	안산시	0			0	0	0	
	안성시	0	0		0	0	0	0
	안양시	0	0		0	0	0	0
	양주시	0	0	0	0	0	0	
	양평군	0	0		0	0	0	
	여주군	0	0		0	0	0	
	연천군	0	0		0	0		
	오산시	0	0		0	0	0	
	용인시	0	0			0	0	0
	의왕시	0	0	0	0	0	0	
	의정부시	0	0		0	0	0	
	이천시	0	0		0	0	0	
	파주시	0	0		0	0	0	
	포천시	0	0		0	0		
평택시	0	0		0	0	0		
하남시	0	0		0	0	0	0	
화성시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3) 강원도

□ 조례 제정 현황

-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3개로 16.6%를 나타냄
-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18개 중 12개(66.6%)의 자치단체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어 타 광역 단체보다 높은 제정율을 보임

□ 특이사항

- 정선군은 '감정' 조항을 제정

제 6조(감정) 위원회는 미술장식의 가격 또는 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또는 미술장식의 가격감정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표 4-6〉 강원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강원도	강릉시	0	0		0	0	0	
	고성군	0	0	0	0	0	0	0
	동해시	0		0		0		
	삼척시	0	0			0	0	0
	속초시	0	0		0	0	0	0
	양구군							
	양양군	0	0	0	0	0	0	0
	영월군	0	0	0	0	0	0	0
	원주시	0	0		0	0	0	0
	인제군							
	정선군	0	0		0	0	0	0
	철원군							
	춘천시	0	0		0	0	0	0
	태백시	0	0	0	0	0	0	
	평창군	0	0			0	0	0
	홍천군	0	0		0	0	0	0
화천군	0	0			0	0	0	
횡성군	0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4) 충청북도

□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북도는 12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조례 제정
- 시행규칙은 전체 중 1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하여 다른 광역단체들에 비해 낮은 수치
-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9개로 69.2%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특이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지 않은 '변경심의신청'조항을 제정한 자치단체가 13개 중 8개로 61.5%

제4조(변경심의 신청) 건축주는 심의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설치 미술장식 등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때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표 4-7〉 충청북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충청 북도	괴산군	0	0	0	0	0	0	
	단양군	0	0	0	0	0	0	
	보은군	0	0	0	0	0	0	
	영동군	0	0	0	0	0	0	
	옥천군	0	0		0	0	0	
	음성군	0	0	0	0	0	0	
	제천시	0	0	0	0	0	0	0
	증평군	0	0	0	0	0	0	
	진천군	0	0	0	0	0	0	
	청원군	0	0	0	0	0	0	
	청주시	0	0		0	0	0	
충주시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5) 충청남도

□ 조례 제정 현황

- 충청남도의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개에서 조례 제정
- 시행규칙은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제정

〈표 4-8〉 충청남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충청 남도	계룡시	0	0		0	0	0	
	공주시	0	0	0	0	0	0	
	금산군							
	논산시	0	0	0	0		0	
	당진군	0	0	0	0	0	0	
	보령시	0	0		0	0	0	
	부여군	0	0	0		0	0	
	서산시	0	0		0	0	0	
	서천군	0	0	0	0	0	0	
	아산시	0	0		0	0	0	0
	연기군	0	0	0	0	0	0	
	예산군	0	0	0	0	0	0	
	천안시	0	0		0	0	0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6) 전라북도

□ 조례 제정 현황

- 전라북도의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단체는 5개로 35.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타 지역 보다 높은 수치
-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1개인 7.1%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

□ 특이사항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나타나지 않은 ‘미술장식품의 투명성 확보’ 조항을 제정한 자치단체가 있음

제40조(미술장식품의 투명성확보) ① 미술장식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자는 당해 연도에 한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자치단체 관할지역내에서는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신설 2007.05.30>
 ② 금품제공, 표절, 불법 행위 등에 연루된 작가에 대하여는 2년간 작품출품을 제한한다. <신설 2007.05.30>
 ③ 작가 및 작품설명 등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한다. <신설 2007.05.30>
 ④ 건축주가 공개모집에 의해 미술장식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회의회 심의시 가점 10점을 부여한다. <신설 2007.05.30>

〈표 4-9〉 전라북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전라 북도	고창군	0	0		0	0	0	
	군산시	0	0		0	0	0	
	김제시	0	0		0	0	0	0
	남원시	0	0		0	0	0	
	무주군							
	부안군	0	0		0	0	0	0
	순창군							
	완주군	0	0		0	0	0	0
	익산시	0	0	0	0	0	0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0			0	0	0	0
	정읍시	0			0	0	0	
	진안군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7) 전라남도

□ 조례 제정 현황

- 2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2개 단체에서 조례 제정
-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12개 모두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

〈표 4-10〉 전라남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전라 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0	0	0	0	0	0		
	구례군								
	나주시	0	0	0	0	0	0		
	담양군								
	목포시	0	0	0		0	0		
	무안군	0	0	0		0	0		
	보성군	0	0	0	0	0	0	0	
	순천시	0	0	0		0	0	0	
	신안군								
	여수시	0	0	0	0	0	0		
	영광군								
	영암군	0	0	0	0	0	0		
	완도군								
	장성군	0	0	0		0	0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0	0	0	0	0	0		
	해남군								
	화순군	0	0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8) 경상북도

□ 조례 제정 현황

-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3개 중 1개인 4.3%로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
- 시행규칙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른 광역단체들과 달리 경상북도 광역에서 보이는 특별한 조례 조항은 없음

〈표 4-11〉 경상북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경상 북도	경산시	0	0		0	0	0	
	경주시	0	0		0	0	0	
	고령군	0	0	0	0	0	0	
	구미시	0	0		0	0	0	
	군위군	0			0	0	0	
	김천시	0	0		0	0	0	
	문경시	0	0		0	0	0	
	봉화군							
	상주시	0	0		0	0	0	
	성주군	0	0		0	0	0	
	안동시	0	0		0	0	0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0	0		0	0	0	
	영천시	0	0		0	0	0	
	예천군	0	0		0	0	0	
	울릉군							
	울진군	0	0		0	0	0	
	의성군							
	청도군	0	0		0	0	0	
	청송군							
	칠곡군	0	0		0	0	0	
	포항시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9) 경상남도

□ 조례 제정 현황

- 미술장식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는 20개 중 13개인 65%로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치
- 다른 광역단체들과 달리 경상남도에서 보이는 특별한 조례 조항은 없음

〈표 4-12〉 경상남도

광역	기초 자치 단체	미술장식 설치통보	설치여부 확인	미술장식 사후관리	가격결정	미술장식 건축비용 비율	미술장식 심의 위원회	시행 규칙
경상 남도	거제시	0	0	0	0	0	0	
	거창군	0	0		0	0	0	
	고성군	0	0	0	0	0	0	
	김해시	0		0	0	0	0	
	남해군		0					
	마산시	0	0	0		0	0	0
	밀양시	0	0	0	0	0	0	0
	사천시	0	0	0	0	0		
	산청군	0	0		0	0	0	
	양산시	0		0	0	0	0	
	의령군		0					
	진주시	0	0	0	0	0	0	
	진해시	0	0	0	0	0	0	
	창녕군	0	0		0	0	0	
	창원시	0	0	0	0	0	0	0
	통영시	0	0	0	0	0	0	
	하동군	0	0		0	0	0	
	함안군	0	0	0	0	0	0	
	함양군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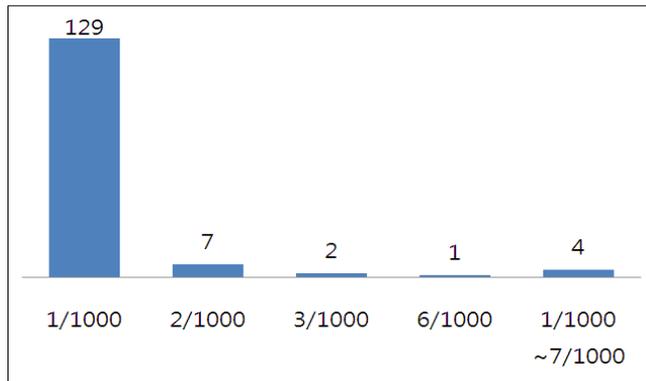
4. 주요 조항 비교

1)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

- 광역 자치단체들의 조례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이상으로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여수시(6/1,000), 포항시·김천시·함안군·연천군(1/1,000 ~ 7/1,000), 진주시·통영군(3/1,000), 남원시·괴산군·옥천군·청원군·청주시·음성군·충주시(2/1,000)를 적용하고 있음

[그림 4-1]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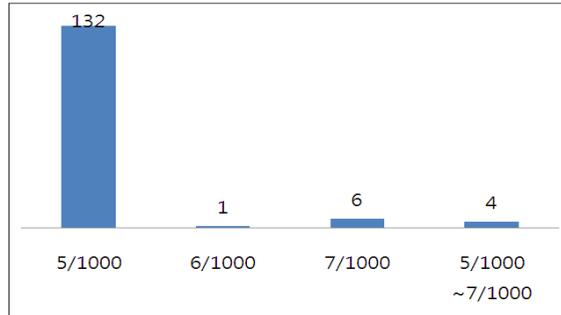


□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 비용의 비율

-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5/1000 이상으로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우 포항시·김천시·함안군·연천군(5/1000 ~ 7/1000), 충주시(6/1000), 진주시·남원시·괴산군·옥천군·청원군·청주시(7/1000)를 명시하고 있음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그림 4-2] 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현황



2) 미술장식심의

□ 심의위원회 명칭

-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혹은 미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하지만 연천군은 연천군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있음
- 포천시·동해시의 경우는 지방건축위원회가 이를 대신 수행하고 있음

□ 심의위원의 구성

- 서울시의 경우 8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 후 매 회의 시 13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 윤번제로 운영함을 명시하고 있음
- 대전시의 경우는 35인 이내의 위원과 11인의 회의위원, 울산시는 30인 이내의 위원과 11명의 회의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는 11명 이내의 위원 구성 등 광역자치단체들은 모두 다른 인원의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대부분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함. 광역단체의 위원구성은 심의의 공정성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위원을 구성할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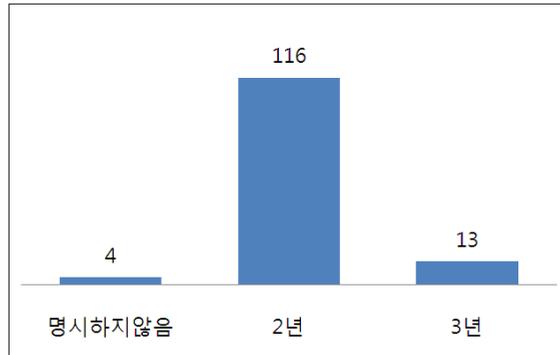
□ 심의위원의 임기

- 심의위원의 구성심의위원의 임기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년이며,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 반면 시흥시·고양시·광주시·군포시·김포시·안산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이천시·평택시·계룡시의 경우 임기기간이 3년임을 나타내고 있음
- 광명시·연천군·포천시·동해시의 경우 임기기간을 명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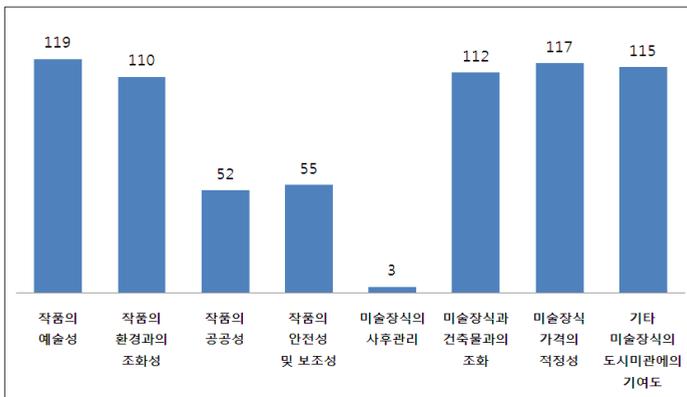
[그림 4-3] 자치단체 별 미술장식 심의위원 임기 기간 현황



□ 심의항목

- 심의위원회의 대표적인 기능은 미술장식물 심의로서 각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함
-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등 심의항목은 대체로 유사함

[그림 4-4] 자치단체 별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기능 항목 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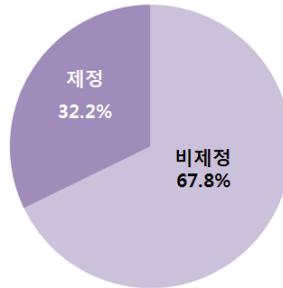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3)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조항은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의 광역자치단체와 4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고 있음. 이는 건축물 미술장식 관련 조례를 보유한 전체 143개 중 32.2%에 해당하여 아직까지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음
- 서울시의 경우 미술장식의 철거 및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제정하고 있음
- 나머지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와 동일하지만 ‘매년 1회 이상’과 같은 일정 기간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림 4-5]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조항 제정 현황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5. 지자체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업무 표준화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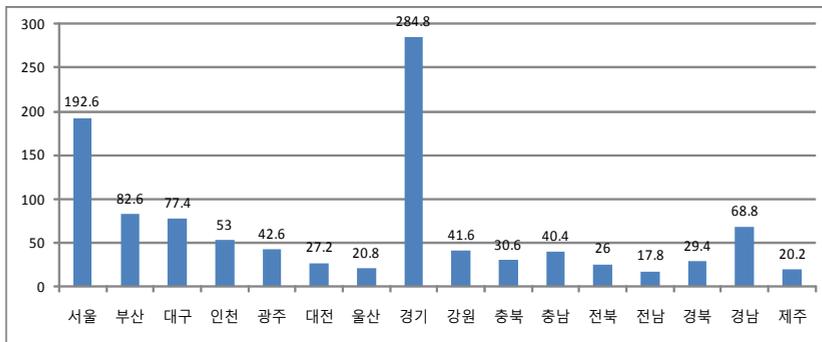
- 연간 미술장식품 설치 건수를 감안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를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이 낮음
 - 8개 지자체(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 제주)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도 관리
 - 연간 설치 건수를 감안할 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조성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도 관리시 오히려 행정력을 낭비하게 됨
 - 경기지역의 경우 조성건수가 많으나 기초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상이하여 건축주의 불편을 초래함

〈표 4-13〉 지자체별 연도별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건수

연도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05	222	108	50	55	33	48	19	373	26	16	43	15	19	25	76	6	1134
2006	172	125	84	56	55	38	32	296	51	41	47	39	22	35	49	18	1160
2007	274	77	144	86	38	24	23	272	43	40	39	26	14	25	52	28	1205
2008	187	78	64	32	47	16	18	232	37	29	37	31	22	36	126	19	1011
2009	108	25	45	36	40	10	12	251	51	27	36	19	12	26	41	30	783
총계	963	413	387	265	213	136	104	1,424	208	153	202	130	89	147	344	101	5,293
평균	192.6	82.6	77.4	53	42.6	27.2	20.8	284.8	41.6	30.6	40.4	26	17.8	29.4	68.8	20.2	1058.6

자료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그림 4-6〕 지자체별 연평균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건수



자료 : 건축물 미술장식 포털

제4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미술장식 조례 분석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여러 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민간건축주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관리업무의 표준화와 관련 서식의 통일 필요

〈표 4-14〉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절차에 따른 지자체 관리기준 및 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설치의무 통보	미술장식 계획 수립 및 심의신청	심의	국세청에 신고	설치보고	설치확인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사후관리
통보주체 통보방식 등	관련 서식 작성기준 첨부서류	심의시기 심의주기 심의자료 심의기준 심의위원 결과통보 재심의 등	행정절차 관련 서식	보고주체 보고시기 보고방법 등	확인주체 확인시기 확인방법 등	행정절차 관련 서식	관리주체 관리주기 관리방법 훼손대책 등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1. 조사개요
2. 국가별 해외사례 고찰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선진국의 경우, 주로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등과 연계, 예술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됨
- 그러나 설치 이후 노후, 안전성 등 여러 가지 사후 발생요인으로 인하여 공공미술작품들의 유지, 보수, 관리 등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음
- 작품의 설치 이후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제도적 모색을 하고 있는 선진국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조사대상

- 북미 지역 : 미국, 캐나다 (2개국)
- 유럽 지역 : 아일랜드, 잉글랜드 (2개국)
- 오세아니아 지역 : 뉴질랜드 (1개국)

〈표 5-1〉 해외사례 조사 지역

국가명		지역명
유럽	아일랜드	-
	잉글랜드	이스트켄트
북미	미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캠브리지, 위스콘신
	캐나다	밴쿠버, 토론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및 이메일 조사
- 참고도서 활용

□ 조사내용

- 전반적인 공공미술제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활용,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공공미술 개념
- 공공미술제도 관리기구
- 공공미술 커미션 방식
- 공공미술 심의제도
- 공공미술 사후관리(유지·보수, 매각·처분 등) 제도
- 계약서 및 관리대장 의무표기사항 등의 양식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2. 국가별 해외사례 고찰

1) 아일랜드¹⁾

가. 공공미술의 범위

□ 공공미술의 범위

- 전통적으로 공공미술이라 함은 주로 조형미술(대부분 실외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조소)로 한정적이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조형물과 그에 근접한 건축, 회화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오페라, 공연, 라이브 예술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의 예술(음악, 문학, 영화, 비디오, 멀티미디어, 사운드 아트) 등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음

나. 퍼센트제도

□ 규정

- 개별자본 예산계획(individual capital construction budget)에 관하여 다음은 필수사항임
 - 퍼센트제도 예산에는 전체 자본 예산 견적이 포함됨. 커미션 기관은 이것을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 끝내야 함
 - 퍼센트제도 예산은 한정된 것으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없음
 - 퍼센트제도 총 예산은 총 도시 건설비용과 관계하며, 아래 명시된 계산에 따라 조성됨

□ 재원조성

- 1997년 8월 아일랜드 정부는 모든 도시건설 프로젝트 예산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자금으로 1% 한도의 비용을 포함할 것을 승인함
 - 건설비용 원가가 €2,550,000 이내인 경우, 공공미술자금으로 건설비용의 1%(즉, €25,500)를 포함시켜야 함

1) "Public Art : Percent for Art Scheme_General national guidelines", <http://www.dast.gov.ie/pdfs/English-text5.pdf>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건설비용이 €2,550,000와 €6,300,000 사이인 경우, 공공미술자금으로 예산의 1% 이상 최대 €38,000 까지 허용
 - 건설비용이 €6,300,000와 €12,700,000 사이인 경우, 공공미술자금으로 €51,000 허용
 - 건설비용이 €12,700,000 초과하는 경우, 공공미술자금으로 €64,000 허용
- 커미셔너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나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건설자금에 대하여 명세서와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함

다. 작품 커미션 방법

① 공모

□ 공모를 통한 공개 커미션으로 작가들을 고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존 작품에 기초한 경쟁
 - 슬라이드, 카탈로그, 출판물, 비디오, CD 등 작가의 현재 경력에 따른 제출 물들을 전문 심의위원들에게 전달
- 익명의 공모(Open Anonymous Competition)
 - 익명의 공모 방법은 신진작가, 무명의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인
 - 심의위원들은 작가들에게 직접적인 접근을 할 수 없으며, 작품선정은 제출된 아이디어와 작품모형에 근거하여 결정함
- 위 방법들의 경우 선정자들이 구성되면, 최종선택이 되기 전에 선정된 작가들이 더 많은 조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경비가 지불됨

② 제한 경쟁

□ 매우 신중한 고려를 통해 공공미술 실무팀(the Public Art Working Group)에 의해 적합한 작가 명단 구성

- 커미션 기관, 지역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③ 직접 커미션 또는 직접 구매

- 커미션 기관은 공공미술 실무팀의 자문을 통해서 작가에게 직접 커미션하게 됨
 - 작가의 실연작품이 전적으로 커미션 목표에 부합한지에 대한 조사와 논의기간을 거친 후에, 공공미술 실무팀은 작가가 직접 책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나 커미션 할 수 있게 함
- 작가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직접 구매

라.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

〈표 5-2〉 공공미술 프로젝트 과정



① 계획(Planning)

- 공공미술 실무팀 구성
 - 공공미술 실무팀은 자본계획 초기 과정에 만들어져야 함
 - 이 단계에서 미술 전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공공미술 실무팀에는 최소한 2명의 미술 전문가가 있어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3〉 공공미술 실무팀 구성원

- 실제 작업 활동을 하는 전문작가(Professional practising artist(s)) (최소 1인이나 되도록 2인)
- 독립큐레이터(Independent Art Curator(s)) 또는 공공미술 관련 공무원(Public Arts Officer) 또는 지자체 예술담당 공무원(Local Authority Arts Officer)등과 같은 예술관련 자문(Artistic Advisor(s)) (최소 1 ~ 2인)
- 시공 사업 매니저(Construction Project Manager)
- 건축가 또는 기술자등과 같은 디자인팀 대표(Representative(s) of the Design Team such as Architect or Engineer)
- 건물사용자, 커미셔너 또는 이해당사자(Representative(s) of the Building Users, Client or Stakeholders)
- 기타 관련 전문가, 지역사회 및 단체 대표(Other relevant expertise or local social or community representatives)

– 공공미술 실무팀 역할은 다음과 같음

〈표 5-4〉 공공미술 실무팀 역할

- 프로젝트 자본 및 관련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에 부합하는 연구
- 커미셔닝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맞는 분명한 목적 및 목표 설정
- 작가의 업무개발, 심의기준과 조달과정 설정
- 심의위원 구성원 결정. 커미셔너가 프로젝트 심의위원 구성원에 공공미술 실무팀을 포함시키길 원하는 경우에는 계획 및 선정 단계에 참여할 수 있음
-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차후 단계 계획 및 관리·감독
- 리뷰 수행 및 커미셔닝 기관에 대한 공공미술정책 개발에 반영

□ 프로젝트 예산(Project Budget)

– 커미셔너는 새로운 작품을 커미션 할 때 다음의 모든 비용을 감안해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5〉 공공미술 프로젝트 예산 내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경비 및 재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 선정된 작가에 대한 경비 및 사례비 • 공공미술 실무팀 대표와 심의위원 사례비 • 작가와 커미션기관에 의해 초래된 조사 및 개발 비용 • 운송비 • 보험료 • 문서화, 정보, 교육 및 분류 등을 포함한 공증 계획비용 • 광고 및 홍보비용 • 리뷰 및 평가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리 비용 • 예비비 (약 5%까지 유용) |
|--|

② 작품심의 (Selection)

□ 심의위원 구성

- 심의위원은 공공미술 실무팀으로부터 구성되며, 최소한 실제 작업을 하는 전문 작가 1인과 예술전문 큐레이터 또는 자문위원 1인이 포함되어야 함. 심의위원이 4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예술전문가의 참여수가 더 많아져야 함
- 심의위원은 작품의 선정부터 평가과정까지 커미션 기관에 공개 보고해야 함
- 특히 작품선정에 실패한 작가들에게도 논평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신청서가 없더라도 적합한 경우, 차후에 다른 프로젝트 등에서도 선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③ 조사 및 개발(Research and Developed)

- 작가가 선정되면 일정, 예산, 성과물, 설치장소 등에 대한 조사 및 개발과정 등의 계획이 이루어짐
- 조사 및 개발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 차후 사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음

④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Realization)

- 계약 체결(Contractual Arrangements)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6〉 공공미술 작가와 계약체결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작가정보
- 참여정보
- 커미션 시공 및 제안된 완공일
- 프로젝트 / 커미션 설명 (첨부)
- 작업계획(지불계획서와 함께 첨부)
- 예산 명세서(연구 및 개발, 시행, 완공)
- 지불계획서
- 보고 및 협업 구조 (작가가 연락할 사람의 이름 및 계약 정보 전달)
- 진행과정 / 회의 일정
- 세금 정리(Tax Clearance)
- 저작권
- 보건 및 안정성(Health & Safety)
- 보험(Insurance)
- 독창성(Originality)
- 인·허가(Licences and permits)
- 신뢰도(Credits)
- 기록문서(Documentation)
- 기밀성(Confidentiality)
- 평가
- 작품의 설치, 전시, 공연
- 작품의 재배치, 재생산 및 재생 가능성
- 잠재적 판매(CD, 출판 등) 또는 작품 생산에 관한 비용 지급
- 개시 및 홍보
- 공공 정보 및 계약
- 보존 및 관리를 이행하는 위탁기관의 공개 기록 및 보존
- 서명

□ 지불(Payment) 계획 합의

-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커미션 기관과 작가 간의 협상과 동의로 지불계획이 결정되어야 함. 원칙적으로는 프로젝트 신청 준비 또는 개발, 컨셉 연구 및 개발, 재료 구매 또는 프로젝트 공연자 고용, 커미션에 따른 예술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수행하는데 따른 작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커미션기관은 프로젝트 진행처리와 요구 사항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초기 절차에서, 지명된 작가와 함께 명확하고 공유된 이해관계를 보증해야 함

□ 기록 및 정식 계약(Documentation and Public Engagement)

- 작가의 제안서부터 실현 및 실연, 설치를 통한 개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각 단계에 따른 모든 기록은 매우 중요함. 이 정보는 추후에 커미션 과정의 기록과 중요한 기록물을 제공하고 커미셔너들에게는 프로젝트의 계획, 방법,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기록물에는 기록문서, 사진, 비디오, DVD, CD ROM, 웹기반 정보, 멀티미디어 등을 포함함

- 커미션 분류표에는 가급적 공연 및 설치 장소나 시간에 대한 프로젝트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함. 이것은 작가 동의를 있어야 하며, 일시적인 공공미술은 또한 구상력 있는 간행물 형태로 유효기간 이후에도 가치를 가질 수 있음
- 완성된 프로젝트 작품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사진작가나 커미션 받은 예술가에 의해 사진자료를 기록하게 됨

□ 보존 및 관리(Conservation and Care)

- 영구적인 작품인 경우, 작품의 지속적인 관리는 장기보존과 계약(public engagement)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커미션 기관은 커미션하거나 구매한 모든 작품을 퍼센트제도 하에서 유지해야 함
- 작품이 없어지거나 손상되지 않게 정기적인 점검이 진행되어야 하며, 작품을 이전시키거나 보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커미션 받은 작가의 자문과 지시 하에 전문가가 실행해야 함
- 이러한 모든 유지보수 프로젝트를 위하여 연간 예산 안에 예비비를 만들도록 하고 있음

□ 관리대장(Inventory)

- 작품에 대한 정보 공개는 퍼센트제도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
- 커미션 기관은 커미션을 받은 작품 정보(DB)를 관리해야 하며, 지역 도서관이나 기관 웹사이트 등과 같이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쉽게 해야 함
- 관리대장에는 구체적인 커미션 사항과 전문 사진가나 작가에게 제공 받은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
- 커미셔너는 작품 상태를 체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된 일부 세부점검사항 또한 계속 기록해야 하며, 공개기록이나 프로모션에 대한 사항도 기록되어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7〉 공공미술 관리대장 기록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명 • 작가명 • 커미셔너 • 커미션일 • 완성일 • 설치 및 공연 지역 • 규모 / 범위 • 재료 • 총 사업예산 • 자금출처 • 작가 약력 • 프로젝트 매니저 • 기타 전문가 • 계약자 •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한 연락처 • CD, 사진, 기록문서 등의 커미션 관련 서류

□ 저작권(Copyright)

– 저작권 및 관련 법령(Copyright and Related Act 2000)에 따름

⑤ 평가(Review)

-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검토 및 평가 방법이 프로젝트 초기에 만들어지고, 동의 되어야 함
- 커미션 과정의 각 단계별로 정리된 서면 문서를 포함한 기록물은 전반적인 검토를 위한 근거로 제공될 것임. 공공미술 실무팀이 프로젝트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찾고 평가함으로써 향후에 개선될 수 있음. 작품선정과 각 개발 단계 결과의 강점, 약점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야 함
- 커미션 기관은 공공미술 정책개발,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리와 함께 사업시공 단계를 포함, 향후 프로젝트나 공공미술 프로그램에 대해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정보는 특히 커미션 절차를 처음 접하는 커미션 기관에 매우 가치가 있음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8〉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평가항목 예시

- 어떤 작업을 왜 했는가?
- 어떤 작업을 왜 안 했는가?
- 프로젝트 목표와 의도에 부합했는가?
- 커미셔너 견해에 달성했는가?
- 작가 견해에 달성했는가?
- 어떤 반응과 피드백이 있었는가?
- 이 프로젝트의 작업 경험을 통해서 작가는 예술적 발전이 있었는가?
- 양질의 작품을 위해 대중의 참여가 허락되었는가?
- 이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프로젝트를 위해 그려진 제안 사항 등은 무엇인가?

2) 잉글랜드 (이스트켄트)

가. 개념

□ 공공미술

- 금속, 나무, 유리, 섬유, 조명, 사운드, 텍스트 등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공공장소에 설치(street furniture 포함)된 것을 말함
- 공공미술이라 함은 영구작품 또는 임시작품, 작품 기반의 이벤트, 연구, 참여 프로젝트도 포함됨

나. 공공미술작품의 처분 정책²⁾

① 처분계획

□ 처분

- 작품이 본래 설치 장소에서 해체되는 것을 의미함

□ 커미셔너 목적

- 커미셔닝 기관은 작품을 커미셔닝 하는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해서 작품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2) 'Decommissioning Public Art A Policy for East Kent Local Authorities', 2006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즉, 공공미술작품을 보존관리 대상인 시의 소장품으로 볼 것인지, 위험도와 손상도가 평가될 대상인 공공장소에서의 구성요소로 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안

- 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함
- 작품기간 기준 (임시 - 설치 후 5년까지, 중기 - 설치 후 15년까지, 장기 - 설치 후 50년까지)에 따라 그 방식을 달리 명기하고 있음
- 유지관리 방식
- 작품 처분과 처리 방식

□ 검토과정

- 검토과정의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과정의 투명성
 - 논의에 대한 충분한 시간
 - 전문가들의 참여
 - 작가들의 참여
 - 핵심적인 사안에서 적합한 근거 자료 수합
 - 과정의 자산화
 - 과정의 문서화 및 작품의 시각자료화
- 작품 처분과 관련해서는 평가단(Review Group)이 결정하며, 구성원은 다음과 같음
 - 관련책임 부서의 작품 설치/철거 담당자(nominated Officer with responsibility for commissions/decommissioning)
 - 타 위원회 직원(예. 도시 디자인, 기획, 엔지니어링 등)
 - 위원회의 보건·안전 관리 담당직원, 또는 유지(Maintenance), 부지(Estates) 관련 대표자
 - 작가
 - 외부 예술전문가(작가, 큐레이터, 공공미술 컨설턴트 등)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추가적으로 다음의 패널들도 포함 될 수 있음 : 특별 책임자 등에 의해 선정된 임원, 지역, 학교, 기타 관련 기관 관계 대표자 등
- 평가단 역할
 - 평가단은 작품의 상태 등을 살펴보고 논의에 따라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림

〈표 5-9〉 평가단이 작품 처분 결정시 검토해야 할 사항

- 물리적 상태(외관, 소리, 안전성 등)
- 상황의 타당성(작품 설치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타당한가?)
- 접근성(작품이 물리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여전히 처음 의도했던 바와 가까운가?)
- 예술적 가치(작품 완성 이후 작가의 의도가 훼손되었는가? 작품이 현재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 협의 결과(이해 관계자와의 논의에서 나온 결과인가?)

□ 작품 처분 절차

- 평가그룹이 작품을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처분에 대한 절차와 동의를 구해야 함
- 이 단계에서는 특히 자금을 대한 확인절차가 중요함
- 작품파기는 최후의 방안으로 선택해야 하며, 그 옵션은 다음과 같음
 - 이전 설치(이전에 논의되었던 장소 등)
 - 철거 또는 타 기관에 기증(자선단체나 학교)
 - 철거 및 보관(작가나 기타 타인에 의함)
 - 해체·파괴. 재활용 가능한 재료는 작가에게 기증

□ 작품처분 비용

- 평가단 회원의 경비 지불 비용에서부터 대규모 작품의 물리적 파괴나 철거 비용까지 작품처분 비용은 매우 큼
- 따라서 작품처분에 대한 비용 계획은 프로젝트 초기에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산 계획을 해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② 긴급처분

- 반달리즘과 파괴 등의 긴급 사유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은 평가단의 논의 없이, 지명기관(nominated officer)이 직접 할 수 있음
- 단, 가장 극단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하며, 지명기관은 반드시 작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를 반드시 남겨야 함
- 작품을 처리하면서 생기는 자재들은 우선적으로 작가들에게 전달됨

3) 미국

가. 샌프란시스코

① 공공미술 정책

- 공공 미술 육성 조례에 따른 정책
 - 샌프란시스코의 공공미술은 미술 육성 조례(Art Enrichment Ordinance)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구입하거나 만들어진 작품들을 의미하며, Public Art와 Art Enrichment라는 용어로 쓰임
 - 샌프란시스코 시가 정의하는 미술작품이라 함은, 회화, 드로잉, 벽화, 스테인 글라스, 동상, 조각뿐만 아니라,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환경미술작품 또는 기념비, 분수, 아치, 장식이나 기념으로 만든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캐릭터,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부분적이고 기능적인 건축요소, 비디오 및 미디어 기반 작품 등이 포함됨
 - 미술육성조례는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프로그램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행정법(San Francisco City Administrative Code) 3.19항에 명시되어 있음. 이 조례에는 도시건설 범위(시 건물, 교통개발, 공원 조성, 지상 구조물 등)에서 총 건설비용 예산의 2%(2% of gross estimated construction cost of a wide range of civic construction)를 작품 취득에 배당하도록 세부적인 공제항목과 함께 명시하고 있음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재원이 승인되면, 예술위원회는 각 프로젝트에서 작품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총 비용의 5%까지 비축하고 사용할 수 있음(Section 3.19 (f) of the Administrative Code)

□ 민간 개발자를 위한 1% 제도

-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C-3 구역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술작품을 위해 1%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작가선정은 토지개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이는 도시계획부(Department of City Planning)가 감독함. 기획인력(Planning staff)은 미술작품이 공개적으로 접근될 수 있고, 공공미술 허용 범위 내에서 건설비용의 1%가 되도록 함. 그러나 공개 절차나 예술위원회승인(Art Commission approval)을 거칠 필요가 없는 이러한 미술작품이 시의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님. 1%는 프로젝트 건축가에 의해 제안된 건축 장식물에는 사용될 수 없음

□ 공공미술작품 관리 프로그램, 아트케어(Art Care)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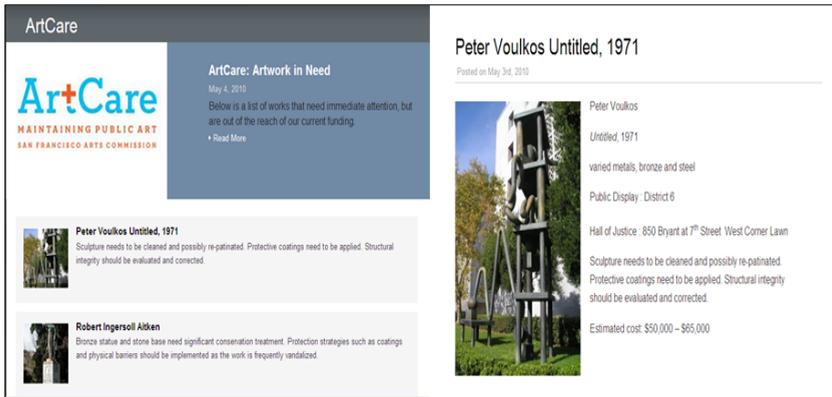
- 아트케어는 샌프란시스코예술위원회(San Francisco Arts Commission)가 민간 기구인 샌프란시스코화상협회(San Francisco Art Deal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시 소유의 미술작품 보존 관리를 위해 만든 재단임
- 1932년 샌프란시스코 헌장(the 1932 San Francisco Charter)하에 설립된 예술위원회는 시의 소장품(Civic Art Collection)에 있는 모든 미술작품들을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 1969년 새로운 공공 시설물 및 시민 공간을 위해 미술작품을 주문하고 취득하기 위한 보증기금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예술진흥조례(Art Enrichment Ordinance)가 제정된 이후, 3,000점 이상의 작품들(약 9,000만 달러 초과)을 수집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는 주요 문화 목적지가 됨
- 그러나 새로운 작품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는 법이 복잡했기 때문에, 기존의 소장품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시의 재정위기로 작품 관리를 위한 충분한 자금도 준비되지 않았음. 또한 시가 이러한 방대한 업무를 모두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작품의 더욱 적극적인 관리계획이 요구됨

3) <http://www.sfartscommission.org/pubartcollection/artcare/2010/05/04/artcare/#trackbacks-count>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시의 미술 소장품 설립 80주년에 가까워진 이 시점을 아트 케어 재단을 설립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작품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하여 보존하고자 함
- 루스 브라운슈타인(Ruth Braunstein)을 선두로, 샌프란시스코 미술상인협회가 예술위원회에 접근하여 설립한 아트케어라는 상호 유익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공함
- 아트케어의 미션은 예술 열정을 가진 시민들과 그들에게 다가갈 미술작품을 가진 컬렉터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소유권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임. 이러한 작품들은 근린지역 또는 비즈니스 구역에 설치될 수 있으며, 컬렉터들은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작가의 작품을 복원할 수 있음
- 샌프란시스코에는 현재(2010년 기준) 8,600만 달러 상당의 약 3,500점의 소장품이 있으며, 전 소장품을 관리하는데 연간 약 15,750달러의 비용을 할당하고 있음

[그림 5-1]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관리 프로그램



② 심의제도

□ 심의방법

- 직접구매, 공모, 제한적 공모, 작가고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 심의위원의 구성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심의위원회는 예술위원회가 임명하며, 일반적으로 베이지역(the Bay Area) 내부 인사로 구성하나, 전문성이나 외부의견을 듣기 위해 외부인사를 고용하기도 함
- 사업예산 5만 달러기준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 5만 달러 이상 : 전문가 수준의 3인(가능한 1인은 지역사회나 사업지지자로 구성), 예술전문가인 지역사회인 1인, 예술위원회(시각예술위원) 대표 1인, 대행업체 대표 1인, 건축 디자인팀 대표로 구성
 - 5만 달러 이하인 경우 : 공공미술사업관리부(Public Art Project Manager, PAPM)⁴⁾는 선발 후보 작가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공고를 없애고, 클라이언트 기관(the client agency) 대표, 객원 예술전문가 및 예술위원회 대표로 이루어진 약식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함. 심의위원단을 구성하는 대신, PAPM는 시각예술위원회가 작가나 작가 명단을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 참여

- 시각예술위원회와 심의위원의 모든 회의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 PAPM은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역사회 대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진행

③ 공공미술의 사후관리 정책⁵⁾

□ 기증을 통해 취득한 작품의 경우

- 기증 관련 비용(Costs Associated with the Gift): 기증 관련 모든 비용은 기증자 책임으로, 디자인, 엔지니어링, 건축허가, 제조, 설치, 일반 보험 및 관리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받침대(pedestal), 등록번호 판(identification plaque), 구조적 지원 및 조경지의 디자인 및 비용에 대한 책임과 작품을 위한 관리기부금도 내야 함. 위원회는 또한 프로젝트의 조정 및 감독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리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음
- 관리기부금(Maintenance Endowment): 기증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실외 작품에 충분한 기부금이 요구됨. 관리기부금액은 프로젝트 초기에 기부자

4) 공공미술사업관리부(Public Art Project Manager, PAPM)는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사업관리를 위해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

5) 'San Francisco Arts Commission Civic Art Collection Policies and Guidelines', <http://www.sfartscommission.org/pubartcollection/wp-content/uploads/2009/10/Civic-Art-Collection-Guidelines-Revised-October-2009.pdf>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와 협상되어야 함. 크기, 재료, 위치, 작품 가치 및 반달리즘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관리기부금 결정이 고려됨

□ 소장품인 경우

- 공개 디스플레이에서 철거(Removal from Public Display)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
 - 공개 전시의 재배치(Relocation of Public Display): 작품을 원래 장소에서 철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그 상태가 재설치(re-installed)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동일한 다른 대체 장소를 모색하게 됨. 미술작품이 어떤 특정 장소를 위해 설계된 경우, 작가의 의도에 맞는 새로운 장소에 작품을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장소가 정해지거나 위원회가 작품 매각·처분을 결정할 때 까지 작품을 보관
 - 매각·처분
- 매각·처분(De-accession)
 - 일반적으로, 예술작품들은 취득 10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위원회의 정책임. 예술위원회는 공익과 소장품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작품을 매각 처분하게 됨
- 작품의 판매 및 교체(Sale or Exchange of Artwork) : 위원회는 시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품을 판매·교체할 수 있음(Sec. 2A,150.1 of the San Francisco Administrative code)
 - 교체(Exchange) : 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임원의 2/3가 승인 결정하는 경우, 구매자 동의에 따라 작품을 변경할 수 있음
 - 공개 경매를 통한 판매(Sale at Public Auction) : 위원회 관할 하에 미술작품은 공개옥션에서 최고 입찰자에 판매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매매 목적의 전문 경매인(a licensed auctioneer)과 계약을 하게 됨. 계약서에는 경매인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이 기입되어야 하며 매매 주도 이용약관도 필요함
 - 민간판매(Private Sale) : 작품을 공개 경매에 제출하고 입찰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입찰이 거부되는 경우, 위원회는 작품의 민간판매를 통해 시의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이득을 더 얻을 수 있다고 임원 2/3이 투표하는 경우, 민간판매를 결정하게 됨. 작품의 민간판매에 대한 계약은 구매자의 승인에 따름. 입찰이 거부된 작품은 이후에 최고 입찰가 미만의 금액으로 판매되지는 않음

- 작품의 변경(Alteration), 개조(Modification), 훼손(Destruction) : 작품의 보존 및 보호는 주로 샌프란시스코 시민의 관리 하에 예술위원회가 주요한 책임을 지님. 그러나 캘리포니아 예술보호법 (the California Art Preservation Act, CAPA, Civil Code 987), 시각예술작가 권리법령(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of 1990, VARA (17 U.S.C. 106A and 113 (d)), 또는 시와 계약 관계에 있는 작가에 따라, 위원회는 작품을 교체·변경·철거할 수도 있음
- 조건(Conditions) : 작품의 기능이나 디자인에 결점이 있는 경우 또는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 작품이 대중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어떻게든 샌프란시스코시의 잠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 작품의 상태가 안전에 위협률이 너무 높아서 훼손이나 파괴의 위험이 불가피한 경우, 문화부(Director of Cultural Affairs)는 ‘긴급철거’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시가 공공 공사 및 개선, 시 운영 등을 위하여 불가결한 판단이라고 위원회가 간주하는 경우
- 선택 사항 제시 : 위의 어떤 이유에서라도, 시가 작품을 이전, 변경, 철거해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의 의도와 가능한 선택 개요(작가에게 권리양도, 저작권 포기, 변경, 개조, 철거) 등 타당한 설명을 등기우편으로 작가에게 알려야 함

나. 필라델피아의 공공미술프로그램

□ 개요

- 필라델피아는 미국 내에서는 퍼센트제도를 적용, 신도시 개발에 공공미술프로그램을 도입한 최초의 시임
- 필라델피아에서는 개발자, 건축가, 작가 간의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담당부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건축, 조경, 환경 등 공공장소에서의 각 분야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조형예술위원회 구성

- 재개발사업 기획위원회(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Redevelopment Authority) 자체 내에 총 10인의 조형예술위원회(Fine Arts Committee) 구성
 - 재개발사업 기획위원회 직원 2인
 - 작가 2인
 - 예술전문가(예술사학자, 예술행정가 또는 콜렉터, 큐레이터, 박물관 기획자 등 4인)
 - 디자인 자문위원을 대표하는 등록 건축가 1인
 - 등록 조경건축자 1인
 - 경영 기획자, 재개발 담당자
 - 기획자, 조형예술프로그램 및 디자인 자문위원, 재개발 당국
- 위원회 위원은 책임감이 있고 교육, 경험, 관심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음
 -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거나 고용된 자
 - 현대예술이나 작가의 최근 경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건축·조경·도시 계획 관련 지식이 있는 자. 시각예술가의 경우, 기술 및 재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
 - 적극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 문장이나 언변의 의사소통 소질이 있는 자
 -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조형예술위원회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재개발 지역, 작가 스튜디오, 제조공장 등에 방문요청이 있는 경우도 있음
 - 위원회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재정 또는 기타 이익과 관련하여 어떤 선거에도 출마해서는 안 됨
- 위원회는 작가 승인, 사전 검토, 컨설턴트, 심의위원, 및 작품심의과정 등 전반적인 책임을 지니며, 필요한 경우, 건축개발부(Redeveloper and Architect)가 작품선정과정, 컨셉, 신청 등을 조직하는 것을 도와야 함
- 또한 설치장소 분석을 제공, 적절한 환경과 작품의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정책과 절차(Policies and Procedures)’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계 됨

□ 공공미술 심의위원 구성

- 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행정가 또는 공공미술전공 컨설턴트와 같은 전문가(Consultant) 고용
- 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행정가, 작가, 건축가, 조경전문가, 학자, 비평가, 콜렉터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Panel) 조직. 심의위원은 최소 3인의 시각예술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 심의방식

- 인증 받은 예술전문가(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 관리자 또는 전문 컨설턴트 등)인 ‘컨설턴트’와 서비스 유지
- 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 관리자, 작가, 건축가, 조경건축가, 학자, 미술평론가 또는 콜렉터 등으로 구성된 시각예술전문가 ‘심의위원 (Panel)’구성
 - 심의위원은 적어도 3명 이상의 시각예술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단, 재개발자, 건축가, 기획자는 심의위원을 감독하는 비-투표 전문가로 활동함
- 작품심외과정(Art Selection Process)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부서(Authority)에 대체계획(Alternate Plan) 제출
 - 대체계획서(Alternate Plan)는 위원회(Committee)의 사전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되며, 위원회는 컨설턴트, 심의위원 또는 대체계획서의 선택과 작가심외과정을 수행하기 위한 재개발자의 방안을 승인해야 함
- 심의위원은 재개발자와 사업 수행에 대한 계약, 다음의 작품 심의 과정에 따라 임무 수행
 - 직접선정 - 재개발자는 위원회와 작품심외절차를 통해서 혹은 위원회가 제출한 승인서를 통해서 선정 작가에게 동의서를 제출함
 - 공모 - 재개발자는 작가가 제출한 이력서, 이전에 완성했던 작품 슬라이드 등을 제출 받음. 지역, 국내/외 유명작가들은 공모 응모에 추천받을 수 있음. 심의위원이 작가 선정. 단, 도면, 모형 등 작가 관련 제출 자료에는 작가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아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초대 공모 - 재개발자가 위원회로부터 3 ~ 5명의 작가에 대한 사전 제안서를 받음. 지역, 국내·외 유명작가들은 공모에 초청 받을 수 있음. 이 때 작가선정은 위원회와 재개발자가 하게 됨

〈표 5-10〉 심의방식에 따른 작가 선정방법 (필라델피아)

직접선정	위원회 승인요청 후, 재개발자 동의
공모	공모에 응모된 작가의 자료들을 심의위원이 직접 선정
초대공모	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위원회와 개발자가 선정

□ 유지·보존, 관리 정책

- 재개발 사업부의 1%제도 하에서의 공공미술작품 취득은 개발자나 소유주가 작품이 설치된 처음 상태로 영구적으로 전시하고, 유지 보호하는 것 등도 포함하는 의미임. 따라서 작품의 통상적인 유지·보존 책임은 재개발자 혹은 작품 소유자에게 있음
- 작가는 재개발자와 계약을 할 때 보존여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함. 계약서에는 작품 보수에 대한 책임기간 및 장단기 보존·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함. 작가는 작품의 장기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전문적인 보존 관리자를 소개할 수도 있음

다. 캠브리지 예술위원회의 보존·관리 프로그램⁶⁾

□ 개요

- 캠브리지예술위원회는 1996년 ‘종합적인 보존·관리 프로그램(a comprehensive conservation & maintenance program)’을 설립
- 보존관리에 대한 이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있었음
- 보존 관리를 위한 첫 번째 난관은 공공미술 ‘소장품(collection)’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명이었음

6) edited by the Cambridge Arts Council,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2002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작품에 대한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모든 퍼센트제도에 책임을 지고 시 소유의 공공미술작품 기금은 시가 책임지고 관리하기로 결정하고, 가능한 작품 관련 정보들(작가 계약 관련 자료, 작품의 제목, 설치 날짜, 크기, 재질, 커미션 자금, 자금출처, 사진, 도표, 지도 등)을 모으고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시작함
- 작품의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작가로부터 구체적인 정보, 요구사항 등을 수집하기 시작, 특정한 양식을 개발하여, 가능한 모든 작가들에게 그 양식을 모두 전달
- 작가들이 사용한 작품재료의 브랜드명, 제작방법, 운반 및 설치 방법, 주변 식물(vegetation) 및 조명(lightning)등과 같은 외부적 요인 목록, 주기적인 관리 권고 등의 목록 작성

□ 캠브리지의 공공미술관리 수립 단계

- 2002년 기준 캠브리지예술위원회는 공공미술관리 프로그램을 위해 연간 3만5천 달러를 승인, 다음 4단계 계획 하에 공공미술관리 정책이 이루어지게 됨
 - 1단계 : 1996년 도입된 전문보존관리사에 의해 소장품에 대한 평가가 도입, 작품의 매체(조형물, 회화 및 벽화, 종이작품)에 따라 보수 관리, 연대측정, 우선순위(1. 긴급요청/즉각 조치, 2. 구조적 손상, 3. 외관 작업, 청소, 코팅 필요) 등을 평가하여 구체적인 상태보고서를 만들
 - 2단계 : 작품상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시작
 - 3단계 : 정기적 관리 시작, 미술보존관리협회(Art Conservation Associates)가 이 단계에서 도입됨
 - 4단계 : 작품의 물리적 보존만큼 중요한 요소로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 작가, 보존관리사 강의, 직접적인 공공미술작품의 청소 등 청소년을 위한 하계프로그램 진행, 교육프로그램은 보존·관리의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됨

□ 공공미술작품의 점검관리 서식 사례

- 설치지역, 작품명, 작가명, 설치 날짜, 청소여부, 단기 관리 기록, 장기 관리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기록, 보험책임여부, 비고 (작품관리에 대한 특별 요구사항 등)

〈표 5-11〉 공공미술작품의 점검관리 서식 사례

Location	Artwork	Artist	Installation date	Cleaning	Short Term Maintenance	Long Term Maintenance	Insurance	Comments
				Who will do it / special instructions	Who will do it / special instructions	Who will do it / special instruction	Whose insurance will cover it?	E.g. to be treated as normal windows; 'contractor will replace flooring if damaged'

라. 위스콘신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보존관리 제도

□ 개요

- 위스콘신의 퍼센트제도는 1980년 공공건축물에 미술작품을 구비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짐
- 퍼센트제도 이후 구축된 미술작품의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부 작품 관리 프로그램인 S.O.S (Save Outdoor Sculpture)를 모태로 삼음

□ 위스콘신 예술위원회의 퍼센트제도 보존제도 착안

- 작품의 보존(conservation)과 복원(restoration)에 대한 분명한 구별을 하기 위해 정식 지침서를 만들어 공유함
- 1998년 건축위원회(State Building Commission)에는 퍼센트제도에 따라 취득한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관리사(conservation coordinator)를 고용, 보존관리계획(Conservation Initiative)이 도입됨

□ 작품 관리대장 기록

- 작품 관리대장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명시됨
 - 작가설명 : 작가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작품정보 : 작품명, 재질, 작품크기, 설치지역, 저작권 등록일, 작업일정, 계약일, 설치일 등
 - 작업방법 : 기술, 구조물 방법·도구, 조립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재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작품에 대한 요구사안
- 작품 관리 주기
- 환경요인
- 작품에 대한 개념설명
- 기록물 필수기재사안
- 작품가액 : 보험, 렌탈, 장비 구입비, 작업실 사용비 등의 지출비용 포함

〈표 5-12〉 공공미술 시민보존단체 S.O.S (Save Outdoor Sculpture)

□ S.O.S – Save Outdoor Sculpture

- S. O. S (Save Outdoor Sculpture)는 교육자원으로서 실외 조각작품 등을 보존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1989년 이래 미국 전역의 약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기관 등을 통해 그들 지역의 공공조형물의 역사 및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음
- 현재 약 3만8천여 건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이에 대해선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의 정보시스템(SIRIS, Smithsonian Institution Research Information System)에서 관리하고 있음
- S. O. S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으로, 현재 걸스카우트 등의 봉사 프로그램, 유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 진행하며, 시민과 관련 기관 등에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

〈SIRIS에 등록된 작품 정보〉

Artist:	Elsred, Dale, 1933-1993, sculptor
Title:	Untitled, (sculpture).
Digital Reference:	
Medium:	Untreated lumber and metal.
Dimensions:	(West slab: approx. 102 x 72 x 10 in.); (Center slab: approx. 140 x 72 x 10 in.); (East slab: approx. 95 x 72 x 10 in.).
Inscription:	unsigned
Subject:	Abstract
Object Type:	Outdoor Sculpture -- Missouri -- Kansas City Sculpture
Owner:	On loan to University of Missouri-Kansas City, Art & Art History Building, 5100 Rockhill Road, Kansas City, Missouri 64110 Lent by Nicholas, Jessie.
Condition:	Surveyed 1994. Well maintained.
References:	Save Outdoor Sculpture, Missouri, Kansas City survey, 1994.
Illustration:	Image on file.
Note:	The information provided about this artwork was compiled as part of th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s Inventories of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database, designed to provide descriptive and location information on artworks by American artists in public and private collections worldwide.
Repository:	Inventories of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P.O. Box 37012, MRC 970, Washington, D.C. 20013-7012
Control Number:	IAS MO000158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13〉 Three-Dimensional Work of Art :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Record

Three Dimensional Work of Art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Record	Accession # _____ Project Name _____ Commission Amount _____ Bk # _____ Record # _____
To be completed by artist for each completed artwork, in compliance with contract. (Please type or print neatly with permanent ink. Attach additional sheet as needed.)	
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check for accuracy. Return the completed form with a current resume or curriculum vita, the required photographic documentation and an artist's statement, etc. (See "Documentation" section of contract).	
A. ARTIST INFORMATION	
Artist Name : _____ Birth Date : _____ Social Security # : _____ Artist Address : _____ City/ State/ Zip : _____ Phone Number : _____ E-mail : _____	
B. ART INFORMATION	
Title of Work : _____ If untitled, please give identifying code/number for each piece. Medium(s) : _____ List all media in order of greatest amount of material to least, i.e., "bronze and glass" or "ceramic w/wood", etc.	
Dimensions : Height : _____ x Width : _____ x Depth : _____, or Diameter : _____	
<i>Physical Description of the Art Work :</i>	
Location of Artwork : _____ Date of Completion (copyright) : _____ How Long Was Work in Progress? : _____ Artist's Income after Expenses : _____ Estimate of Artist's Hours : _____ Date of Contract : _____ Date Installed/Accepted : _____	
C. METHOD OF CONSTRUCTION (Please provide details on techniques and equipment used.)	
C-1 Primary techniques used (i.e., assembled, carving, casting, thrown, welding, etc.): _____ C-2 Equipment used in construction/creation: _____ C-3 If applicable, describe any mechan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used, their operation and requirements. Please include parts or product names and supplier: _____ C-4 Fabricator information Fabricator : _____ Company Name : _____ Artist Address : _____ City/ State/ Zip : _____ Phone Number : _____ E-mail : _____ Description of Procedure/Job : _____ # Castings/ Runs : _____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D. MATERIALS**Materials/media used in the fabrication of the work. Be specific.**

(Please supply brand names of materials used when possible.)

- D-1 Principal materials used in fabrication. Describe in detail (i.e. specific metal, brand name, source, or manufacture, etc. Please attach additional sheets/information as required).
- D-2 Other materials used (e.g., screws, nails, glue, wood supports for hanging devices, etc.).
- D-3 Preparation of materials (specify processes and brands of paints/undercoating/coatings/stains; color-code Lots and any processes, if applicable).
- D-4 Describe how final surface/patina was achieved.
- D-5 If a protective coating was applied, please describe (include product names and method of application).

E. INSTALLATION

- E-1 Describe any special installation considerations (i.e. viewing height, measured distance from relative objects, landscaping, base/drainage issues, etc.).
- E-2 If work is comprised of more than one piece requiring special assembly, supply documentation on how to install correctly (provide diagram, photograph or sketch).
- E-3 Can the work be exhibited out of doors? Yes/No

F. DESIRED APPEARANCE

- F-1 Describe in specific terms and, if necessary, with drawings or photographs, the physical qualities for which the agency should strive in order to maintain the artist's intent (e.g. matte rather than glossy luster, color of patina). Specifically, what may be an acceptable alteration in form, surface, texture, coloration as materials naturally age?
- F-2 If the work is site-specific, describe in detail the particular relationship of the work to its site, including any significant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that, if altered, would significantly alter the intended meaning and/or appearance of the work.

G. MAINTENANCE/CONSERVATION INSTRUCTIONS**G-1 Routine Maintenance :**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methods and frequency of maintenance for the artwork (e.g., removal of dust, dirt; maintenance of protective surfaces; tightening adjusting, etc.)

G-2 Special/Occasional Maintenance :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and schedule for periodic maintenance and/or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e.g. disassembly and inspection; lubrication/reapplication of protective sealers; repainting; cleaning, etc.) Please provide brand names/products.

H. ENVIRONMENTAL CONDITIONS

Describe exist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y affect the condition of the artwork and any precautionary measures which should be taken (e.g., direct sunlight, extremes of rain or snowfall, temperature, air moisture or dryness, acidity of rainfall, flooding, wind, vibrations, pollutants, vehicular/pedestrian traffic animal interaction with artwork-including potential for nesting/droppings, human interaction with artwork-including touching, sitting, climbing, vandalism).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I. CONCEPTUAL INFORMATION

Please provide conceptual information on the work, including subject/source of inspiration.

J. PLAQUE TO READ

"Title"	"year"	"Artist Name"
Acquired under the Wisconsin Art Board's Percent for Art Program		

K. DOCUMENTATION CHECKLIST

The following materials must accompany this form for your contract to be completed. Confirm Items.

- ____ A. Two sets of *at least* two slides representing different views of the work.
Total number per set : _____
- ____ B. Two sets of at least two Blk&W Glossy Photos (4"x6" or larger).
Total number per set : _____
- ____ C. Current Resume or Curriculum Vita
- ____ D. Photographer Release Form (if relevant)
- ____ E. Digital images ON DISK-for documentation/archival reasons, we cannot accept photocopies or printer copies.
- ____ F. Other items-please list all other enclosures

L. DELIVERY AND FINANCES

Date of Delivery /Installation : _____

Financial information

Purchase Price of Artwork : _____

Estimated Expenses : _____
(materials, equipment purchased/ rental, framing, shipping & insurance, studio rental, etc)

Income After Expenses: _____

Estimate of Artist's Hours : _____

_____ signed on this _____
Signature of "Artist" Date

_____ signed on this _____
Signature of Chris Manke, Percent for Art Coordinator Date

TO BE COMPLETED BY ARTS BOARD - upon accessioning into collection:

Confirmation of Documentation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Agency Materials : Date Sent _____ Acceptance _____

Final Payment to Artist: Date Paid _____ Amount _____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마. 공공미술 관련 계약

□ 시각예술가 권리 법령(Visual Artist Rights Act, VARA)에 따른 공공미술사업 관련 계약 사례⁷⁾

- 미국의 저작권법 중 시각예술가 권리 법령에 의거, 변경·철거 된 작품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벽화나 부조와 같이 작품이 건물의 일부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됨
- VARA는 공공작품에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며, 작품을 구매한 소유주가 작품에 덧칠하거나 작가의 이름을 지우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게 함
- VARA는 작품의 고의적 파손 또는 훼손, 변경시에는 변호사 수수료를 포함하여 최대 15만 달러까지 작가에게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단, 이 법령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의 경우에는 VARA 법 적용이 제외됨
 - 시간의 경과나 재료의 고유 본질로 인한 작품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중대과실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 조명, 작품위치 등을 포함한 작품의 보존, 공개 결과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 한 경우. 작품이 건축물과 함께 만들어 지거나 일부로 만들어져서 작품의 철거가 파기, 훼손, 파손 등을 일으키게 되어 작가가 설치에 동의하는 경우. 건축주가 작품을 철거하길 원하는 경우, 건축주는 작품의 작가를 찾아서 90일 이내에 작품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불해야 함
- 다음 <표 5-14>는 공공기관과 예술가들이 작품의 유지, 보수를 다루는데 필요한 상호 권리와 의무가 담긴 예시 조항임
 - 계약 조항에는 저작권, 작품의 유지관리, 보수, 복구 및 복원 문제, 위치 변경, 철거 등에 대한 작가와 공공미술기관과의 협의 사안과 윤리강령 등의 내용이 포함됨

7) ed, the Cambridge Arts Council,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2002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표 5-14〉 시각예술가 권리법령에 따른 작가-공공미술담당부서 계약 조항예시(미국)

Sample Provision One*1. Signage*

The Artist shall prepare and install at the Site, pursuant to the approval and written instructions of the Public Art Authority, a plaque identifying the Artist, the title of the Work, the copyright symbol "©" and the date of completion. The Public Art Authority agrees to maintain said plaque in perpetuity.

2. Maintenance, Repair and Restoration

- a. The public Art Authority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the Work in accordance with written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Artist.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termine whether repairs to, or restoration of the Work will be made.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consult with the Artist during the first (10) years after acceptance of the Work on all questions involving repairs or restoration, an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the Artist's services for the actual repair or restoration or supervision of such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be obligated to communicate with the Artist only at his last known address, notice of which must be given to the Public Art Authority as provided for herein.
- b. Any repairs on, and restorations to the Work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conservation, subject to the prior approval of the Public Art Authority and Artist as provided for herein.

3. Alteration of the Work of the Site

If alterations to the Site are made by the Public Art Authority, and said alterations will affect the character and appearance of the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notify the Artist of such proposed alterations and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consult with the Artist in the planning of such alterat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Public Art Authority may at its discretion, relocate, remove from public display,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Work with no less than ninety (90) days prior written notification to the Artist provided, however,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not be obligated to communicate with the Artist except at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notice of which must be given to the Public Art Authority as provided for herein.

4. Moral Right

The Public Art Authority will not use the Work in any manner that would discredit the Artist's name or reputation as an Artist or which would violate the spirit of the Work. The Artist's sole remedy for breach of this provision shall be limited to the Artist's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and to require that his (her) name be removed from the Work.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Sample Provision Two

1. *Maintenance and Repair* : As a condition to final acceptance of the Work by the Public Art Authority, the Artist shall provide the Public Art Authority with a list of materials and media used, and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regular maintenance needs of the Work. Maintenance of the Work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rt Authority. The Public Art Authority Artist's approval or consultation, provided such work is performed in the Artist. If necessary repairs canno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rtist's specifications, or if the Artist has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judgement to effectuate necessary repairs.

2. *Removal or Destruction* : The Artist hereby acknowledges that the Work, when installed, will be incorporated within and made a part of the building in such a way that removing the Work from the building, or the destruction or modification of the building may cause the destruction,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the Work. The Artist therefore agrees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have the absolute right to alter, change, modify, destroy, remove, relocate, move, replace, transport or transfer, in whole or in part, (such actions being referred to herein as "Alterations"), the Work at such time as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deem necessary in order to exercise it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public works and improvements in furtherance of the Public Art Authority's operations.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make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the Artist with prior written notice of the Public Art Authority's intent to undertake any Alterations of the Work. To the exten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federal and state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the Artist hereby waives any right to preservation of the Work provided by those laws; provided, however, that the Artist shall retain any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pursuant to and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3. *Public Hazard* : In the event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Work presents an imminent hazard to the public, the Director may authorize the removal of the Work without formal approval of the Artist. The Artist shall be notified within thirty (30) days of any such action, an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then consider options for the final disposition, repair, reinstallation, maintenance or deaccession of the Work. In the event that the Work cannot be removed without being irreparably damaged or destroyed, the Artist hereby agrees to waive any rights the Artist may have under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provided, however, that Artist shall retain any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pursuant to and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Visual Artists' Rights Act.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Sample Provision Three

1. Repairs and Maintenance

- A. The Public Arts Authority recognizes that normal maintenance of the Work will involve simple procedures and that such maintenance on a regular basis is essential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all routine maintenance required on a periodic basis as specified by the Artist in the technical and maintenance specifications record.
- B. The Public Arts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all necessary repairs and restorations of the Work. The Public Arts Authority's responsibility for repairs and restoration of the Work is, by law, contingent upon receipt of adequate appropriations for this purpose.
- C. Where possible, the Artist shall be consulted as to his/her recommendations regarding repairs and restorations being made during the lifetime of the Artist. To the extent practical, and in accordance with accepted principles of professional conservation, the Artist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ccomplish repairs and restorations and shall be paid a reasonable fee for the services.

2. Changes and Resale

- A. The Public Arts Authority shall notify the Artist of any proposed alteration of the site or adjoining areas that would affect the intended character and appearance of the installed Work, and shall consult the Artist in the planning of any such alteration.
- B. Should the Work be intentionally destroyed, damaged, altered, modified or change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pense incurred in restoring the Work to its original form.
- C. If any change in the Work occurs through mutilation, vandalism or other damage or the Work is not fully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in a timely manner, the Artist may elect to enter upon the site at the expense of the Public Art Authority, remove or obliterate the identification plaqu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signature or other emblem identifying the Artist with the Work.
- D. The Public Art Authority agrees that if in the future, the Work is sold during the life of the Artist, the Artist shall be paid fifteen (15%) percent of the appreciated value of the Work.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4) 캐나다

가. 밴쿠버⁸⁾

① 공공미술 정책

□ 용어 정의

- 미술작품 : 작가의 창작품 또는 협업작품(설치, 조각, 도자기, 유리, 필름, 비디오, 패브릭, 엔지니어링 작품, 건축, 회화, 환경, 조경, 사진 등)
- 예술가 : 보통 전문적인 예술가를 뜻하며, 다른 기획팀과 협업하거나 특별한 창작품을 커미션 받은 전문 디자이너(엔지니어, 건축가, 조경 건축가 등)를 뜻함. 그러나 사업건축, 조경 건축 또는 다른 프로젝트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커미션을 위한 예술가와는 동일하지 않음
- 아트컨설턴트 : 작품의 선택, 위치, 작가 이슈 등에 대하여 개발자에게 조언을 주는 역할로, 행정 및 개발 업무에서 현재 예술가가 작업하는 상황, 예술가 등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 공공미술자금 : 공공미술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조성한 시 자금

□ 공공미술 프로그램 목적

- 밴쿠버를 정의할 수 있는 정신, 가치, 비전 등을 표현하는 작품을 지원하기 위함
- 시 소유의 건축물, 공원 및 시설물에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은 전통적인 시의 가치를 기반으로 창작을 할 수 있으며, 철저하게 현실적인 도시기반시설을 인간화하려고 함
- 또한 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작업을 하는 작가들을 그들의 디자인 기술, 미적 감각, 직관력으로 지역사회의 자존감을 세우고, 밴쿠버만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장소와 연결시키고자 함

8) City of Vancouver, 'Land Use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Guidelines—Public art Policies and Guidelines', <http://vancouver.ca/>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공공미술 프로그램은 독립 작가가 기술자, 계획자, 도시의 세계화에서 공공장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협업함으로써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도록 장려함

□ 공공미술 프로그램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함
- 공공미술 비용은 1평방피트 당 0.95달러(1m²당 10.23달러)를 사용해야 함
- 민간 개발자에 대한 선택적 기금제 운영
 - (선택 1)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공공미술 계획을 세우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선택 2) 시의 공공미술 예산기금(City's Public Art Reserve)에 비용의 100%를 납부하는 것임
 - (선택 3) 공공미술 비용의 60%까지 공공미술작품 제작에 사용하고 나머지 40%는 공공미술예산기금에 납부함

□ 민간 개발자를 위한 공공미술 프로세스

- 공공미술 컨설턴트 채용
 - 민간 개발자는 공공미술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공미술 계획을 준비하는 공공미술 컨설턴트를 채용함
- 공공미술 계획 준비
 - 공공미술 컨설턴트는 시의 담당직원들과 만나서 공공미술 프로그램 목표를 검토하고 프로세스의 단계별 과정과 계획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받음
 - 공공미술 계획서는 세 단계 - 예비계획서, 상세계획서, 최종계획서를 거쳐 완성됨
 - 최종계획서에는 설치장소, 작가, 작품, 장소, 예산, 설치시간, 유지관리 등 기타 관련 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함
 - 작가는 제안서 심의를 통해 공개경쟁으로 선발됨
- 공공미술위원회(Public Art Committee) 보고
 - 공공미술위원회는 공공미술 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공공미술 설치
 - 컨설턴트와 작가 계획을 포함한 공공미술 설치과정에서의 완전한 재무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이 공개되어야 함
- 사후관리
 - 미술작품은 대중에게 비용부담 없이 접근하기 쉽게 유지되어야 하며 작품수명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관리가 잘 되어야 함

② 공공미술 관리정책

- 공공미술 관리기금(Public Art Maintenance Reserve)
 - 공공미술 관리기금은 밴쿠버에 기부하거나, 시 지원금으로 설치된 미술작품의 보존을 위해 1994년에 만들어짐
 - 1994년 이후부터 밴쿠버에서는 시 부지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경우, 시의 지원으로 설치된 것이든, 다른 기관의 기부로 설치된 것이든, 모두 원천징수의 형태로 기금에 납부하도록 함. 이렇게 납부된 금액은 위원회 예산의 최소 10%를 차지함. 기금은 해당 설치 미술작품의 향후 관리에 활용됨
- 공공미술 작품의 보수관리 비용
 - 보수관리 비용은 시의 공공미술 관리기금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함. 도심에 설치된 작품의 스폰서가 작품제작예산의 10~20%를 기금에 기부함. 이것은 시, 민간개발자 또는 기증자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에 적용됨
- 공공미술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총 9명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이들 중 적어도 2명의 작가와 5명의 기타 예술 전문가, 건축가, 조경 건축가, 개발자, 시민 등이 포함됨
 - 위원회는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과 패널들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시민에게 제공함
- 밴쿠버시 프로젝트를 위한 심의방식
 - 작가는 주로 공개공모를 통한 심의위원 검토를 통해 선정됨
 - 심의위원은 보통 프로젝트 건축가, 엔지니어, 기획자, 최소 1인의 작가, 타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지역 대표자로,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됨
- 심의위원들은 최종선정에서 후보명단의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모형을 준비하도록 함
- 심의위원들은 보통 3~5명의 투표위원들로 구성되며, 다른 위원들은 작품 계획, 엔지니어링, 안전성, 설치 장소,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기술고문역할을 할 수도 있음

□ 프로그램 관리

- 공공미술프로그램은 시의 공무원(City Clerk's), 엔지니어링(Engineering), 공원(Parks), 도시계획(Planning), 주택(Housing), 법률 관련 부서(Legal Services), 허가부서(Permits divisions) 등 문화부서(Cultural Services)를 통해서 조정됨

□ 공공미술작품의 매각·처분에 대한 가이드라인⁹⁾

- 정의
 - 매각·처분 (Deaccessioning) : 공공장소에 설치된 밴쿠버시 소유의 작품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sale), 교체(exchange), 기증(gift) 또는 양도(disposition) 등으로 설치가 중단되는 것
- 목적
 - 공공장소에 설치되었던 밴쿠버시 소유의 작품을 매각·처분하는데 신중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행에 따라 매각·처분되는 과정을 막기 위함
- 지원 방침
 - 작품의 매각·처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며, 단순히 유행작품이 아니거나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처분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밴쿠버시의 방침임. 반드시 취득 7년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매각·처분 결정을 함
- 조건
 -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여섯 가지 조건들 중 일부 부합하면, 작품의 매각·

9) "Deaccession Guidelines - For Removing Artwork from Public Sites Under City or Park Board Jurisdiction", <http://vancouver.ca/commvcs/oca/PublicArt/pdf/DeaccessionGuidelines.pdf>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처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배심원에게 청구서를 제출함

〈표 5-15〉 공공미술작품 매각·처분 조건

- 작품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 또는 위원회 의견에 작품이 7년 이상 계속 부정적인 대중의 반응을 받은 경우 : 또는 여론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
- 인증된 작품이 아니라, 부정품(不正品)이거나, 제목에 정당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디자인이나 기능에 결점이 있거나,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유지,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수리가 불합리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손상이 있는 경우
- 작품 생존을 위협하거나 작품의 예술적 보전과 영향력에 상당한 손상 결과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장소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 작가의 서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 시의회(City Council) 또는 공원위원회(Park Board)가 작품을 현재 장소에서 다른 적당한 장소를 찾을 수 없어서, 예외적이고 예기치 못한 이유로 매각·처분을 결정하는 경우

— 절차

- 시 또는 공원 위원회 직원(Park Board staff)이 공공미술위원회에 매각·처분 커미션 요청서를 제출, 위의 여섯 가지 조건을 입증
- 필요한 경우, 공원 위원회 직원은 공공미술위원회에 다음의 사항들을 정리해 줌

〈표 5-16〉 공원 위원회 직원의 역할

- 매각·처분 제안 이유
- 법무부의 의견
- 취득 방법과 비용
- 작품의 비공식 추정 시가 (취득 비용이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최소한 하나의 작품시가에 대한 전문 감정)
- 매각·처분 비용(cost of deaccessioning or removal)
- 작품에 대한 공개기록 문서
- 전문 관리사로부터 받은 작품 상태에 대한 보고서
- 제안된 실행방침 및 대체 방안(예, 재배치)
- 적합한 수용자 목록(a list of appropriate recipients)

- 직원과 협력하여 공공미술위원회는 제안된 매각·처분 안을 검토할 만한 적어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적어도 한 명의 주민 대표와 과반수의 미술 전문가 포함)를 배심원으로 구성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매각 처분이 고려되고 있는 작품의 작가는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어디가 적용되고 완성되는지를 통보 받고, 지정 마감일까지 서면 또는 직접 의견을 제시하게 됨
- 작품의 첫 번째 스폰서는 합리적인 수단에 의해 어디가 적용되고 완성되는지를 통보 받고, 지정 마감일까지 서면으로 또는 직접 의견을 제시해야 됨
- 배심원은 작품의 매각 처분 검토 결과로 다음의 실행과정 중 일부를 권고하기도 함. 배심원은 이러한 제안 솔루션에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 상황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음

〈표 5-17〉 작품의 매각 처분에 대한 배심원의 권고사항

- 작품의 판매, 경매 또는 교환
- 작가나 스폰서에 작품을 지정된 날짜까지 현 시가로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 제공
- 정당한 감정가 및 공시가 판매 추구
- 시의 잉여자산 절차를 통한 작품의 매각 처분
- 작품 재배치
- 작품 임시 보관
- 작품 보유

- 공공미술위원회 배심원의 권고안은 정기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공원 위원회의 시의회(City Council of Park Board)에 전달됨

나. 토론토

□ 작품의 보수 관리¹⁰⁾

- 야외에 전시된 작품은 거친 날씨와 반달리즘(vandalism),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부식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함
- 토론토에서는 문화부가 야외 설치 작품과 기념물 등의 사후관리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음
- 소장 작품들은 매년 여름, 공공미술보존관리사(Public Art Conservator) 지휘

10) http://www.toronto.ca/culture/public_art/maintenance.htm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하에 세척 및 관리를 받게 됨

-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컬렉션에 있는 새로운 작품들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게 하고, 기존의 작품들을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보수 관리 프로젝트

사례 1) 남아프리카 전쟁 기념비(작가 : Walter Seymour Allward, 연도 : 1910년, 지역 : Queen Street and University Avenue, 재질 : 청동, 금박, 화강암)

[그림 5-2] 남아프리카 전쟁 기념비 전경(좌), 보수 전(가운데), 보수 후(우)



- 2000년 여름, 4개의 청동상이 보수작업을 받게 됨. 1910년에 설립되었을 당시, 본래 동상은 흑갈색이었음.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면서, 높은 습도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청동은 부식되었으며, 동상의 색이 검정색과 밝은 녹색으로 변함. 청동상 표면의 상당부분이 많은 부식으로 상당부분 떨어져 나감. 보수작업은 가압수와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부식물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이 포함됨. 새로운 녹청을 칠하는 데에는 혼합색갈을 이용함. 최종 마무리는 핫왁스층을 덧바르는 것으로 함
- 2001년 여름에는 화강암 주변을 청소하는 것으로 이 작품에 필요한 보수작업을 완성함. 남아프리카 전쟁 기념비는 향후에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으로 관리를 받게 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사례 2) November Pyramid (작가 : Bernard Schottlander, 연도 : 1967, 지역 : High Park, 재질 : 연강(mild steel), 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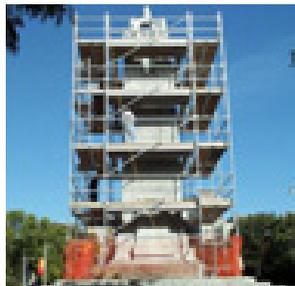
[그림 5-3] November Pyramid의 보수 전(좌), 후(우)의 모습



- 지난 몇 년 동안 이 작품은 낙서를 감추기 위해 수차례 재칠을 해 왔음. 결국엔 어두운 갈색이었던 조각상이 푸른색으로 변색됨. 1999년 여름, 여러 겹의 페인트 층을 벗겨내어 하부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최하단에서 떼어낸 샘플컬러를 기반으로 하여 어두운 갈색으로 부분 재색 함. 낙서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인트 마감 위의 보호막으로 왁스 코팅을 함

사례3) Forty Eight Highlanders Memorial (작가 : Halenby, Eric Wilson, Alvan Mathew, 연도 : 1923, 지역 : North Queen's Park Circle)

[그림 5-4] 보수 중인 Forty Eight Highlanders Memorial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컬렉션에는 다양한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기념물과 미술작품들이 있음. 석조상은 잦은 세척과 바름질을 필요로 함. 2000년 여름, 이 기념물의 맨 윗부분은 내부 누수를 막기 위해 덧씌웠으며, 유실된 모르타르가 보완됨

5) 뉴질랜드 (오클랜드)

가. 정책 개요¹¹⁾

□ 공공미술의 정의

- 공공미술은 공공미술소장품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으로, 대중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볼 수 있는 공간(공원, 도로, 스퀘어, 산책로, 공공광장 및 위원회 소유 건축물 외관 등)에 설치된 영구적, 일시적, 반영구적으로 설치된 다양한 작품을 말함

□ 운영 도구(Implementation Tool)

- 공공미술 외부 자문 위원
- 공공미술기금
 - 공공미술기금은 퍼센트법에 기초하여 납부된 공공미술자본기금과 공공미술 운영예산으로 조성되며, 위원회는 이를 공공미술 관리비용 예산으로 사용함
- 관리 지침 및 평가
 - 위원회는 공공미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리 지침, 목표 및 평가 제공. 공공미술정책 성과 및 조치에 대한 실적평가를 연간 및 매3년마다 보고함
 - 위원회는 작가 및 큐레이터 포럼, 오클랜드 시의회 웹사이트 및 도심 현장 (City Scene)을 통해 성과 및 진행과정 등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통보
- 공공미술 툴킷 (Public Art Toolkit)
 - 위원회의 공공미술 커미션, 개발 및 처분 관리 과정은 지침서인 공공미술툴킷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지침서에는 취득, 프로젝트 관리, 감정 등의 내용과

11) 'Art in public places, Auckland City Council's public art policy', <http://www.aucklandcity.govt.nz/council/documents/publicart/docs/final.pdf>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위원회의 모든 공공미술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이 명시되어 있음

- 자산 운용 계획 (Asset Management Plan)
 - 위원회의 공공미술에 대한 자산 운용 계획은 적합한 시스템과 예산으로 시의 공공미술소장품에 있는 모든 미술작품의 타당한 목록, 관리, 유지 및 보수비용으로 사용되도록 함

나. 공공미술작품의 재배치(re-siting) 및 철거(removal)에 대한 정책¹²⁾

① 정책 개요

- 공공미술작품의 처분 및 철거에 대한 주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오클랜드시의 공공미술정책 및 가이드라인은 1999년에 공표됨. 이 정책은, 모든 작품들은 영원히 지속되게 만들어지지 않으며, 게다가 어떤 작품들은 처음부터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다른 작품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수명을 지속시키거나 설치장소가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
- 이 정책은 계약 협약 및 저작권법에 관련하여, 작가, 기증자 또는 임대인의 의도에 따라 작품이 조성된 위치와 작품의 완결성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고 있음
- 공공미술작품의 철거는 신중하고 공정한 평가 후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함
- 이는 전문가의 판단과 대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한 개발 정책과 절차에 따라 미술작품 커미션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처럼 신중한 검토의 단계가 필요함
- 시의 공적 성과를 감안하여 위원회 또는 커미션 기관(현재는 문화예술 및 여가 위원회, Arts Culture and Recreation Committee, ACRC)은 공공미술작품의 재배치 및 철거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림

② 정책 범위

□ 적용 범위

- 오클랜드 시 소유 혹은 정책 범위 내에서 커미션계약을 통해 위원회가 장기

12) "Re-siting or removal of public art works Policy and guidelines", <http://www.aucklandcity.govt.nz/council/documents/artresiting/docs/2008policy.pdf>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임대한 모든 실외 설치 작품

□ 예외 적용

- 한시적 공공미술작품
- 시 소유 건물 실내에 배치된 이동 가능 한 미술작품. 이 작품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소장품/자산운용 절차에 따라 관리됨
- 독립된 공공미술작품으로 규정되거나 커미션 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조경과 같은 큰 프로젝트의 구성 형식의 디자인 요소. 작가는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 팀의 일원으로 속해 있어야 하며, 공간 사용, 재질이나 색상 등을 결정하거나 건축물 장식(난간, 조명설치, 바닥 표면 등)에 영향을 끼침. 이런 경우, 개인 작품으로 공공미술 소장품에 기입되거나, 별도의 평가는 불가능하며, 명시적으로 철거되거나 재배치를 고려하는 것도 불가능함
- 공개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개인 소유의 미술작품, 예를 들어 회사 로비에 있는 작품 또는 구역 계획 연면적 보너스 제도(District Plan floor space bonus scheme)를 통해 개발된 작품들. 개발자가 구역계획 연면적 보너스제도를 통해 창작된 작품의 재배치 또는 철거를 원하는 경우, 오클랜드 시의회는 현재 허가 받은 연면적 논의에 응해야 함
- 오클랜드 미술관 토이 오 타마키(Auckland Art Gallery Toi o Tamaki)¹³⁾ 부지 실내외에 설치된 갤러리 소장 작품

□ 재배치 및 철거 시작을 위한 검토 준거

- 공공미술작품의 지속적인 설치가 작가의 의도를 해치는 경우
- 작품이 설치된 환경의 특성 또는 디자인, 용도, 지역사회 패턴에 상당한 변화로 작품의 설치장소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 공공미술작품 설치 장소나 그 장소 일부가 재개발, 철거 또는 매각되어서 작품 보존 위협이나 과도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하여 재개발에 합류되지 않는 경우
- 공공미술작품을 유지/보수하는데 방대한 자산운용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 작품 디자인 또는 기능에 심각한거나 위험한 결점을 갖고 있어서 수리, 보수가

13) 토이 오 타마키는 1888년에 개관한 뉴질랜드 최초의 미술관으로 오클랜드에 위치한 국립미술관임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비현실적이거나 작품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 작품이 대중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이어서 보수가 불가피하거나,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 현 위치에 있는 작품의 상태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거나, 작품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오클랜드 시의회는 합당한 조정에 의거하여 작품을 불허한 경우
-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더 이상 운영 위원회가 작품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
- 오클랜드 시의회 판결로, 작품이 저작권법을 포함하여 법적 허위사실로 판명된 경우
- 작품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장품 기록물에서도 영구 삭제가 요구됨)
- 적합한 장소 부족으로, 작품이 전혀 배치되지 않거나 드물게 배치되는 경우
- 5년 이상 창고에 보관된 작품
- 임대인과 오클랜드시의 커미션계약이 종결되거나 만기된 경우

□ 공공미술작품을 재배치(re-site)하거나 철거(remove)시 절차

- 작가, 기증자, 임대인(lenders), 정치인, 위원회 직원 또는 시민(members of the public)이 작품의 재배치 또는 철거 제안
- 1개 이상 준하는 사항을 표기한 재배치 또는 철거 제안서 완성. 재배치 또는 철거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도 필요함
- 요청서 승인과 검토 절차 및 기한을 잡기 위해 서면으로 응답하는 공공미술담당자(Public Art Manager)가 접수. 오클랜드시의회는 검토과정을 3~6개월 내에 완료시킬 것을 목표로 함
- 오클랜드시의회가 작가, 기증자 또는 임대인과 계약을 한 경우, 공공미술담당자는 공공미술작품과 관련하여 오클랜드 시의회가 모든 법적 의무를 지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공공미술담당자 의견에 따라, 재배치 또는 철거 제안서가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면, 공공미술담당자는 승인 거부 이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공공미술담당자 의견에 따라, 제안서가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공공 미술담당자는 외부자문위원(Advisory Panel for Public Art, APPA)에게 제안서를 전달, 그리고 문화예술 및 여가 위원회(Arts, Culture and Recreation Committee, ACRC)에 재배치 및 철거 검토절차가 시작되도록 추천서를 만들어줌. ACRC가 추천서를 승인하면 다음 절차를 따름
- 관련 지역 위원회(Community Board)는 통보를 받고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가짐
- 모든 합당한 결과물로 작가, 기증자 및 임대인,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재배치 또는 철거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인 부분과 관련 기회에 대한 정보를 통보함
- 오클랜드시의회 예술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위원은 공공미술담당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
- 오클랜드 시의회의 자문 담당자(Auckland City Council's Consultation Manager)와 공공미술담당자가 함께 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 수준에 대한 계획을 개발. 협의 요구 수준은 이해관계자 효과 분석에 의해 결정되며, 작품 제안서와 중요성의 정도가 가늠되어야 함. 여론의견이 검토와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지만, 모든 최종결정은 ACRC의 책임임
- 공공미술담당자는 작품의 재배치 또는 철거 검토를 위한 다음의 근거자료를 준비해야 함

〈표 5-18〉 공공미술담당자가 준비해야 하는 재배치/철거 검토 근거 자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의 이미지 및 상세설명서 ·최초의 취득방법/심의절차 ·작가, 기증자/대여자의 동의서 또는 오클랜드 시의회의 법적 구속력에 준하는 문서, 또는 이러한 동의서가 없을 시에는 오클랜드 시의회와 작가, 기증자/대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요약서 ·법적규제/취득 요구사항이나 조건 ·특정 구역계획에서의 제약 (예, 유물출토지) ·작가의 진술 ·기증자의 진술 ·대여자의 진술 ·작품이나 작품 설치 장소가 마우리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Pae Herenga Tangata¹⁴⁾를 통해서 검토해봐야 함 ·최초 취득과정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었을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진술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공공미술작품의 의의에 대한 APPA의 조언 및 제안서의 정당성
- 작품 가치에 대한 독립적, 전문적 평가
- 작품에 의식적인 흥미를 가진 위원회 또는 공무원으로부터의 진술
- (협약계획에서 정해진 작품의 크기나 방식 등) 작품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피드백
- 보존, 관리, 보수, 설치, 보험, 보관 및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정보
- 철거에 대한 확실한 논점이나 규제 등을 포함한 철거 추정비용, 재배치나 철거가 지원자의 관심이나 프로젝트에 적합하다면, 재배치 또는 철거에 대한 합리적 비용은 사업예산으로 커버됨
- 보관 추정비용
- 작품 재배치를 위한 옵션 등 철거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변경 옵션

- APPA의 어드바이스와 공공미술담당자의 권고안이 포함된 요약보고서가 ACRC를 위해 작성됨
- ACRC에 보고서 제출
- 작가(또는 대리인)는 공공포럼 기간 동안 ACRC로 직접 초대됨
- 오클랜드 시의회의 공공미술정책인 공공미술 설치장소(Art in Public Places)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미술 관련 수집 정보에 기초하여, 공공미술 담당자의 보고서는 ACRC에 작품의 재배치 또는 철거를 불허하거나 공공미술 컬렉션에 남기도록 함

〈표 5-19〉 공공미술작품의 관련 정보

- 다른 공공지역으로 재배치된 작품이었던가
- 철거하고 수장고에 보관되었던 작품인가
- 타 기관에 대여, 또는 공공미술소장품에서 영구 철거되었던 작품인가
- 기증자에게 되돌려 준 작품인가
- 대여자에게 되돌려 준 작품인가
- 타 기관에 기증했던 작품인가
- 판매되었던 작품인가
- 파기되었던 작품인가

- 공공미술담당자의 권고안은 먼저 오클랜드 시의회가 작가, 기증자 또는 대여자에게 법적 의무를 갖도록 함 작가와의 서면 계약으로 오클랜드시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작품은, 영구 철거가 결정된 경우에도, 의회는 작가가 작품을 우선

14) Pae Herenga Tangata는 마오리족과의 관계, 전략적 정책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오클랜드시의회 전문가 팀임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ACRC는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기관으로, 공공미술담당자의 추천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것임
- 다음 지침 항목 <표 5-20> 중 일부가 준수되어야 함

<표 5-20> 공공미술작품 처분 방법

- 공공미술작품 재배치
- 공공미술작품 보관
- 타 기관에 대여
- 기증자에 제공 (단, 시의회 소유 작품이거나 기증받은 작품의 경우에 한함)
- 임대인에게 되돌려줌
- 작품기증
- 작품판매
- 작품파기

- 기한이나 다른 상황에 따라 재배치 또는 철거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신속한 검토과정이 이루어짐
- ACRC 결정에 따라, 신청자, 작가, 기증자 또는 임대인 그리고 검토과정에 참여한 기타 기관들은 결과물을 서면으로 통보받게 됨
- 공공미술담당자는 ACRC의 결정이 잘 수행되게 하며, 적합한 위원회 직원이 그 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게 함. 이러한 결과를 감독하는데 적합한 프로토콜과 작가, 기증자 또는 임대인이 관련 행사에 초청받는 것은 필수적임
- 실제로 처분이 완료된 공공미술작품에 대해서 ACRC는 관리대장에 영구적으로 철거된 것으로 기록함으로써, 오클랜드 시의회는 작품소유권과 작품에 대한 책임을 종결하게 됨
- 처분된 공공미술작품의 등록번호는 없어지게 됨
- 전체적인 재배치 및 철거 검토과정과 성과는 철저히 기록되어야 하며 오클랜드 시의회의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야 함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3.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해외사례 비교·분석

가. 심의제도

〈표 5-21〉 심의제도 관련 해외사례 비교

	아일랜드	잉글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트켄트	밴쿠버	오를랜드
심의 위원회 구성	·공공미술 실무팀으로부터 구성 - 전문작가 1인 - 예술전문 큐레이터 또는 자문위원 1인 포함		프로젝트 건축가, 엔지니어, 기획자, 최소 1인의 작가, 타 지역 대표자 포함 3 ~ 5명으로 구성	
심의 방식	·공모 - 기존 작품 기준 선발 (작가 포트폴리오 기준) - 익명의 공모 (작품 아이디어, 작품 모형 등 제출) ·제한경쟁 - 공공미술 실무팀이 작가 명단을 구성 - 커미션 기관, 지역사회 협의로 결정 ·직접 커미션 또는 직접 구매 - 공공미술 실무팀 자문을 통한 선정 - 대행업체를 통한 구매		공개공모	
사후 관리 관련 심의		·작품 처분 관련해 평가단(Review Group) 구성 - 관련책임 부서의 작품 설치/철거 담당자, 타 위원회 직원 (예. 도시디자인, 기획, 엔지니어링 등), 위원회의 보건·안전 관리 담당직원, 작가, 외부 예술전문가 (작가, 큐레이터, 공공미술 컨설턴트 등) - 추가적으로 다음의 패널들도 포함 될 수 있음 : 특별 책임자 등에 의해 선정된 임원, 지역, 학교, 기타 관련 기관 관계 대표자 등	직원과 협력하여 공공미술위원회는 제안된 매각 처분안을 검토할 만한 적어도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적어도 한 명의 주민 대표와 과반수의 미술 전문가 포함)를 배심원으로 구성	작품의 처분 제안신청 -> 시의회 검토 -> 외부자문위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여가위원회가 최종 결정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미국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심의위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위원은 예술위원회가 임명 - 일반적으로 베이지역(the Bay Area) 내부 인사로 구성 - 외부인사를 고용하기도 함 - 사업예산 5만 달러기준으로 심의위원 구성을 달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기획자 또는 큐레이터, 공공미술행정가, 작가, 건축가, 조경전문가, 학자, 비평가, 콜렉터 등으로 구성 - 최소 3인의 시각예술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심의방식	직접구매, 공모, 제한적 공모, 작가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선정 - 위원회 승인요청 후, 재개발자 등의 ·공모 - 공모에 응모된 작가의 자료를 심의위원회 직접 선정 ·초대공모 - 위원회 추천을 통해 위원회와 개발자가 선정

나. 사후관리제도

〈표 5-22〉 사후관리제도 해외사례 비교(1) 아일랜드, 잉글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캐나다	뉴질랜드
		이스트켄트	밴쿠버	오클랜드
관리 주체	작품의 커미셔너	작품 평가단 (Review Group)	밴쿠버시 공공미술위원회	문화예술 및 여가 위원회 (Art Culture and Recreation Committee)
관리 감독	작품의 커미셔너	지정기관 (nominated officer)	밴쿠버시 공원 시의회 (City Council of Park Board)	오클랜드 시의회
관리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미션 기관이 작품 DB 관리 - 지역도서관이나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 - 프로젝트의 계획 및 방법, 모니터링 평가 등의 내용 기록 - 전문사진작가나 예술가에 의한 사진 기록 - 특히 한시적 프로젝트의 경우, 간행물 형태로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 툴킷(Public Art Toolkit)을 통해, 커미션, 개발, 처분, 관리 과정 등의 지침서 제시 ·작품의 재배치, 철거, 관리 등의 내용을 반드시 시의회 관리대장에 등록해야 함
관 리 기 금 및 비 용	커미셔너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총예산의 5%를 사후관리를 위해 예비비로 책정	작품의 처분 비용계획이 프로젝트 초기에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미술관리기금 (Public Art Maintenance Reserve) - 기부금, 시지원예산금으로 조성 ·관리비용 - 기금과, 스폰서가 작품제작 예산의 	퍼센트법에 의거, 기납된 공공미술자본기금과 공공미술운영예산으로 운영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10~20%를 기부한 금액으로 충당함	
관 리 범위	작품의 이전, 보수가 필요한 경우, 커미션 받은 작가와 자문위원의 지시 하에 외부 전문가가 관리하게 됨	작품 처분 관련 옵션 - 이전설치, 철거, 학교나 자선단체 등 타기관에 기증, 작가가 직접 보관, - 해체/파괴 이후 재사용 가능한 재료는 작가에게 기증	·작품의 매각 처분 - 반드시 취득 7년 이상인 작품에 한하여 결정 ·공공미술위원회에 작품의 매각 처분안이 접수되면 배심원을 통해 결정	· 한시적 작품에 대한 관리는 제외됨 ·작품설치 장소나 그 장소일부가 재개발, 철거/매각되어 작품보존위험이 있는 경우, 유지/보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5년 이상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계약 만기된 경우 등 시 의회의 판결에 따라 작품을 처분함

〈표 5-23〉 사후관리제도 해외사례 비교(2) 미국 4개 도시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캠브리지	위스콘신
관리 주체	샌프란시스코 시	필라델피아 시	캠브리지 시	위스콘신 시
관리 감독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	재개발사업 기획위원회 (The Board of Directors the Redevelopment Authority) 內 조형예술위원회 (Fine Arts Committee)	캠브리지 예술위원회	위스콘신 예술위원회
관리 기구	Art Care 재단 -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가 민간 기구인 샌프란시스코 미술상인협회와 공동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의 공공미술작품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설립 - 2010년 현재 약 3,500점 소장품에(8,600만 달러 규모) 연간 약 15,750달러의 관리 비용 지급	작품 소유주, 재개발자 계약시, 작가가 원하는 전문보존관리자를 추천할 수 있음	·전문보존관리사 도입 - 미술보존관리협회	외부보존관리사 (Conservation coordinator) 고용
관리 양식		- 작가와 계약시, 계약서에 작품 보수 관리에 대한 기간, 장단기 보존/관리 프로그램 규정이 명시되어야 함	·관리대장 - 작가계약 관련 자료, 작품제목, 설치일자, 작품 크기, 재질, 커미션 자금, 자금출처, 사진, 지도, 도표	·관리대장 - 작가설명 : 작가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작품정보 : 작품명, 재질, 작품크기, 설치지역, 저작권 등록일, 작업기간,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재료, 브랜드명, 제작방법, 운반 및 설치방법, 설치지역 주변 식물 및 조명 등의 외부요인 목록, 주기적인 관리 권고 등 표기 	계약일, 설치일 등 - 작업방법 : 기술, 구조물 방법·도구, 조립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 - 재료,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작품에 대한 요구사항 - 작품 관리 주기 - 환경요건 - 작품에 대한 개념설명 - 기록물 필수기재사항 - 작품가액 : 보험, 렌탈, 장비 구입비, 작업실 사용비 등의 지출비용 포함
관리 기금	·도시건설비용예산의 2%를 작품 취득에 배당 - 위 작품 취득 비용의 5%는 작품의 보존관리 기금으로 배당 ·기증 작품인 경우 - 작품기부 시, 작품에 대한 관리기부금 (Maintenance Endowment)도 납부	작가와 계약시 작품 보존 관리 비용에 대한 계획 명시	2002년 기준 연간 3만5천 달러 기금 승인	
관리 범위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작품의 위치 이동, 매각 처분, 판매(공개경매, 개인판매), 작품의 개보수 등이 가능함 - 단, 취득 10년 이내의 작품은 매각·처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비고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 보존관리사, 작가의 직접강의 - 공공미술작품의 직접 청소 프로그램 등 운영	

2) 시사점

□ 작가와의 철저한 계약체계

- 작품의 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하여, 작품 설치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작가와의 계약관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이루어지게 함

□ 계획부터 철거에 이르는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미술 가이드라인 제시

제5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해외사례

- 설치 절차에 따른 이상적 방안과 유의사항 기술
- 사후관리 단계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매뉴얼화
 - 사후관리의 시작은 공공미술 대장을 작성하는데서 출발
 - 목록관리, 정기점검, 보수복원, 위치변경 및 철거 등에 따른 방안 제시
 - 사후관리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있어서 미술가 보호
- 사후관리 전문기구 설치 또는 위탁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한 샌프란시스코의 아트케어 사례는 정부의 부족한 관리비용에 대한 보완 등 공공미술작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조달청에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연방정부 건물에 설치한 미술작품의 정기 점검 및 보수복원을 민간 미술품 보존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함
- 사후관리지 자원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과 연계
 - 작품의 적극적인 사후관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홍보, 교육, 자원봉사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공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미국, 캠브리지 예술위원회의 사례와 S. O. S 프로그램 등과 같이 지역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작품 관리에 대한 모니터를 하거나, 작품 청소 등의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작품에 대한 작가의 직접 설명과 보존·관리 등에 대한 강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시민의 공공미술작품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제도 개선방안

1. 심의제도 현황
2.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심의제도 가이드라인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1. 심의제도 현황

1) 심의제도 현황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의무자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된 미술장식의 감정·평가를 함
 - 특별시 및 광역시 소재의 건축물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심의
 - 인천광역시외의 경우 해당 자치구에서 심의
 -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해당 시장, 군수가 심의
- 자치단체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위하여 미술, 건축, 공간디자인 등 관련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자치단체별로 심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가격·예술성·건축물과의 조화, 환경과의 조화, 안정성 등에 대해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크게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풀제로 운영하거나 13인 내외의 정원제로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점차 풀제로 이행되고 있는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미술장식 심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 자치단체별로 심의신청시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운영 내용은 상이하나 시행 절차는 큰 차이가 없음

〈표 6-1〉 개정전 미술장식품 심의 절차

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후단계
설치의무 통보	심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심의결과 통보	설치확인
자치단체 ↓ 건축주	건축주 ↓ (건축허가부서) ↓ 자치단체	자치단체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자치단체 ↓ 건축주	자치단체 (심의위원)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관련 법규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심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표 6-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심의 관련 조항

<p>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p> <p>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p> <p>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p>③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3) 자치단체 조례 중 관련 법규

□ 자치단체 조례 심의와 관련된 조항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나, 심의신청 시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내용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심의신청 시기는 크게 착공 후 일정기간(3개월 또는 60일 등)내에 신청할 것을 권고하거나 특정한 기간의 언급이 없이 준공 전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됨
- 심의위원회는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풀제로 구성, 운영하거나 13인 내외의 정원제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됨
- 심의신청시 제출 서류 및 도서는 심의신청서, 계약서, 금액산출내역서, 작가경력서, 심의 도서 등을 기본으로 하며, 자치단체에 따라 신청 서류 및 도서가 조금씩 상이함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자치단체에 따라 모형,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자치단체에 따라 작가의 실명 및 경력을 공개하거나 비공개하는 등 상이
 - 미술장식 계약의 경우 건축주-작가 계약을 기본으로 하며, 건축주-대행인 간의 계약을 인정하는 경우와 건축주-작가 계약만을 인정하는 지자체로 구분됨
 - 심의신청은 대부분 단수의 작가와 작품을 신청하나 지자체에 따라 복수의 작가와 작품을 심의, 선정하는 지자체도 있음
- 심의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크게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안정성 등을 심의함
- 공개공모시에는 가점을 주는 자치단체가 많음

□ 자치단체별 심의와 관련하여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6-3〉 지자체별 심의 관련 주요 현황

광역 단체	기초단체	심의 신청 시기	심의위원 인력풀	설치 비율		계약주체	특이사항
				비주거	주거		
서울	-	준공전	80인 이하	7/1000	1/1000	대행인 가능	대행의뢰제
부산	-	준공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대구	-	준공전	5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광주	-	준공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대전	-	준공전	3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울산	-	준공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경제자유구역	준공전	5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중구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동구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남구	준공전	15인 이하	명시되어 있지 않음			
	연수구	준공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남동구	준공전	15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부평구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계양구	준공전	10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서구	준공전	10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경기	강화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옹진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제주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지역작가작품 설치권고
경기	가평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고양시	착공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예치금제도
	과천시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광명시	준공전	2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구리시	준공전	30인 이하	7/1000	3/1000	작가만 가능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광주시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군포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김포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남양주	준공전	5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동두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부천시	준공전	30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성남시	착공후	11인 이하	7/1000	1/1000	대행인 가능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수원시	준공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시흥시	착공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안산시	착공후	10인 이하	6/1000	3/1000	작가만 가능	
	안성시	착공후	5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안양시	착공후	30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양주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양평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여주군	준공전	6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연천군	준공전	명시되지 않음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회 대행
	오산시	착공후	30인 이하	5/1000	3/1000	작가만 가능	
	용인시	착공후	3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의왕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의정부시	준공전	28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이천시	준공전	6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파주시	준공전	30인 이하	6/1000	2/1000	작가만 가능	
	평택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현상공모당선 작품 심의 생략
	포천시	준공전	명시되지 않음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하남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화성시	착공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강원	강릉시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고성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동해시	명시되지 않음		5/1000	1/1000	명시되지 않음	미술장식 관리대장 비치
	삼척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속초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양구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양양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영월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원주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인제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정선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철원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춘천시	준공전	13인 이하	7/1000	2/1000	대행인 가능		
	태백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평창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홍천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화천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대행인 가능		
	횡성군	착공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충북	괴산군	준공전	9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단양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보은군	준공전	7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영동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옥천군	준공전	9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음성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2/1000	작가만 가능		
	제천시	준공전	2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증평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진천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청원군	준공전	9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청주시	준공전	50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충주시	준공전	8인 이하	6/1000	2/1000	작가만 가능		
	충남	계룡시	착공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공주시	준공전	7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금산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논산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당진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보령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부여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서산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서천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아산시		준공전	9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연기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예산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천안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청양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태안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전북		홍성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고창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군산시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김제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남원시	준공전	9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무주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전남	부안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순창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완주군	준공전	10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익산시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임실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장수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전주시	준공전	10인 이하	7/1000	2/1000	작가만 가능
	정읍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진안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강진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고흥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곡성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광양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구례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나주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담양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목포시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무안군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보성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순천시	준공전	4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신안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여수시	준공전	13인 이하	6/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영광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영암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완도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장성군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장흥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진도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함평군	준공전	15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해남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화순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경북	경산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경주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고령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구미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군위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김천시	준공전	13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문경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봉화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상주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성주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안동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영덕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영양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영주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경남	영천시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예천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울릉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울진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의성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청도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청송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칠곡군	준공전	11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포항시	준공전	11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거제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3/1000	작가만 가능	
	거창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2/1000	작가만 가능	
	고성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2/1000	작가만 가능	
	김해시	착공후	10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남해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마산시	착공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밀양시	착공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사천시	착공후	10인 이하	5/1000	3/1000	작가만 가능	
	산청군	착공후	9인 이하	5/1000	2/1000	작가만 가능	
	양산시	착공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의령군	조례안 제정되어 있지 않음					
	진주시	착공후	30인 이하	7/1000	3/1000	작가만 가능	
	진해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창녕군	착공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창원시	준공전	30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통영시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3/1000	작가만 가능	
	하동군	준공전	9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현상공모 당선작품 심의 생략
	함안군	준공전	10인 이하	7/1000	1/1000	작가만 가능	
	함양군	준공전	8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합천군	준공전	10인 이하	5/1000	1/1000	작가만 가능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2.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표 6-4〉 심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요약

단계	문제점	개선방안
설치 의무	건축주의 선택권 문제	설치의무 통보시 직접 설치 및 기금 납부를 안내하여 건축주의 선택권 보장
심의 신청	심의신청시기에 따른 문제점	심의신청시기를 명문화 -착공후 6개월 이내 심의신청(권장)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 심의신청(의무)
	심의신청서식이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효율성 및 건축주의 불편 가중	심의신청서식 및 도서를 표준화하여 효율성 제고
심의 위원회 구성 운영	심의대상 자격의 모호함	심의대상 자격을 명시하여 창작기회 및 순수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 - 비미술가(건축가, 조경가 등) 자격 제한
	심의위원의 인력풀의 문제	광역시도 단위로 일원화 5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 구성 전문가로 전문성, 책임감 강화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를 2/3 이상 구성 평론, 큐레이터, 공공미술이론가 등 미술전문가 보강 공무원 등 당연직 비율 제한
심의	심의위원의 담합, 투명성 부족	광역시도 단위로 일원화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 참여 심의기피제 도입
	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가격심의소위원회 운영 등 가격 심의 강화
	심의의 효율성 부족	미술작품의 규모, 금액, 중요도에 따라 차등 심의 대형 복합단지 등의 경우 전체적인 계획까지 심의
	심의신청건수가 많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비효율성과 민원 소지 많음	광역시도 단위로 일원화 지역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 근거 마련
심의 결과 통보	준공 직전 심의부결로 인한 준공차질로 건축주, 입주민의 민원 발생	준공 1개월 전까지 심의가결이 되지 않을시 기금납부(권장)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2) 심의제도 주요 문제점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 운영에 있어서 심의는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
- 심의제도의 문제점은 이전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일부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잔존해 있는 상태임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문제는 건축주의 인식 부족, 중개업자의 영리 추구와 함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인식
 - 공공미술제도 개선과 관련된 선행 연구 등에서 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됨
 -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1997), 공공미술제도 개선연구(2005), 공공미술 진흥사업 운영방안 연구(2009) 등
- 심의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크게 사후심의의 한계, 심의위원의 전문성 부족, 지역심의위원간의 담합, 권한 남용 등이 주로 지적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도의 투명성, 합리성, 공공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3) 심의제도 개선방안

가. 기본방향

- 심의 제도 개선을 통해 창작기회 증진, 순수문화예술 진흥 및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와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도시미관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안
 - 창작기회 증진 및 순수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제도 제정 취지에 맞는 개선안
 - 의무 이행의 이원화로 건축주의 선택권과 편의성 보장 및 준공 차질에 따른 민원 소지 감소
- 미술작품 심의, 관리 업무를 광역시·도·자치도로 일원화하여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및 효율적 운영을 꾀함
 -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개선하고 투명성, 공정성 제고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심의위원회 및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
- 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의 효율성 제고
-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 및 해당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재단에 업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설치 의무 이원화 안내

- 설치 의무 통보시 건축주 직접 설치와 기금 납부 등 설치 의무 이행방법을 안내하여 건축주의 선택권 보장 및 편의 도모
 - 참여 동기가 부족한 민간 건축주의 의무 이행절차 간소화
 - 기금 출연 안내를 통해 형식적 설치 관행 지양
- ▶ 광역시·도·자치도의 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기금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다. 심의신청 시기 개정

- 심의신청 시기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신청 시기를 놓치는 등 건축주의 불편이 가중되므로 심의신청 시기를 개선
- 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된 심의신청 시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특별히 심의신청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고 있으며, 준공 전까지 설치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음
 - 일부 자치단체는 착공 후 3개월 내에 심의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준공 전까지 설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공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 준공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할 경우 심의 부결에 따른 준공 차질 우려
 - 준공에 임박한 경우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암묵적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졸속 심의
 - 설치 계획 자체가 늦어져 준비부족으로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저하를 초래
 - 준공 차질에 대한 피해를 입주자들이 지게 되는 등 민원 소지가 많아 궁극적으로 제도 존속에 위협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착공 후 일정기간 내에 심의신청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존재
 - 이 조항의 근본 취지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을 건축, 조정설계에서부터 준비함으로써 건축물 및 주변 환경과 보다 조화롭게 하기 위함임
 - 이 같은 취지에 맞게 미술장식 설치 계획을 건축, 조경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취지에 맞게 계획되지 못하고 오히려 급하게 준비되는 등 조항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음
 - 심의신청 시기를 명문화하여 건축, 조경 계획과 협의,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준공에 임박하여 졸속으로 준비되지 않도록 개선
 - 준공에 임박하여 심의를 신청함으로써 심의 부결에 따른 준공 차질 등 건축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심의신청기간을 명문화
 - 준공 3개월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 납부를 권장하여 준공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 ▶ 미술작품의 심의는 착공 후 6개월 내에 할 것을 권장하며, 준공 6개월 전까지 최초 심의를 접수하여야 함
- ▶ 시,도지사는 준공 3개월 전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금 납부를 권장할 수 있음

라. 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 심의위원의 담합, 로비에 노출되는 등 부정비리의 문제 발생
- 일부 기초단체의 경우 특정 심의위원이 지역에서 건축주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
 - 심의통과를 빌미로 미술장식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주하는 경우
 - 심의통과를 빌미로 건축주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압력을 가하거나, 지역 미술 단체에 기부금 요구 압력을 가하는 경우 등
 - 일부 지역 심의의 경우 심의위원 담합으로 지역 작가 참여를 위해 부당한 압력 행사
- 건축주를 대행하는 업체 및 작가에게 심의위원이 노출되면서 다양한 청탁 및 로비의 대상이 됨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미술장식 신청 대행인(업체, 작가)과 직·간접적으로 안면이 있는 경우가 많아 청탁 및 로비가 가능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위원 선정의 문제
 - 심의위원 선정은 관련 대학,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 담당자가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 경우 미술계의 역학 관계를 잘 모르는 담당자의 주관에 개입하거나 공식적인 직함에 의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문적, 합리적인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련 대학, 단체, 협회에서는 공공미술 전문가 보다는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는 인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심의위원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모 절차의 문제점인 하향 평준화될 우려가 많아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완책이 필요
 - 광역시 및 시·군·구 등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자치도 단위로 일원화
 - 지역 심의위원 간의 담합 소지를 방지하고 심의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
 - 심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지역 심의위원회에 대한 견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여 지역 심의위원의 담합 견제
 -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심의위원 선정으로 투명성, 공정성 제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심의위원 데이터베이스 구성, 운영
 - 심의위원은 해당 지역 미술작품 심의신청을 제한
 - 심의위원 윤리의식 고취와 처벌 규정 강화로 부정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심의위원회에 대한 윤리강령 도입 및 청렴서약서 등 방안 마련
 - 부정비리에 연루된 심의위원에 대한 뇌물죄, 업무방해 등 행정 처벌 강화로 부정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 부정비리에 연루된 심의위원, 작가, 업체는 일정기간 심의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검토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DB 등에서 건축주에게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심의위원회를 광역시·도·자치도로 일원화
- ▶ 심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심의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해야 함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 미술작품 심의위원은 관할 지역 내에서 미술작품 출품을 제한함
- ▶ 부정비리에 연루된 심의위원, 작가, 업체에 대하여는 2년간 심의신청을 제한함

□ 심의위원 풀제는 장단점 고려하여 운영

- 심의위원은 자치단체에 따라 50인 이상 80인 이내의 풀(Pool)제로 구성되거나 13인 이내의 소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채택 방식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임

□ 다수의 심의위원을 풀(Pool)제로 구성, 매 심의시 윤번제로 운영하는 경우

- 전문가의 인력풀이 많지 않아 수준에 미달되는 심의위원이 상당수를 차지
- 심의위원들의 공공미술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이 상대적으로 낮음
- 미술작품에 참여할 의도와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경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서 인력풀이 더욱 부족해짐
- 감정·평가시 구성되는 심의위원의 성향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 건축주 및 신청작가의 불만가중과 심의위원회의 신뢰성, 권위 저하
- 다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도 결국 로비에 노출되므로 효용성이 예상보다 크지 않음

- ▶ 높은 수준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심의위원회가 **확보하기 힘든 경우**에 채택
- ▶ 5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책임감 고취 필요
- ▶ 매 심의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연속성,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제고 필요(해당 심의위원 추천 및 검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 13인 내외의 심의위원을 고정으로 구성, 운영하는 경우

- 심의위원의 권한이 커져 담합 소지가 크고, 로비에 노출될 수 있음
-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정, 평가할 경우 제도의 질적 개선에 기여할 있음
- 반면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 높은 수준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을 심의위원회가 **확보할 경우**에 채택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 심의위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전문성 보완 및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견제가 필요(해당 심의위원 추천 및 검증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 ▶ 사전 로비 및 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소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선택, 운영하되 보안책 마련이 필수적임

마. 심의위원회 및 관계자의 전문성 제고

-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
-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 구성은 조각, 회화, 한국화, 서예 등 미술창작자와 건축, 조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시의회의원 등 시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심의위원의 경우 대부분 관련 분야, 장르의 전문가로 위촉되나 특정 장르를 벗어나거나, 심의위원의 취향과 다를 경우 심의에 어려움이 존재
 - 많은 심의위원들이 공공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심의위원 추천 단체의 이해관계에 얽힌 심의위원들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발생
 - 심의신청된 미술장식품 관련 분야의 전문가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임
- 심의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서울시를 제외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심의위원에는 심사위원장에 부시장(또는 국장)이, 심사위원에 국장 및 과장이 참여하며, 계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가 많음
 - 심의과정에서 민간심의위원의 담합을 견제하거나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2~3명의 공무원이 미술장식의 질적인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개선
 - 심의위원회에 관련전문가를 2/3 이상으로 구성
 - 심의위원회에 평론가, 큐레이터, 공공미술이론 등 미술이론가를 보강
 - 심의신청 장르 전문가가 심의에 1인 이상 참여(권장)
 - 심의신청 장르가 조각일 경우에는 조각(창작자 또는 이론가) 전문가, 미디어일 경우에는 미디어(창작자 또는 이론가) 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
 - 심의위원 중 관련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거나, 행정 담당자가 미술작품의 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함
 - 심의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또는 지역문화재단) 추천 심의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제고토록 함
 - 심의위원 및 관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 지역문화재단 등 제도와 관련된 담당자들의 정기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함
- ▶ 광역시·도·자치도의 장은 심의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바. 심의의 효율성 제고 및 자치단체 업무 부담 경감

- 심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비효율적이며, 건축주의 불편을 초래
 - 일부 지역의 경우 심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아 인력 및 행정비용의 낭비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비효율적임
 - 심의위원회 개최가 비정기적이고, 횟수가 많지 않아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 심의의 효율성 부족
 - 현재 미술장식 심의신청 절차는 개별 미술장식의 금액·규모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신청하게끔 되어있어 효율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개별 작품에 대한 심의만 진행되므로 대형 복합단지처럼 여러 점이 설치되는 경우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미술장식 설치 계획이 독특한 컨셉과 방향을 갖기가 어려움

-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광역시·도·자치도 단위로 일원화하고, 지역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의 근거 마련
 - 심의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행정인력이 낭비되고, 건축주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광역시·도·자치도로 심의를 일원화하여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 지역문화재단으로 업무 이관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
- ▶ 광역시·도·자치도의 장은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역문화재단에 일부 이관할 수 있음

사. 가격 심의 강화

- 현재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현재 자치단체에 따라 심의신청시 가격 산출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가격의 적정성 판단에 효과적이지 못함
 - 가격 산출 내역은 조각의 경우는 중당가로, 평면의 경우는 호당가로 산정하며 한국 미협 등에서 발행하는 중당(호당)가 확인서로 대체하였음
 - 이때의 중당가 및 호당가는 실제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음
- 가격 적정성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미술장식의 실 제작비 책정 비율이 낮은 원인의 하나가 됨
- 미술작품 가격 심의 강화를 통해 실제작비에 소요되는 비중을 높여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
 -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을 감정, 평가하기 위해 가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심의위원회에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 광역시·도·자치도의 장은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가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아. 심의 대상 자격

- 현재 미술장식의 창작자의 자격 여부가 시행령, 조례 등에 명시되지 않고, 미술가의 자격이 모호하여 문제점이 발생
 - 심의 대상 미술가 자격을 명시하여 창작기회 확대 및 순수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 미술가를 제외한 건축가, 조경가, 상업디자이너 등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 제한
 - 순수미술가가 아닌 석공 등에 대한 심의신청 자격 제한
- ▶ 광역시·도의 장은 창작 기회 증진 및 순수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제도 취지에 벗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의신청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 제한 여부는 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름
- 심의대상 미술가의 이름 및 경력을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 현재 자치단체에 따라 심의신청 미술가의 이름 및 경력을 공개하는 경우와 비공개하는 경우로 구분됨
 - 두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채택 방식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임

□ 심의대상 미술가의 이름 및 경력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 인맥, 청탁, 로비 등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
 - 실제로는 이름 및 경력을 공개하지 않아도 사전에 청탁, 로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크지 않음
- 심의 대상 미술작품의 정확한 감정·평가가 어렵고 잘못된 판단을 할 소지가 많음
- 가격의 적정성 판단이 어려움
- 건축가, 조경가 등 미술 외 분야나 석공 등 비미술가 및 외국작가가 다수 진입할 수 있어 미술가들의 창작 환경 개선과 순수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제도 재정의 취지에 어긋남

□ 심의대상 미술가의 이름 및 경력을 공개하는 경우

- 인맥, 청탁, 로비에 노출될 소지가 있음
- 심의 대상 미술가의 명성에 영향을 받아 순수하게 미술장식의 질적 수준 및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만을 감정·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경력이 부족한 미술가(신진작가 등)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음
 - 가격 적정성 판단이 용이함
- 심의대상 미술가의 (이름) 경력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히려 단순 경력뿐만 아니라 해당 미술가의 지난 작품 세계 및 공공미술 수행 경력 등을 판단하기 위해 간략한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제출하여 감정·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단일 작품이 아닌 다수의 작품을 감정·평가할 경우 전체적인 컨셉, 설치계획 및 수행능력의 감정·평가를 위해 총괄 기획자(업체, 작가)의 경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3. 심의제도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 심의제도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심의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제고
- 심의제도 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
-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심의제도 시행절차를 표준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2) 개정 후 심의제도 시행절차

□ 개정 후 건축주 직접 설치시 미술작품 심의 시행절차

- 개정후 심의절차는 광역시·도·자치도로 일원화
- 건축주 직접 설치와 기금제에 의한 절차로 구분됨

〈표 6-5〉 개정후 건축주 직접 설치에 의한 미술작품 심의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후관리 중
설치 의무 통보	심의신청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심의결과 통보	변경, 이동 철거, 기증
광역사도 ↓ (건축허가부서) ↓ 건축주	건축주 ↓ (건축허가부서) ↓ 광역사도	광역사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광역사도 ↓ 건축주	
	착공 6개월 전(권장) 준공 6개월 전(의무)		신청 후 60일 이내	심의 후 1주일 이내	
-	심의신청서 금액산출내역서 계약서(작가, 업체) 작가경력서 심의도서 CD (구조계산서) (모형, 3D동영상) (금액 내역서) (공개공모 입증서류)		미술작품 채점표 회의록	심의결과 공문 공보에 공고	변경심의 이동심의 철거심의 기증심의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3) 전단계 : 설치의무 통보

- 광역시·도·자치도의 장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의무를 통보
- 설치 의무 통보시 직접 설치와 기금 납부 두 가지 방안을 안내
 - 건축주에게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 설치 의무 통보는 건축필증 발급시나 건축허가 후 60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통보
 - 광역시·도·자치도에서 통보할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건축허가부서(자치단체)에서 건축허가필증 발행시 미술작품 설치 의무까지 통보하여 행정 업무 경감

4) 1단계 : 심의신청

-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광역시·도·자치도에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
- 건축허가부서에서 심의금액산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광역시·도·자치도에 신청
 - 건축물의 면적, 규모, 용도에 따라 인·허가권을 가진 자치단체가 다름. 광역시·도·자치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진 경우에는 건축허가 부서를 경우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건축허가부서를 경유하지 않고, 미술장식 담당부서에 직접 접수하는 방안 검토필요
 - 삼척시 소재 건축물의 경우 삼척시청을 경유해서 강원도청이 소재한 춘천시를 방문하는 등 시간·비용 낭비로 효율성이 떨어짐
- 심의신청은 착공 후 6개월 전까지 심의신청할 것을 권장하며, 최소한 준공 6개월 전까지 최초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 자치단체장은 준공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납부를 권장할 수 있음
- 심의신청서 미술작품심의신청서, 계약서, 심의도서 등 관련 서식 및 도서를 구비하여 신청(부록의 별도서식 참조)
- 심의신청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미술작품 심의신청서(별도서식)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미술작품 금액산출내역서(별도서식)
 - 계약서(표준계약서)
 - 건축주-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간의 계약서를 제출
 - 건축주-업체 계약시에는 건축주-업체 계약서와 업체-작가 계약서를 각각 제출
 - 작가경력서, 업체경력서
 - 작가를 심의위원회에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업체 계약시에는 업체경력서와 작가 경력서를 같이 제출
 - 심의도서(별도서식)
 - 심의도서 규격 및 양식이 전국적으로 상이하므로 표준화된 도서 서식 필요
 - 심의도서 양식은 심의신청 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
 - 심의신청 자료가 포함된 CD
 - 구조계산서
 - 일정 규모 이상의 작품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 높이 5~7미터 이상 또는 구조적으로 현저히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등
 - 모형 및 3D 동영상
 - 지자체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는 경우와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상이함
 - 일괄적 제출, 또는 미제출보다 일정 금액(3~5억) 이상의 작품의 경우 모형 제출
 - 미디어 작품처럼 모형 제작이 어렵거나 모형 보다 3D 시뮬레이션이 적합한 경우에는 3D 시뮬레이션 또는 동영상 제출
 - 미술작품 금액내역서
 - 가격심사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
 - 견적서 또는 내역서 등
 - 공개공모 입증 자료
 - 공개공모시 이와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
 - 기타 광역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식 및 자료
- 미술작품의 금액, 규모, 중요도에 따라 차등 심의할 수도 있음
- 미술작품의 변경·철거·기증에 따른 심의신청은 그 내용에 따라 약식으로 할 수 있음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표 6-6〉 미술작품 심의신청시 규모, 금액 별 구비서류(예시)

금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기본서류	심의신청서 계약서 금액산출내역서 CD	심의신청서 계약서 금액산출내역서 CD	심의신청서 계약서 금액산출내역서 CD
추가서류	심의도서(약식)	심의도서(현행)	심의도서(강화된 서식) 구조계산서 모형 가격심의용 내역서
필요시	공개공모 입증서류	구조계산서 공개공모 입증서류	공개공모 입증서류

5) 2단계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는 풀제 또는 소수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음
 - 심의위원 풀제의 경우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회의시 13인 이내로 윤번제로 운영
 - 소수 정원제의 경우 13인 내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 심의위원은 주민대표와 미술창작자, 미술이론가, 건축, 조경,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위원회는 관련 전문가가 2/3 이상 참여
 - 평론가, 큐레이터, 미술행정, 미술경영, 공공미술기획 등 미술이론가를 보강
 - 심의신청 작품과 동일한 장르의 심의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할 것을 권장
 - 조각작품 신청시 조각가(이론가), 미디어작품 신청시 미디어작가(이론가) 등
 - 매 심의위원회 개최시 문화예술위원회(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1인 이상 참여
 - 공무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운영 및 발언권을 가지나 투표권은 갖지 않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심의에 참여
- 광역시·도·자치도는 심의위원회가 전문성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겸비하기 위해 워크샵, 정기교육, 청렴서약서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심의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공공미술에 대한 식견이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높아야 함

- 심의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없음
 - 부족한 인력풀을 더욱 부족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음
- 정기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필요시 심의위원 윤리강령, 청렴서약서 등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비리에 연루된 심의위원, 작가,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심의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6) 3단계 : 심의

- 광역시·도·자치도는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공간과의 조화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의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각 광역시·도·자치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표 6-7〉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채점표 사례

심의사항	세부내용	배점
가 격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 - 필요시 사전 가격심의소위에서 채점	10 ~ 20점
예술성	미술작품의 조형성, 예술성, 작품성, 형식미, 내용성, 독창성 등	30 ~ 50점
공공성	미술작품과 건축물과의 조화 미술작품과 공간(환경)과의 조화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관람객과의 소통 기타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30 ~ 50점
사후관리	미술작품의 안정성, 보존성 미술작품의 교육적 효과(홍보, 교육, 문화프로그램 실시 여부)	10 ~ 20점
합 계		100점
가 점	미술작품의 공개공모시 가점	10점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개공모시 10점 내외의 가점을 줄 수도 있음
 - 단, 공개공모로 선정된 미술작품이라도 심의를 생략할 수 없음
- 미술작품 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격심의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심의위원으로 가격 적정성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음
 - 가격심의소위원회는 미술작품의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에이전시, 딜러, 제작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음
 - 가격심의소위원회는 미술작품의 가격 적정성이 매우 부정적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결을 권고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에 가격 적정성을 감정·평가할 수 있는 딜러, 에이전시 등을 위촉

7) 4단계 :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공고하여야 함
- 심의결과는 가결, 조건부가결, 부결로 구분
 - 조건부 가결시에 건축주는 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변경 도서를 자치단체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심의위원회에 약식 심의에 회부할 수 있음
 - 부결시 건축주에게 부결사유를 상세하게 통보하고, 재심의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함
- 준공예정 1개월 전까지 심의에 가결 또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에게 기금납부를 권고할 수 있음
- 계약금액을 국세청에 통보
 - 작가 계약시에는 건축주-작가 계약금액 통보
 - 대행업체 계약시에는 건축주-대행업체, 대행업체-작가 계약금액 통보

8) 사후관리 단계 : 훼손, 분실, 이동, 변경, 철거, 기증시

- 미술작품의 이동, 변경, 철거, 기증시에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훼손, 분실, 도난시에는 별도의 심의 없이 자치단체에서 행정 명령으로 처리
- 미술작품의 훼손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제6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심의제도 개선방안

록 자치단체에서 행정 조치를 취함

- 미술작품의 분실, 도난시에는 건축주의 귀책사유 여부를 확인하고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 미술작품의 이동시에는 약식 심의를 거쳐야 하며, 건축물과의 조화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이동시에는 신고 후 이동 가능
- 미술작품의 변경시에는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함
- 미술작품의 철거시에는 철거 사유 등을 적시하여 약식 심의를 거침
- 미술작품의 기증시에는 별도의 기증신청서를 구비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1. 사후관리 현황
2.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1. 사후관리 현황

1) 관련 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

-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되는 경우에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
-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현재의 시행령으로는 지속적,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표 7-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중 사후관리 관련내용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 중 사후관리 관련 조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상 사후관리와 관련된 조항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으나, 관련 조항이 없는 자치단체도 상당수임
- 관련 조항이 없는 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상위법인 시행령에 준하거나 주변 자치단체를 참고로 운용

〈표 7-2〉 서울특별시 조례 중 사후관리 관련내용

제10조 (미술장식품의 관리)

- ① 건축주가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변경심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조례 제18조 및 제2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훼손·망실·분실·용도변경 등이 된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조치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①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나 이를 위한 철거 또는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조례상 사후관리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시 조치
 - 원상복구, 변경 및 철거시 심의 여부
 - 미술장식품 설치 여부 확인
 -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실시
 - 자치단체별 사후관리 내용

〈표 7-3〉 자치단체별 사후관리 내용

광역시	기초	설치여부 확인	지속적인 사후관리	철거, 훼손, 용 도변경 및 분실시 조치	원상복구, 변 경 및 철거시 심의
서울		○	○		
부산		○	○		
대구		○			
광주		○	○		
대전		○			
울산		○			
인천	경제자유구역	○			
	중구	○	○		
	동구				
	남구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계양구		○		
	서구	○			
	강화군		○		
옹진군	○				
제주		○			
경기도	가평군	○			
	고양시	○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구리시	○			
	군포시	○	○		
	김포시	○			
	남양주시	○			
	동두천시	○			
	부천시	○			
	성남시	○			
	수원시				
	시흥시	○	○		
	안산시				
	안성시	○		○	
	안양시	○			
	양주시	○	○		
	양평군	○		○	
	여주군	○			
	연천군	○		○	
	오산시	○			
	용인시	○		○	
	의왕시	○	○		
	의정부시	○			
	이천시	○			
	파주시	○			
	포천시	○			
	평택시	○			
	하남시	○			
	화성시	○			
강원도	강릉시	○		○	
	고성군	○	○	○	
	동해시		○		
	삼척시	○			
	속초시	○			
	양구군				
	양양군	○	○		
	영월군	○	○		
	원주시	○			
	인제군				
	정선군	○			
	철원군				
	춘천시	○			
	태백시	○	○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평창군	○				
	홍천군	○				
	화천군	○				
	횡성군	○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단양군	○	○		○	
	보은군	○	○		○	
	영동군	○	○		○	
	옥천군	○				
	음성군	○	○		○	
	제천시	○	○			
	증평군	○	○		○	
	진천군	○	○		○	
	청원군	○	○		○	
	청주시	○				
	충주시	○				
	충청남도	계룡시	○			
		공주시	○	○		
금산군						
논산시		○	○			
당진군		○	○			
보령시		○				
부여군		○	○	○		
서산시		○				
서천군		○	○			
아산시		○				
연기군		○	○	○		
예산군		○	○	○		
천안시		○				
청양군						
태안군						
전라북도	홍성군	○	○	○		
	고창군	○				
	군산시	○				
	김제시	○				
	남원시	○				
	무주군					
	부안군	○				
	순창시					
	완주군	○				
	익산시	○	○			
	임실군					
	장수군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전주시	○			
	정읍시	○			
	진안군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	○		
	구례군				
	나주시	○	○		
	담양군				
	목포시	○	○		
	무안군	○	○		
	보성군	○	○	○	
	순천시	○	○		
	신안군				
	여수시	○	○		
	영광군				
	영암군	○	○		
	완도군				
	장성군	○	○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	○		
해남군					
화순군	○	○			
경상북도	경산시	○			
	경주시	○			
	고령군	○	○		
	구미시	○			
	군위군				
	김천시	○			
	문경시	○			
	봉화군				
	상주시	○			
	성주군	○			
	안동시	○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			
	영천시	○			
	예천군	○			
	울릉군				
울진군	○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의성군				
	청도군	○			
	청송군				
	칠곡군	○			
	포항시	○			
경상남도	거제시	○	○		
	거창군	○			
	고성군	○	○		
	김해시	○	○		
	남해군				
	마산시	○	○		
	밀양시	○	○		
	사천시	○	○		
	산청군	○			
	양산시	○	○		
	의령군				
	진주시	○	○		
	진해시	○	○		
	창녕군	○			
	창원시	○	○		
	통영시	○	○		
	하동군	○			
	함안군	○	○		
	함양군	○			
	합천군	○	○		

2) 사후관리 현황

- 현행 조례상 사후 관리 관련한 업무 분장은 대체로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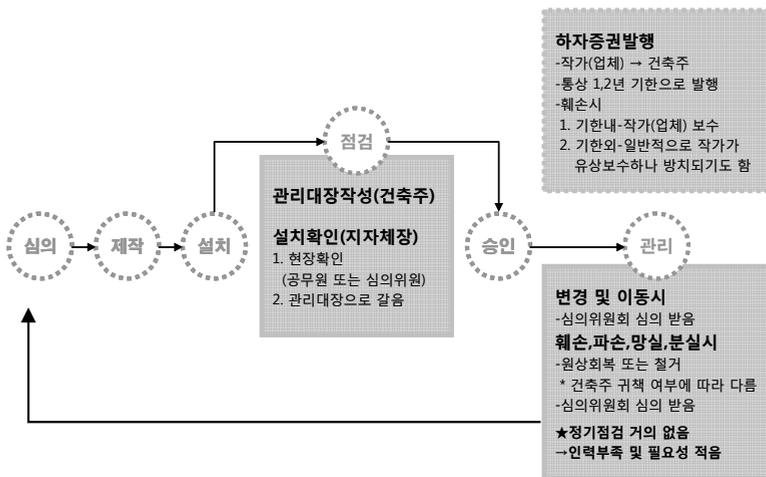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표 7-4〉 현행 조례상 사후 관리 관련한 업무 분장

구분	내용
관리주체	건축주(관리책임자 포함)
관리감독	기초(광역)단체장
관리양식	관리대장 운영 *조례상 작성 및 운영을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작성은 건축주가, 보관 및 운영은 자치단체장이 함 *관리대장 포함 내용 : 작품내역(가격, 재료, 크기, 재질 등), 작품설명, 작가약력 및 연락처 포함
작품 변경시	심의위원회 변경 심의를 득해야 함
위치 이동시	약간의 이동은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있으나 많은 이동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함
작품 훼손시	훼손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작품 분실, 망실시	원상회복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건축주의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결정. 귀책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없으면 철거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그림 7-1] 사후관리 업무 프로세스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서울시의 경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관리
 - 대장관리는 인허가부서에서 담당
 - 현황관리는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하며 연 1회 이상 점검
 - 데이터베이스와 홈페이지관리는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실시

〈표 7-5〉 건축미술장식 관련 관리업무 (서울시 사례)

구분	내용
대장관리	인허가 부서(기관) ▶서울시 * 제출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현황관리	서울시 및 자치구 * 미술장식품 점검 : 년 1회 이상
홈페이지관리	서울시(디자인서울총괄본부) * http://design.seoul.go.kr

2. 사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미술장식품 사후 관리의 의미
 - 소극적 의미의 관리 : 소극적 의미의 관리는 미술장식품의 유지 보존을 의미
 - 1) 관리대장을 통한 문서상 점검
 - 2) 설치 후 1회만 현장 점검(담당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 3) 정기적, 지속적 점검을 통해 미술장식품을 유지
 - 적극적 의미의 관리 : 미술장식의 유지, 보존 외에 미술장식품의 활용을 통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시스템 필요
-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는 소극 관리만 하며 특히 1)과 2)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
 - 대부분 설치 후 1회만 현장 점검
 - 정기적, 지속적 점검을 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음
 - 인력 부족의 문제와 소방·위생·안전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점검의 필요성이 약함
- 최근 의도적인 분실 및 위치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건축물의 매매 등 건축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미술장식품의 분실이 자주 발생
 - 대체로 분실 금액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재심의 받음(서울파이낸스 센터 등)
- 설치확인을 득한 후 작품 이동이 되는 경우
 - 평면작품의 경우 공용 공간(로비 등)에 설치, 확인 후 회의실, 임원실 등으로 이동
 - 이 같은 경우 원상회복에 따른 시정 조치시 임시로 회복 후 다시 회의실 등으로 이동됨
- 미디어 작품의 경우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안전 관리의 필요성 제기

- 미술장식품은 다른 소방·위생·안전시설에 비해 정기적 관리점검의 필요성이 떨어지나 최근 미술장식품의 대형화와 재료, 작품의 다양화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 현재 사후관리의 주체가 건축주이며, 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사후점검 또한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점검시에도 육안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적극적 의미의 사후 관리(교육, 홍보, 프로그램 운영 등) 검토 필요

- 현재 미술장식품에 대한 사후 관리는 원형의 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 관리임
- 미술장식품을 통한 교육, 홍보,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사후 관리가 필요함
- 적극적 의미의 사후 관리는
 - 조성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관련기구에서 기획, 집행하는 지자체 및 전국 단위의 사업과 연동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사후 관례가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당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광장, 지구단위) 사업이 있을 수 있음
- ▶ 일정규모(금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해당 미술장식품의 홍보, 교육용 자료를 비치하여야 함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3.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관리개념의 확대(적극적, 광범위적, 다양화)
 - 업무의 편의성(다양하게 전개될 공공미술의 대처와 업무분장)
 - 도시미관 제고(관리를 통한 공간예술, 교육, 관광 등 타 사업 연계 활용)
 - 안전성 제고(다양한 작품의 관리, 이전, 폐기, 기증 등의 매뉴얼화)
 - 관리 주체의 선정과 관리, 그 책임성에 관한 법적 조치 항목 개정
- 미술작품의 사후관리의 가이드라인은 크게 건축주 직접 설치와 선택적 기금제에 의한 설치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매뉴얼화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주 직접 설치시 가이드라인
 - 선택적 기금제 설치시 가이드라인
- 미술작품 인·허가 부서(특별시, 광역시, 도, 자치도)와 기초 단체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간의 업무분장에 따른 매뉴얼화 필요
 - 업무분장의 범위에 따라 시행절차가 변화되므로 사전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함

2) 사후 관리 업무 시행절차

- 기존의 시행절차

〈표 7-6〉 미술장식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설치보고	설치확인	건축물 사용승인	사후관리	분실훼손 점검
건축주 ↓ 자치단체	자치단체 및 심의위원	자치단체 ↓ 건축주	건축주	자치단체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

- 개정안에 따른 시행절차는 크게 건축주 직접 설치시와 납부된 기금으로 설치시의 두 가지로 구분됨
- 건축주 직접 설치시 시행절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과 인허가부서간의 업무 분장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존 법률에 따른 시행절차와 비교하여 단계는 늘었으나, 온라인 시스템 구축시에는 보단 간편해질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은 감소
- 기존 법률과 대비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및 점검을 보다 매뉴얼 할 필요성이 있음
- 시행절차 관여 주체는 광역시·도·기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 문화재단), 건축주임

3) 건축주 직접 설치시 사후관리 절차

〈표 7-7〉 개정안에 따른 미술장식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설치보고	설치확인	설치완료 보고	건축물 사용승인	일상적 사후관리
건축주 ↓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 및 심의위원	지역문화재단 ↓ 광역시·도	광역시·도 ↓ 건축주	건축주
6단계	7단계	8단계		
미술장식 대장 생성관리	미술장식 대장 사본 제출	정기점검		
광역시·도	광역시·도 ↓ 예술위	광역시·도		

□ 1단계 : 설치보고

- 건축주(작가 및 기획관리자 대행)는 설치완료 후 관리대장, 미술작품저작물이용허락서를 작성하여 광역시·도에 보고
-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DB 온라인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별도 출력 없이 인터넷상으로 보고, 승인 추진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2단계 : 설치확인
 - 설치확인 은 가급적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DB 또는 문서상으로 확인 가능
 - 설치확인 은 당해년도 심의위원과 지역문화재단 담당자가 확인
 - 설치확인 은 준공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설치보고 후 5일 이내 완료
- 3단계 : 설치완료 보고
 -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시·도 담당자에게 설치완료 보고
 - 별도서식 작성 또는 온라인상 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
 -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보완조치
 - 심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보류
- 4단계 : 건축물 사용승인
 - 광역시·도 담당자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 미술장식 설치완료 필증 발급(별도서식)
- 5단계 : 일상적 사후관리
 - 건축주가 일상적으로 미술장식 관리
- 6단계 : 미술장식 대장 생성 관리
 - 대장관리는 인허가부서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
 - 현황관리는 지역문화재단에서 함
- 7단계 : 미술장식 대장 사본 예술위원회 제출
 - 건축물 미술장식 DB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미술장식 대장 사본 제출
 - DB관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
- 8단계 : 정기 점검
 - 시·도 담당자는 적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민간위탁 가능
 - 년 1회 또는 격년 1회 점검 후 조치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4) 기금납부에 따른 사후관리 절차

- 기금납부에 따른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 기금납부에 따른 시행절차는 크게 전국단위 사업과 지역단위 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단일 오브제 작품 설치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사업의 시행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영구적이지 않은 작품과 비물질적 프로그램 등은 철수시점까지만 관리

〈표 7-8〉 기금납부에 따른 사후관리의 시행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치보고	설치확인	사업평가	운영성과 보고
예술가(단체) ↓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평가위원회) ↓ 예술가(단체)	지역문화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단계	6단계		
공공미술작품 등록	사후관리		
예술가(단체) ↓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민간위탁가능) -정기 관리 -철수 관리		

- 1단계 : 설치보고
 - 기금을 받은 예술가(단체)는 설치 또는 사업을 완료한 후 관리대장 또는 별도서식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지역문화재단)에 보고
 - 관리대장 및 별도서식은 인터넷상의 DB에 직접 입력 후 출력하여 보고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보고
 - 사업정산내역서 등 관련 증빙 첨부
- 2단계 : 설치 또는 사업완료 확인
 -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역단위 사업의 경우 지역문화재단에서 설치 또는 사업완료 확인
- 3단계 : 사업평가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지역문화재단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평가
- 2단계 설치(사업완료) 확인과 3단계 사업평가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 4단계 : 운영성과 보고
 - 공공미술 지원사업 운영성과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고
- 5단계 : 공공미술작품 등록
 - 영구설치작품의 대장관리는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
 - 임시설치작품 및 프로그램은 철수 및 사업종료시 확인
 - D/B관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
- 6단계 : 사후관리
 - 지역문화재단에서 하며, 적정 주기로 점검하고 보수관리
 - 민간미술보존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사후관리 시행절차는 광역시·도와 기초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확정된 후 세부 가이드 라인을 정리해야 함

5) 사후관리 중 점검 및 조치사항

- 미술작품의 정기적 사후관리의 필요성
 - 미술장식품은 소방, 위생, 안전시설에 비해 정기적 관리점검의 필요성이 떨어짐
 - 인·허가 부서의 인력 부족으로 상시적인 점검이 용이하지 않음
 - 이처럼 인력부족과 관리점검의 필요성이 떨어져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는 그간 정기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미술장식품의 훼손, 파손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하와 안전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미술장식품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
 - 훼손, 파손된 미술장식품으로 인한 도시미관의 저하
 -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예술품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필요성
- 미술장식 점검 및 관리 주체
 - 건축주는 상시적 관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미술장식품의 유지보수와 안전문제에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유의해야 함

-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의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함

〈표 7-9〉 미술장식 점검 및 관리 주체

구분	상시관리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특별안전진단
점검주체	건축주	지역문화재단	건축주	건축주
결과통보	결과통보없음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건축주 ↓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 건축주 ↓ 지역문화재단 ↓ 지자체

□ 미술장식 점검 및 관리 단계

- 상시관리 : 건축주
- 정기점검 : 지역문화재단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위탁받은 관련 협회나 업체에서 격년 1회씩 관련전문가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
 - 미술작품의 훼손, 파손, 망실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철거 또는 원상복구 권고
 - 미술작품의 분실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해당 금액의 미술작품으로 재심의 권고
- 정밀안전진단 : 건축주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협회나 업체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지역문화재단(지자체)에 결과 통보
 - 정밀안전진단 불합격시에는 철거 또는 보수 조치 명령
 - 미술작품의 크기, 구조적 불안정성, 설치장소 등 위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를 권장
- 특별안전진단 : 정기점검 또는 기타의 이유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지역문화재단(지자체)은 건축주에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

□ 미술장식품의 훼손, 파손, 망실, 분실시 조치사항

- 미술장식품의 훼손, 파손, 망실시에는 그 정도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권고
- 훼손, 파손, 망실의 범위
 - 중심구조의 불안정
 - 지지구조의 불안정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경미한 구조 손상(휨, 구멍, 장식탈락 등)
 - 표면손상(박락, 변색, 긁힘, 낙서 등)
 - 화학적 퇴락(부식, 중합체 파손 등)
 - 생물학적 훼손(곰팡이, 해충 등)
 - 먼지에 의한 오염(새 배설물, 먼지 등)
 - 전기적 장치의 고장(LED, 조명 등)
 - 기계적 장치의 고장(풍력을 이용한 키네틱 작품의 동작 정지 등)
- － 훼손, 파손, 망실의 정도
- 상태가 안정적이며 보존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상태가 안정적이나 오염제거, 세척 및 도장 등 기초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상태가 안정적이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 원상복구 권고
 -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
- － 미술장식품의 분실시에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 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다른 작품으로 재심의를 명령
- － 미술장식품 주변의 간판, 수목 등 시각적 저해물에 대한 이동 권고
- － 관리대장 보강 또는 별도의 서식으로 사후관리 및 안전점검 현황 기록
- 해외 사후관리 보존 등 사후관리 서식의 사례
- － <표 5-7> 공공미술 관리대장 기록내용 참고
 - － <표 5-8>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평가항목 참고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표 7-10〉 개정 후 설치관리대장 별도서식의 예

작 품	① 작품제목		② 작가명	
	③ 작품재료		④ 작품형식	
	⑤ 작품크기		⑥ 작품 규모/ 범위	
	⑦ 계약업체		⑧ 작품가격	원
	사진			
	정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작 품 설 치	⑨ 설치장소		⑩ 설치기간	
	⑪ 설치업체		⑫ DB 분류번호	
	⑬ 보고대상		⑭ 관리실무자	
	설치 전, 후 사진			
별 첨				

① 작품제목 : 작품의 이름을 기입
 ② 작가명 : 한국 국적은 한글로 외국인은 자국어로 기입
 ③ 작품재료 : 기본적인 재료 구분과 구체적인 명칭으로 기입
 ☞ 예시 ㉠ 돌(화강암) ㉡ 금속(스틸, 주물, 브론즈 등) ㉢ 나무(참나무),
 ㉣ 혼합재료(브론즈, 대리석, 나무재료에 오일스텐마감)
 ④ 작품형식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⑤ 작품크기 : 기본적인 가로×세로×높이(cm)
 ⑥ 작품규모 : 기본적인 오브제 조형물은 기입을 안 해도 됨. 가변적이거나 그 면적이 모호한 경우, 함께 시공한 주변부지 면적을 기입(기본 m)
 무형적인 경우, 형식(커뮤니티 작업)이나 별도 도큐먼트 자료를 별첨
 ⑦ 계약업체 : 작품을 계약한 업체 명, 대표자, 연락처 기입(계약 서류 복사본 별첨)
 ⑧ 작품가격 : 작품가격 기입
 ⑨ 설치장소 : 주소포함 정확한 장소를 설명(예 : 건물 앞 화단, ○○동 앞)
 ⑩ 설치기간 : 영구적(건축물과 관계없이 영구적인 작업 : 건물철거 시 작품 기증, 매각, 이전 가능)
 반영구적(폐기시점 불분명 한 시한적인 작업)
 일시적(템퍼러리한 작업으로 이런 경우 정확한 설치기간 기입)
 ⑪ 설치업체 : 작품을 설치한 업체 명, 대표자, 연락처 기입(계약 서류 복사본 별첨)
 ⑫ DB분류번호 : 공공미술 설치신고 후, 데이터 분류번호 기입
 ⑬ 보고대상 : 작품 설치 후 정기 점검 및 보고 대상 기입(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
 ⑭ 관리실무자 : 작품 설치 후 정기 점검 및 보고 실무자 기입(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
 ※별첨 : 작가 자료, 계약자 자료 외 계약 당시의 상황 자료(CD, 관계자 연락처 등)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표 7-11〉 개정 후 미술장식품 관리점검표 별도서식의 예

조사항목	파손정도		
	상	중	하
중심구조의 불안정			
지지구조의 불안정			
경미한 구조 손상(휨, 구멍, 장식탈락 등)			
표면손상(박락, 변색, 긁힘, 낙서 등)			
화학적 퇴락(부식, 중합체 파손 등)			
생물학적 훼손(곰팡이, 해충 등)			
먼지에 의한 오염(새 배설물, 먼지 등)			
전기적 장치의 고장(LED, 조명 등)			
기계적 장치의 고장(미디어, 키네틱 작품의 동작 정지 등)			
기타사항			
훼손, 파손, 망실의 정도			
상태가 안정적임	보존처리가 필요 없음		○
상태가 안정적이나 오염제거, 세척 및 도장 문제	기초적인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상태가 안정적이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	원상복구 권고		○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		○
별첨			

□ 미술장식품 점검의 주기

- 정기 점검의 필요성은 있으나 인력부족과 다른 시설에 비해 안전점검의 필요성은 다소 떨어짐
- 따라서 연간 1회 점검은 다소 비효율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2년마다 1회씩 점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단, 안전과 관련된 점검은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시기와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건축주가 관련 협회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 부서나 지역문화재단에 통보
- 대형작품이나 크기가 불안정한 작품, 재료, 재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작품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표 7-12〉 미술장식품 안전점검의 예(시기와 대상은 추후 조정)

장르	크기 및 특징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입체	높이 5미터 이상의 작품	4년	10년
	높이 10미터 이상의 작품	2년	5년
모빌	공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설치된 중량 1톤 이상의 작품	4년	10년
기타	인허가부서에서 정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4년	5-10년
		정기점검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 7-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7항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 8항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리대장 내용 보강 필요

- 현재 관리대장은 작품내역(작가, 제목, 크기, 재료, 가격 등)과 작가약력, 작품설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사후관리와 필요한 내용을 관리대장에 포함하거나 또는 별도서식으로 작성, 운영
- 세부 재료, 결합 방법, 기초 및 구조 현황, 재료에 따른 보존기간
- 세척 방법, 보존유지 방법, 안전관리 기간 및 관리자 연락처 등 기재
- 현재는 건축주가 요구할 경우 작가(업체)가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 부록의 관리대장 내용 참조

6)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정시 반영사항

-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의 미비함으로 인해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없어 지자체의 사후관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례 개정 시 사후관리의 책임성 부분과 예산 집행 부분을 열어둠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설치보고와 관리 계획 항목 추가 후 미술장식포털에 등록
 - 관리계획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운영 책임성 부여
 - 미술장식품의 설치 이후 변경, 이동, 철거, 복원 등의 규정 신설
- 정기점검의 시기
- 정기점검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1년 여유를 둬
 - 안전점검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시 1년 여유를 둬
 - 정밀안전점검은 10년을 기준으로 함(〈표 7-12〉 참조)
- 철거시 기증, 기부와 관련된 조항 검토

7) 저작권 문제

- 그간 미술장식품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었으나 개정저작권법 및 향후 한-미, 한-EU FTA 발효 등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후 저작권 분쟁 소지가 높으므로 미술장식품의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2009년 7월 23일 개정저작권법 발효됨
 - 대외적으로 저작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가 한층 강화되어 온오프라인에서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물에 제동이 걸림

▶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함.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됨.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 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은 크게 저작권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향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공미술 관련 DB구축, 교육 및 홍보 등 각종 지원 업무 수행시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검토, 협의하지 못할 경우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예상됨
- DB구축,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업무 수행시 저작권 문제로 미술작품의 이미지 게재의 제약이 많아짐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 받는 것이 바람직
- 표준조례안에 저작권과 관련된 조항 삽입은 어려우나 저작권 이용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함
 - 표준조례안에 저작권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저작권자와 건축주간의 계약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항 삽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은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향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저작권자와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임
 - 계약서상에 저작권 조항이 삽입되지 않을 시에는 관리대장과 별도로 ‘미술작품저작물 이용허락서’를 별도서식으로 작성하여 준공시 제출토록 함
 - ‘미술장식품저작물 이용허락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에 준하여 별도서식으로 양식 작성
 - ‘미술장식품저작물 이용허락서’는 한편으로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므로 DB구축, 교육, 홍보 등 미술장식품 관리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 수행시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작권 양도
- 저작권 양도의 범위 및 내용
 -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 건축주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저작물 활용 범위는 넓음
 - 무분별한 저작권 남용으로 저작권자(작가 및 유족)의 피해가 예상
 -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 저작권자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 건축주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미지 사용의 제약을 받아 교육·홍보 등 활용이 어려움
 -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 양도 범위, 기간에 따라 내용이 상이함
- 그간 미술장식품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건축주와 저작권자간의 계약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저작권 일체의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 이 경우 건축주가 대부분 ‘갑’의 지위를 갖고 있어 ‘을’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으로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많음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저작권자의 입장에서서는 불합리한 계약관계로 향후 저작권 침해 발생 소지가 높음
- 저작권 관련 조항이 계약서 문구에 삽입되지 않는 경우
 - 건축주 및 저작권자의 저작권과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여 미술장식품 관련 계약의 대부분에서 저작권 관련 조항이 누락됨
 - 이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는 보호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지원 업무 수행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관련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음

〈표 7-14〉 저작권 침해 사례

- ▶ **저작재산권 침해 사례** : <2010년 4월 6일 헤럴드경제 기사> 호텔 로비에 전시된 미술품이 CF의 배경으로 나왔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작가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음.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O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자신의 미술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술가 박모 씨가 B건설과 광고대행사인 D기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음.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의 미술저작물을 단순히 벽면에 설치된 인테리어라고 단정하고 이를 배경으로 동영상 광고를 제작, 방송한 과실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동영상 광고를 TV를 통해 송신한 만큼 원고의 미술저작물에 대한 복제권과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 ▶ **저작인격권 논란 사례** : 조나단 보롭스키의 미술저작물 ‘헤머링 맨’을 소유한 건축주가 [그림 7-2]처럼 산타클로스 복장을 부착했고, 이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음. 이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았으면 관계없으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

[그림 7-2]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례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 받는 경우
 - 저작권 양도의 범위와 기간에 따라 상이하하며, 대체로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물 이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음
 -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의 범위가 불명확함
 - 예를들어, 기업이 소유한 미술장식품을 웹사이트에 홍보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의 캘린더에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기념품 제작에 사용하는 경우 등 2차적 저작물로 사용될 경우에 2차적 저작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나, 비매품으로 배포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가 명확하지 못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음

〈표 7-15〉 계약서상 저작권 관련 조항의 예 (민간기업 계약의 예)

제17조 저작권 및 사용권

- ① 이 계약의 완료와 동시에 미술장식품의 사용권은 '갑'에게 양도된다.
- ② 이 계약의 완료와 동시에 미술장식품의 복제,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갑'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기로 한다.

〈표 7-16〉 건축주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작물 사용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

건축주의 경우

- 기업에서 CF 촬영시 미술장식품을 배경으로 할 경우
- 기업에서 캘린더로 미술장식품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 캘린더를 판매할 경우
- 기업에서 기념품으로 미술장식품의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 기념품을 판매할 경우
- 미술장식품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만든 홍보, 안내 팸플릿을 방문객들에게 배포할 경우
- 기업의 웹사이트에 미술장식품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경우
-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 공공미술 제도 홍보를 위해 인쇄물 제작시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 관련 웹사이트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 기타

- 저작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은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으나 저작권격권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주, 저작권자의 이해가 부족하며, 특히 미술작품의 유지, 관리 및 변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주의를 요함
 - [그림 7-2]처럼 미술작품에 다른 구조물을 탈·부착할 경우
 - 작품 및 위치 변경시에는 미술작품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작품 유지·관리시 세척 및 오염 제거 등 원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관리는 저작권 문제와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관련이 없으나 탈색시 재도장이나 파손시 복구 등은 저작권권과 직접 관련되어 주의
를 요하는 사항임

- 탈색시 재도장, 파손시 복구 등의 보수시 범위와 한계를 어느 정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의 예

〈표 7-17〉 국립현대미술관의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No.		
저작권 이용허락서		
작가 성명	국문 : (한문 :)	이메일 :
	영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
작품제목		
설치장소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를 통한 정보통신망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
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합성이나
기타 이미지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 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 저장, 전송, 방송 등을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별도로 협의 된 시점 까지 하고, 별도의 변경의사가 있을 경우, 3개월 이전에
별도의 협의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정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이전, 기증을 할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함.
6. 작품의 유지관리나 훼손에 대한 복원 등 직접적인 작품의 물리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걸쳐 진행 하여야 함 .
7. 작품이외의 홍보나 이벤트성의 부착물은 할수 없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위한 이미지 사용은 사전 협의를
득하여야만 됨.

년 월 일

저작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8) 건축물 철거시 미술장식품 처리 방안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가 1972년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2010년 현재까지 38년이 경과함
-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5층 이상 아파트의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1983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등 건축물은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되어 대부분 철거되었거나, 철거가 진행 중임
 - 1984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등 건축물은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임

〈표 7-18〉 미술장식제도 주요시기별 건축물 철거 여부

주요시기	미술장식	건축물
1972년	미술장식제도 법제화	거의 모든 건축물이 철거됨
1984년	서울시 의무화	1984년 이전 건축물은 대부분 철거됨 1985년 이후 건축물은 2010년부터 순차적 철거
1995년	전국적 의무화	2025년부터 철거 대상 발생
2005년이후	연간 1천여 점, 1천억 원 대 미술장식품 설치	

-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상 아파트 재건축 연한은 20~40년이나 20~30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건축물 철거에 따른 미술장식품 처리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수도 있음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표 7-19〉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비교(현행 및 개정안)

준공연수	81년 이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93년 이후
현행	20년	22년	24년	26년	28년	30년	32년	34년	36년	38년	39년	40년	
개정안	20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주 :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개정안은 2009년 9월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되었으며, 2010년 5월 서울시의회 재상정 후 다시 보류되어 현재 재건축 허용 연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국민일보 2010년 5월 11일)

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689688&cp=nv>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제도 법제화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기준으로 철거되었거나 향후 철거대상이 될 건축물 및 미술장식품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1972년 미술장식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1983년까지 12년간 약 300여 점, 200억 원 가량의 미술장식품이 이미 철거되었을 것으로 추정
- 1984년 동 제도가 서울시에서 의무화된 이후 1986년까지 3년간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약 400여 점, 3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부터 연간 약 100여 점이 순차적으로 철거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상 재건축 허용 연한이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2~3년 내에 철거될 수 있음
- 1995년 동 제도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이후에는 년 평균 미술장식품 설치 수량 및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5년부터는 철거되기 시작할 것임

〈표 7-20〉 향후 철거대상 건축물 및 미술장식품 현황

건축물 준공년도	현행 건축물철거 예정년도	개정시 건축물철거 예정년도	대상작품	대상금액	비고
1972년 ~ 1983년	철거	철거	300점 추정	200억 추정	1972년 법제화 연평균 30여 점 설치 추정 * 1972년 ~ 1992년 1,562점 설치
1984년 ~ 1986년	2010년 ~ 2016년	철거	400점 추정	300억 추정	1984년 서울시의무화 연평균 130여점 설치 추정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1987년 ~ 1992년	2019년 ~ 2032년	2011년 ~ 2021년	800점 추정	700억 추정	* 1972년 ~ 1992년 1,562점 설치
1993년	2033년	2023년	241점	200억 추정	
1994년	2034년	2024년	200점	200억 추정	
1995년	2035년	2025년	194점	200억 추정	1995년 전국 의무화
1996년	2036년	2026년	325점	328억원	
1997년	2037년	2027년	374점	303억원	
1998년	2038년	2028년	400점	300억 추정	
1999년	2039년	2029년	431점	300억 추정	
2000년	2040년 이후 건축물철거	2030년 이후 건축물철거	619점	332억원	
2001년			769점	554억원	
2002년			747점	516억원	
2003년			985점	712억원	
2004년			959점	700억원	
2005년			1,142점	806억원	
2006년			1,162점	866억원	
2007년			1,027점	869억원	
2008년			955점	975억원	

〈표 7-21〉 건축물 철거시 예상되는 미술작품 처리 형태

건축주에 따른 구분	용도별 건축물 종류	예상되는 처리 형태
건축주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대부분 폐기되거나 방치됨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되는 건축물	소유관계가 복잡하여 대부분 폐기되거나 방치됨
건축주가 소수인 경우	기업의 사옥 의료시설	미술작품의 질적 수준이 높고, 건축주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재활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되거나 방치될 수 있음
	오피스건물 등 임대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질적수준이 높고, 건축주 관심이 많은 경우에는 재활용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폐기되거나 방치될 수 있음
건축주가 공공기관인 경우	청사 등	현재 특별한 처리 지침이 없음

* 상기 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1972년 ~ 1997년 통계 :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문화관광부)

1997년 ~ 2004년 통계 :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집(문화관광부)

2005년 ~ 2008년 통계 : 200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 이처럼 미술작품제도에 의거해 설치된 예술품이 노후 된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함께 철거되는 등 방치되고 있고, 2010년부터는 연간 130여 점(100억 원) 가량의 미술작품

제7장 건축물 미술장식 사후관리 개선방안

이 철거될 수 있음

- 특히 동 제도가 전국적 의무화한 1995년 설치된 미술작품이 빠르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 처리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건축물 철거시 미술작품이 처리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음
- 건축물 철거시 미술작품까지 철거될 경우 문화적 낭비이므로 기증 등을 유도하여 문화예술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함
 -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미술작품
 - 국가 컬렉션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미술작품
 - 지자체 관리품목으로서 도시미관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 건축물 철거시 미술장식품 중 컬렉션 가치가 현저히 높은 미술작품은 국공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취득하거나 소규모 조각공원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국공립미술관 소장품으로 취득(기증 또는 구입)
 - 전국적 차원의 마스터플랜 아래 적시적소에 공공미술로 재배치
 -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지역 내 소규모 조각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
 -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공공미술나눔 형태로 활용하여 국민의 향수권 제고
-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술작품을 기증하는 건축주에게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 미술작품 기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컬렉션 가치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기증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기증을 받음
 -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담당하여 효율성 제고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1. 현행 법률과 개정안
2. 시행령 개정안
3. 표준조례안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1. 현행 법률과 개정안

□ 현행 법률

- 현행 법률은 ‘미술장식’이라는 용어 사용
- 의무 이행 방법은 미술장식의 설치만 가능

□ 법률 개정안(법제처 심사안)

-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를 ‘미술작품의 설치’로 변경
- 의무 이행 방법으로 미술작품 설치 외에 선택적 기금제 도입

〈표 8-1〉 현행 법률과 법률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제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제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건축주는 제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없다.</p>
<p>〈신설〉</p>	<p>④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금액보다 낮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⑤ 제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p>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p>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8. (생략)</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	---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2. 시행령 개정안

1)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 미술장식(제12조제4항2호)
 - 미술장식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개정 필요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등 조형예술물이라고 나열하고 있는 것은 미술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벽화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오류이므로 ‘회화, 조각, 공예, 벽화 등 미술작품’으로 수정
 - 법률에 언급하지 않은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을 추가한 것은 법령의 위임을 벗어나며,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음. 그러나 공공미술에는 미술가가 창작한 스트리트 퍼니처, 놀이터, 분수대 등 다양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술가가 창작한’이라는 제한을 둬으로써 미술장식에 포함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제13조)
 - 미술장식 제도의 관리·감독 책임을 시도 지사로 통일함
 - 시도 지사가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설치 의무를 통보해야 함을 규정함
 - 시도 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해야 함을 규정함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제14조)
 -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시 전문인력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함
-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제15조)
 - ‘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를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로 확대 개편
 - 시도 지사의 사후관리 관리감독 책임 명시
 - 시도 지사가 미술장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시도 지사가 미술장식 대장을 생성·관리하도록 함
 - 건축주가 사후관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미술장식을 변경 또는 철거해야 할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와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제15조의2)
 - 미술장식 설치 현황 파악, 사후관리 지원, 미술장식 지원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규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자료협조 의무 규정

□ 권한의 위임·위탁 등(제15조의 3)

- 시도 지사가 지역문화재단에 미술장식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미술장식 설치 금액(별표 2)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의 경우, 미술장식 설치 금액을 산출하는 요율을 건축비용의 1백분의 1로 개정

2)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 앞 절에서 살펴본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 사항을 추가함

□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용어 개정

- 법에서 미술장식의 설치를 미술작품의 설치로 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용어 개정

□ 기금출연 절차방법(제15조의2)

- 법에서 선택적 기금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금출연 절차방법 규정
- 건축주가 기금출연약정서를 시도 지사를 통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기금출연은 준공 30일 이전까지 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출연일로부터 15일 내에 기금출연확인서를 시도 지사를 통해 건축주에게 교부하도록 함

□ 기금출연 금액(별표 3)

- 별표 2에서 정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으로 규정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표 8-2〉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행 시행령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p>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좌동)</p>
<p>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p>	<p>(좌동)</p>
<p>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p>	<p>(좌동)</p>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광역시에,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3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회화·조각·공예·벽화 등 미술작품
- 2. 미술가가 창작한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별표2 수정)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축주에게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미술장식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에 의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장식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미술장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미술장식의 설치와 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설치계약금액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신 설〉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미술장식의 설치계약금액, 예술성, 건축물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으로 이동)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장 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미술장식 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미술장식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이전·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면 건축주는 사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한 미술장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미술장식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는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 공개된다.

⑤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사도지사가 제13조에 따라서 건축주가 새로운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의2(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의 구축)①한국문화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신 설〉

예술위원회는 전국적인 미술장식 설치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지원, 미술장식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미술장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시도,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의3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시·도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할 의무 통보
2. 제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여부 확인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한 조사, 현장 확인 및 건축주의 신고 관리
5. 제15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 대장의 생성 및 관리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별표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장식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표 8-3〉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p> <p>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p>	<p>제12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 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p>② 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p> <p>③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 비용"이란 제3조 제2항에 따른 심의신청 연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p>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
- 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신 설 〉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려면 해당 건축물이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광역시에,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1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

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 1. 회화·조각·공예·벽화 등 미술작품
- 2. 미술가가 창작한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

⑤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3]과 같다.

제13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방법)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건축 허가 또는 승인 후 미술작품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사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사도지사는 제2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작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확인 결과 미술작품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미술작품의 설치와 심의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계약금액과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5. 그 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면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지 아니한다.

표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중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미술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예술성, 건축물 및 주위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시·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현장 확인 또는 건축주의 신고 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 대장을 생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미술작품 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이 이전·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면 건축주는 사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미술작품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는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 공개된다.

⑤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사도지사가 제13조에 따라서 건축주가 새로운 미술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p>작품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신 설></p>	<p>제15조의2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①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국적인 미술작품 설치 현황 파악과 사후관리 지원, 미술작품 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국가, 시도,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의3 (기금 출연 절차방법)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영 제2조제6항에 의한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다는 기금출연약정서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출연은 준공 30일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5일 안에 기금출연확인서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5조의4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시·도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할 의무 통보 2.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여부 확인 4.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한 조사, 현장 확인 및 건축주의 신고 관리 <p>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문화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p>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별표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별표 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제12조제6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별표2]의 제1호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기금출연 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	[별표2]의 제2호 가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	1) [별표2]의 제2호 나 1)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별표2]의 제2호 나 2)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3. 표준조례안

1) 현행 법령에 따른 표준조례안

- 미술장식 설치 의무 통보 절차 규정
-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규정
 - 공동주택은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에서 정함
 - 시·군 지역 소재 건축물은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에서 정함
-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규정
 - 미술가 선정
 - 건축주와 미술가 등의 계약
 - 미술장식설치계획서 작성
 - 미술장식 심의 신청
 - 준공 6개월 전까지 심의가결 되지 않을 시 기금출연 권장
 - 미술장식 심의결과의 통보 및 공개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 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의 구성시 미술분야와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하도록 함
 - 회의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천하는 공공미술 전문가 1인이 포함되도록 함
 - 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심의기피제 도입
 - 위원회 해촉 사유 규정
 - 회의 공개 절차 및 방법 규정
- 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 건축주가 시·도 지사에게 미술장식 설치 신고
 - 시·도 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 확인
 -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 미술장식 대장의 생성 관리

- 시도 지사가 미술장식 설치 신고에 근거하여 미술장식 대장 생성 관리
- 시도 지사는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

□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 건축주에게 사후관리의 주체로서의 책임 명시
- 시도 지사가 1년이상 2년이하 주기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미술장식의 보수 복원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
- 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함
- 이전·철거·훼손분실시 원상회복하도록 함
- 변경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함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함. 단 철거의 경우 새로운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함
- 시도 지사가 미술장식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지사가 미술장식 관련 업무를 지역문화재단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재단이 미술장식의 보존관리 업무를 보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

- 앞서 현행 법령에 따른 표준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그외 다음 사항을 추가함

- 미술장식을 미술작품으로 용어 교체

- 선택적 기금제 도입 관련 조항

- 시도 지사가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설치 외에 기금출연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도록 함
-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 기금 출연 절차 및 방법 제시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표 8-4〉 현행 법령 및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

현행 법령에 따른 표준조례안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
<p>제1조(미술장식 설치 등에 관한 통보) 사도지사는 법 제9조제항에 의하여 건축주가 미술장식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조(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통보) ① 사도지사는 법 제9조제항에 의하여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조(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영 제2조제5항에 의하여 미술장식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군지역 소재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p>② 사도지사는 건축주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 영 제2조제5항에 의하여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군지역 소재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이상 1천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p>제3조(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① 영 제2조제6항에 의하여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제2조제1항1호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 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건축물 : 제2조제1항2호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 <p>제4조(기금출연 절차) 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영 제2조제6항에 의한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다는 기금출연약정서를 사도지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p>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를 의뢰할 미술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 등의 방법에 의하여 미술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공공미술기획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건축주가 미술가 및 공공미술기획자와 맺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 미술가, 공공미술기획자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장식의 제작설치 3. 미술장식의 사후관리 4. 미술장식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장식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건축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장식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전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여러 장소에 복수의 미술장식 설치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미술장식 설치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다.</p> <p>④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부터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사도지사에게 심의신청을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는 적어도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사도지사에게 미술장식 설치 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금출연은 준공 30일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5일 안에 기금출연확인서를 사도지사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5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의하여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를 의뢰할 미술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개공모, 제한공모, 지명 등의 방법에 의하여 미술가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공공미술기획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건축주가 미술가 및 공공미술기획자와 맺는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주, 미술가, 공공미술기획자의 권한과 책임 2. 미술작품의 제작설치 3.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4.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리 5. 기타 미술작품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③ 건축주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전체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여러 장소에 복수의 미술작품 설치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미술작품 설치 마스터플랜을 작성할 수 있다.</p> <p>④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 후부터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사도지사에게 심의신청을 할 것을 권장한다. 건축주는 적어도 준공예정일 6개월 전까지는 사도지사에게 미술작품 설치 계획에 관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4조제4항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장식의 예술성 2. 미술장식의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p>⑤ 건축주가 준공예정일 3개월 전까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도지사는 건축주에게 기금출연을 권장하여야 한다.</p> <p>⑥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당해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p> <p>제6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14조제4항에 의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술작품의 예술성 2. 미술작품의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3. 미술장식의 유지관리
4. 미술장식의 가격
5. 그밖에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5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미술장식 심의위원은 미술분야의 전문가(공공미술기획자, 미술평론가, 미술가 등)와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④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는 미술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심의를 위해 미술작품가격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관련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의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공미술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7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8조(해촉)사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이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3.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4. 미술작품의 가격
5. 그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제7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미술작품 심의위원은 미술분야의 전문가(공공미술기획자, 미술평론가, 미술가 등)와 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사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④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는 미술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심의를 위해 미술작품가격심의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건축주의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 ② 회의는 관련 전문가가 3분의 2이상 포함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의에는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공공미술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9조(심의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10조(해촉)사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이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2. 위원이 임기 중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회의공개)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2. 감사, 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3. 기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공보에 공개한다.

제10(조(미술장식의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후 미술장식 설치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장식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도지사는 미술장식이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미술장식 대장의 생성관리) ① 건축주는 미술장식의 설치가 완료된 후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를 위해 미술장식 대장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도지사는 영 제5조의2에 의한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미술장식 대장의 사본을 분기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미술장식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는 미술장식을 원형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있다.

-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2. 위원이 임기 중 파산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
-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회의공개) ①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2. 감사, 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항
- 3. 기타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제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회의록은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후 공보에 공개한다.

제12(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가 완료된 후 미술작품 설치 확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도지사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미술작품이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이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미술작품 대장의 생성관리) ①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이 완료된 후 미술작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미술작품 대장을 생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도지사는 영 제5조의2에 의한 건축물 미술작품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미술작품 대장의 사본을 분기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원형대로 유지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 ② 사도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에 대하여 매 (1년이상 2년이하)년마다 현장확인 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 ③ 사도지사는 미술장식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장식의 보수 복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1.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 보존처리가 필요 없음
 2.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오염제거, 세척이 필요하거나 도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 기초적인 보수
 3.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 원상복구 권고
 4.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정밀 안전진단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
- ④ 사도지사는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관련 협회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도지사는 미술장식이 이전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면 건축주는 사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⑦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장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미술장식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5조제6항에 의하여 통보, 공개된다.
- ⑧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장식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사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건축주가 새로운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미술장식의 활용 지원) ①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 ② 사도지사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매 (1년이상 2년이하)년마다 현장확인 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
- ③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건축주가 미술작품의 보수 복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1.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 보존처리가 필요 없음
 2.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오염제거, 세척이 필요하거나 도장에 문제가 생긴 경우 : 기초적인 보수
 3. 상태가 안정적이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 : 원상복구 권고
 4.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 정밀 안전진단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 명령
- ④ 사도지사는 상태가 불안정하고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관련 협회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이 이전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의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으면 건축주는 사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⑦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미술작품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5조제6항에 의하여 통보, 공개된다.
- ⑧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7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사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건축주가 새로운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미술작품의 활용 지원) ① 사도지사는 미술작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제8장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표준조례안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장식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의 제작
2. 미술장식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민자원봉사활동
3. 미술장식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미술장식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미술장식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사도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의 보존관리 업무를 미술품 보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술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의 제작
2. 미술작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시민자원봉사활동
3. 미술작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미술작품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미술작품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사도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역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보존관리 업무를 미술품 보존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 문화관광위, 2000
2. 김승덕, 프랑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새로운 주문자', 문화예술 통권 301호, 2004
3. 김영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계레21 546호, 2005
4. 김유정, 공공건축의 미술장식 제도상 문제점과 대안, 문화도시문화복지 143호, 2003
5. 김은영, 공공미술 정보망 구축의 방안, 예술경영연구 4집, 2003
6. 김재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 절차에 관한 연구, 동의공업대학논문집 24권, 1998
7. 김준기, 공공미술 논의를 공론의 장으로, 문화예술 299호, 2004
8. 노원희, 현대미술의 새로운 주체: 행동주의 공공미술, 동의논집 34권, 2001
9. 문화관광부, 건축물미술장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자료, 2004
10. 문화관광부,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문화관광부, 2005
11. 문화관광부,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업무 처리지침, 문화관광부, 2005
12. 문화관광부, 공공미술을 통한 지역문화환경 개선방안 심포지엄, 문화관광부, 2005
13. 박찬경, 공공미술 개념과 제도 도입을 위해, 너울, 110권, 2001
14. 박찬경·양현미, 공공미술과 미술의 공공성, 문화과학, 53호(봄), 2008
15. 부산미술포럼,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부산미술포럼, 2007
16. 서성록, 미술장식제도의 운영방안, 미술평단 94호, 2009
17. 성완경, 공공미술은 문화적 기득권이 아니다, 문화예술 301호, 2004
18. 손문호 외, 공공미술에서의 환경조형물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2002
19. 양현미, 건축물 미술장식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1997
20. 양현미, 공공미술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
21. 양현미, 공공미술의 제도적 기반, 현대미술사연구 16집, 2004
22. 양현미, 인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외국의 공공미술제도, Korea Art 2000, 2000
23. 양효석, 공공미술 출연 기금의 운영방안, 미술평단 94호, 2009
24. 예술경영지원센터, 200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2008
25. 윤태건, 미술장식, 공공미술에 대한 오해와 이해, 문화예술 301호, 2004
26. 이광준, 공공미술의 새로운 실험-서울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미술평단 94호, 2009
27. 이용덕, 동서미술의 제문제-국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따른 환경 조각의 실태연구,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1권, 1999
28. 이재연 외, 미술장식 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문화체육관광부, 2009
29. 이지희, 공공미술의 신경향, 디지털디자인학 연구 9권 3호, 2009
30. 전용석, 공공미술의 사회적 확장: 뉴장르 퍼블릭아트, 문화예술 301호, 2004
31. 전용석, 미술장식을 넘어 공공미술로, 민족예술 108권, 2004
32. 전용석, 미시적 관계망 구축으로서의 공공미술, 문화정책논총 17집, 2005
33. 조성송, 지방자치단체 미술장식품 설치의 개선방안, 서울대 조경미학연구소, 2004
34. 홍경한, 미술장식제도 다시생각하기, 월간퍼블릭아트 33호, 2009
35. American for the Arts 의 통계(PDF)
36. a 'parent' Development Plan Document'(PDF)

참고문헌

37. Art in public places, Auckland City Council's public art policy(PDF)
38. Cambridge City Council,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 Provision of Public Art as Part of New Development Schemes"(PDF)
39. City of Vancouver, 'Land Use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Guidelines–Public art Policies and Guidelines(PDF)
40. Deaccession Guidelines – For Removing Artwork from Public Sites Under City or Park Board Jurisdiction(PDF)
41. Decommissioning Public Art A Policy for East Kent Local Authorities(PDF)
42. Land Use and Development Policies and Guidelines–Public art Policies and Guidelines(PDF)
43.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ODPM) The Planning System: General Principles (ODPM, 2005)(PDF)
44. Percent for Art Guidelines City of Portland & Multnomah County Revised October 2006(PDF)
45. Planning Policy Statement(PDF)
46. Public art committee by–law(PDF)
47. Public Art : Per cent for Art Scheme_General national guidelines(PDF)
48. Re–siting or removal of public art works Policy and Guidelines(PDF)
49. San Francisco Arts Commission Civic Art Collection Policies and Guidelines(PDF)
50. the Cambridge Arts Council,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2002
51. The Planning and Compulsory Purchase Act 2004(PDF)
52. The Royal Borough of Kensington and Chelsea,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 Public Art"(PDF)
53. <http://egov.cityofchicago.org/>
54. <http://vancouver.ca/>
55. <http://www.artpointtrust.org.uk/>
56. <http://www.aucklandcity.govt.nz>
57. <http://www.commissionseast.org.uk>
58. <http://www.commissionsnorth.org>
59. <http://www.communities.gov.uk>
60. <http://www.communities.gov.uk/>
61. <http://www.dast.gov.ie/>
62. <http://www.opsi.gov.uk/>
63. <http://www.portlandonline.com/>
64. <http://www.publicart.ie/>
65. <http://www.publicartonline.org.uk>
66. <http://www.publicart.or.kr>
67. <http://www.sfartscommission.org>
68. <http://www.toronto.ca/>

부록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가이드라인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서식
3. 건축물 미술장식 표준계약서 사례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민원 Q&A

부록

1.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가이드라인

- 이 장에서는 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미술장식 설치시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에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임.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미술장식 설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와 동일한 절차를 따르게 됨
- 기금 납부 가이드라인은 법령 개정안에 따라 작성된 것임
- 미술장식 심의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은 미술장식 설치 가이드라인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현행 법률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임
- 용어는 법률 개정 이전이므로 모두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1) 이상적인 설치 절차

1. 공공미술 설치 의무 통보
2. 미술작품 계획 수립
 - 1) 기획(Planning)
 - 프로젝트 예산 편성
 - 공공미술 대행 실무팀 선정
 - 컨셉 기획
 - 2) 작가 선정(Selection)
 - 선정위원 구성 또는 공모
 - 작가 선정
 - 계약 협의(Contractual Arrangements)
 - 지불 일정 합의(Payment)
 - 기록 및 정식계약(Documentation & Public Engagement)
 - 3)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 4) 미술작품 계획 수립
3. 심의
 -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
 - 심의결과 통보
4. 제작설치(Realization)
 - 작품 제작
 - 설치장소 공사

부록

- 작품 설치
- 조명, 안내판 등 설치
- 평가

5. 설치확인

- 설치 보고
- 설치 확인

6. 유지관리(Conservation & Care)

- 관리대장(Inventory) 작성
- 저작권(Copyright)에 입각한 작품활용 동의
- 상시관리
- 정기점검
- 정밀안전진단 / 특별안전진단

7. 보존처리

- 보존과학자 선정
- 작품 상태보고서 작성
- 보존계획 수립
- 보수처리

8.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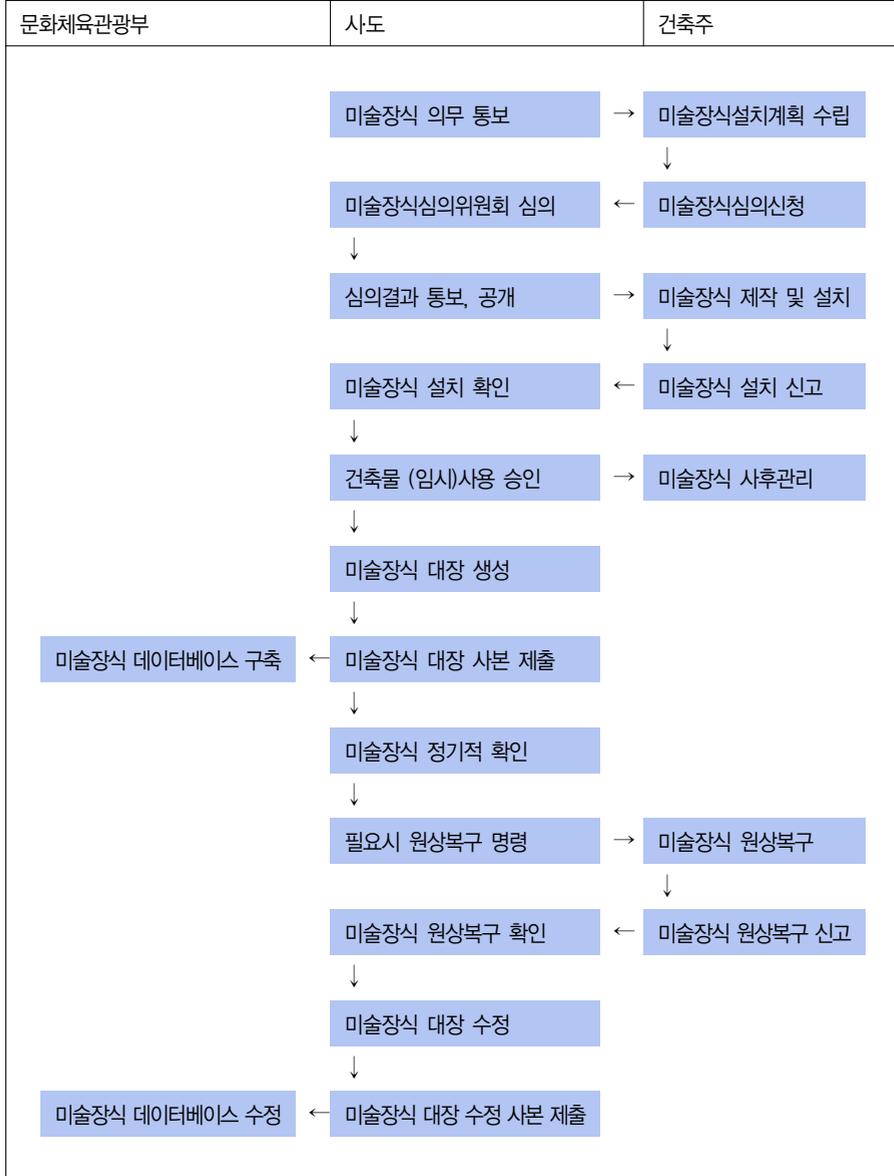
- 홍보자료 : 브로셔, 홈페이지
- 자원봉사자
- 투어 및 교육 프로그램

9. 철거

- 계약시 유지관리 및 철거 관련 사항 포함
- 철거 기준 정립
- 철거 제안서 제출
-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 작가의 처분방법 동의
- 철거 비용 배정
- 철거

부록

2) 미술장식 설치 가이드라인



부록

□ 건축주 직접 설치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단계	내용
설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작가 및 기획관리자 대행)는 설치완료 후 미술장식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도에 제출 - 향후 온라인시스템 구축여부에 따라 별도 출력 없이 인터넷상으로 보고, 승인 추진
설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확인은 심의통과시 계획대로 설치되었는지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설치확인은 당해년도 심의위원과 지역문화재단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설치확인은 준공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설치보고 후 5일 이내 완료
설치완료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확인 결과,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보완조치 후 건축물 사용승인 - 심대한 하자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보류
건축물 사용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담당자는 건축주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미술장식 대장의 생성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담당자는 미술장식의 사후관리를 위해 미술장식 대장을 생성 - 대장관리는 인허가부서 또는 지역문화재단에서 관리 - 사후관리 및 재심의를 통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미술장식 대장 수정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구축 운영 - 시도 담당자는 미술장식 대장의 사본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 시도 담당자는 수정된 사후관리 및 재심의를 통한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미술장식 대장의 사본을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장식을 1년 내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점검 - 지역문화재단 또는 미술보존전문기관에 민간위탁 가능 - 점검 후 보존상태에 따라 조치

부록

□ 기금으로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단계	내용
연간 기금사용계획 수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전담부서에서 연간 기금사용계획 수립
기금의 지역 이관	- 연간 기금사용계획에 따라 시도(지역문화재단)에 기금 이관 -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매칭비율에 따라 기금 매칭 - 시도(지역문화재단) 연간 공공미술기금 편성
기금사업 공고 및 기금지원	-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진흥을 위한 기금 사업 공고 - 기금사업은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미술 외에 한시적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지원 가능 - 지원신청서 접수 - 지원 심의 - 미술가 및 미술단체 선정 - 시도와 미술가 및 미술단체 간 지원계약 체결 - 기금 지원
공공미술 제작 설치	- 미술가 및 미술단체 공공미술 제작 설치
완료 보고	- 미술가 및 단체 시도(지역문화재단)에 사업완료 보고
완료 확인	- 전국단위 사업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완료 확인 - 지역단위 사업의 경우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사업완료 확인 - 임시설치작품 및 프로그램은 철수 및 사업종료시 확인 - 사업비 정산
사업평가	-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고 - 설치확인과 사업평가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음
공공미술 관리대장 생성 관리	-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 관리대장 생성 관리 - 미술장식 관리대장과 별도 생성 관리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	- 관리대장 사본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에 제출
사후관리	- 시도(지역문화재단)에서 적정 주기로 점검 - 점검시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미술 보수복원 처리 - 공공미술 보수복원시 전문보존관리기관에 위탁 가능

☞ 사후관리 시행절차는 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 간의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이 확정된 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함

부록

5) 심의 가이드라인

단계	내용
설치의무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도·자치도는 설치 의무 여부를 건축주에 통보 - 통보시 건축주 직접 설치 및 기금 납부 관련 내용 안내
심의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장식품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식 및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 - 건축허가부서를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착공 후 6개월 이내 심의신청을 권장하며 적어도 준공예정일 1년 전까지 최초 심의신청을 해야 함 - 시도 담당부서에서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식 및 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회부
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할 수 있음 - 전문가 3분의 2이상, 당연직 3분의 1이내 -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는 정기적으로 개최 - 심의 회의시 전문가 3분의 2이상으로 구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 공공미술전문가 1인 참석 - 심의 기피제 도입 - 필요시 미술장식가격심의소위원회 개최 가능 - 회의 공개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탈락시 - 건축물의 설계변경시 - 미술장식의 위치이동이 큰 경우 - 미술장식 작품변경시 - 미술장식의 훼손이 큰 경우 - 미술장식 철거시
심의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에게 심의결과 (가결/조건부가결/부결) 통보 - 준공예정 3개월 전까지 심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건축주에게 기금납부 권고
설치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장식 설치 신고
설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여부 확인 -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주에게 미술장식 원형대로 유지관리 의무 - 시도는 1년 내지 2년마다 현장확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 - 미술작품의 위치이동, 작품변경, 분실, 훼손시 원상복구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철거 허용, 단 새로운 작품을 설치해야 함 - 필요시 심의 회부

부록

2.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서식¹⁾

1)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

(앞면)

[별지 제○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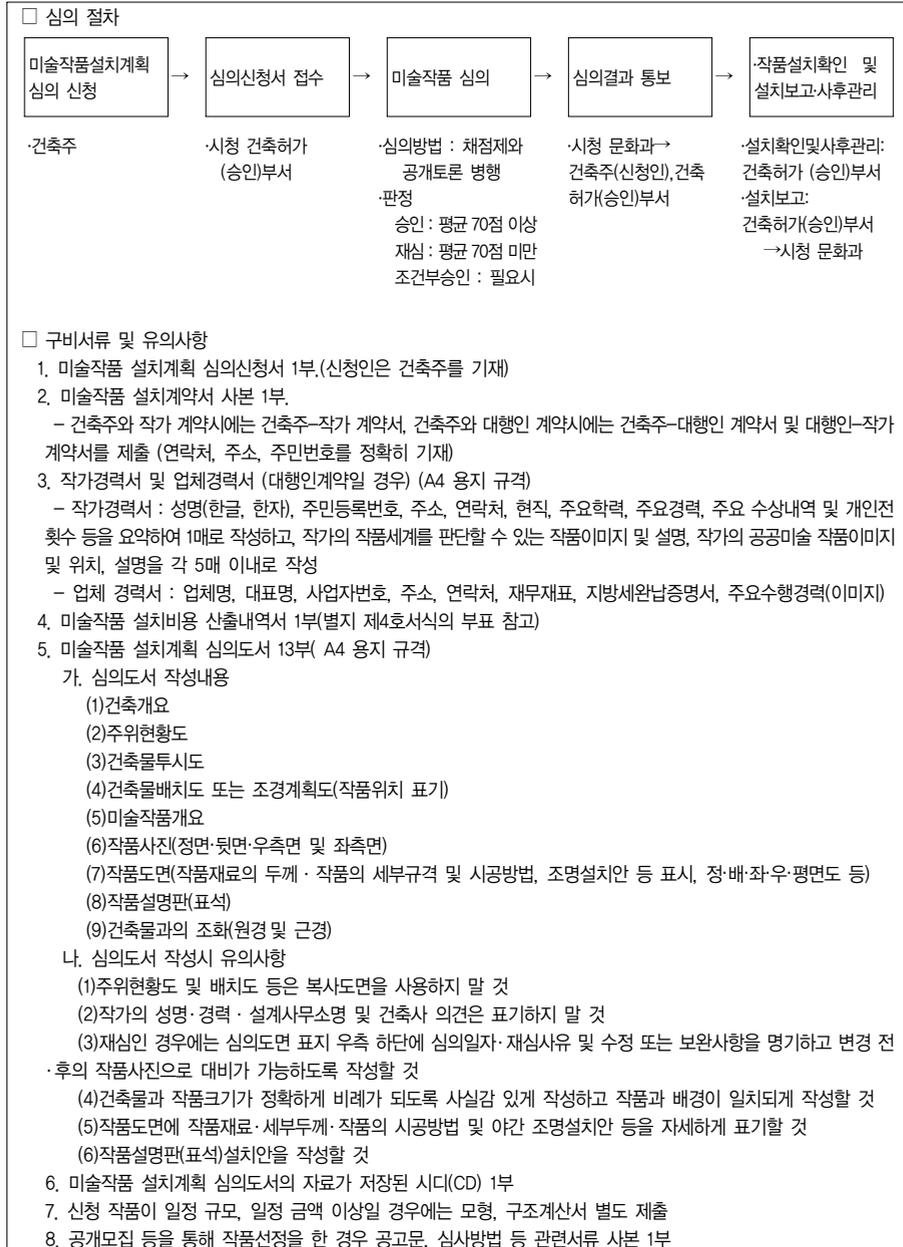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건축개요	위 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 주소 :		(☎)		
	지역지구					
	대지 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층 수	최고 높이		구 조		
	용 도	외장 재료		건축종별	신축/증축	
건축 허가일자	설계변경 허가일자		사용검사 예정일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전 화		
미술품개요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 미술작품 : 회화 점, 조각 점, 공예 점, 사진 점, 서예 점, 벽화 점, 미디어 점, 기타 점 * 환경조형물 :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총 점		
「○○○○○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0조에 의거 위와 같이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귀 하		
※ 구비서류 : 뒷면참조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전이므로 미술장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서식은 현행 법률 하에서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임

부록

(뒷면)



부록

3) 미술장식 설치계약금액 사용계획서

[별지 제○호 서식]

미술장식 설치계약금액 사용계획서

1. 작가명

2. 작품내역

- 작품크기
- 작품재질

3. 종당/호당가

4. 제작, 설치금액 내역

구분	세부내역	금액	비율	비고
작품창작비		천원		미술가 Artist Fee
작품제작비		천원		재료비, 보조인건비 등
운송설치비		천원		운송비, 설치장비비 등
심의행정비		천원		인쇄비, 모형제작비 등
공모진행비		천원		공개공모 증빙서류 첨부
대행수수료		천원		20% 이내
일반관리비		천원		10% 이내
기타		천원		
합계		천원	100%	

5. 참고 자료

* 유사 작품 판매 사례(관련 입증 자료 첨부)

부록

4) 미술가 경력서

[별지 제○호 서식]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미술가 경력서

프로젝트명

미술가명

□ 인적사항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현 직			

□ 작가경력

주요 학력 및 경력(전시/수상/작품소장/공공미술/기타 등)

* 1페이지로 요약

□ 작품경력

* 주요 작품 이미지(간단한 작품 내역/설명 포함 가능)

* 1~5페이지

□ 공공미술경력

* 주요 공공미술 이미지(간단한 작품 내역/설명 포함 가능)

* 설치 장소 정보

* 1~5페이지

부록

5) 대행인(대행업체) 경력서

[별지 제○호 서식]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대행자 경력서

프로젝트명

대행책임자명

일반사항

사업체명	(대표명 :)	사업자번호	
대행책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현 직			

대행책임자 경력

주요 학력 및 경력(전시/수상/작품소장/공공미술/기타 등)

* 1페이지로 요약

*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대행책임자 공공미술 수행 경력

* 주요 공공미술 수행 경력(간단한 작품 내역/설명 포함 가능)

* 설치 장소 정보

* 1~5페이지

대행책임자 기타 수행 경력

* 공공미술외의 다른 프로젝트 수행 경력(간단한 설명 포함 가능)

* 1~3페이지

대행책임자 현황

* 사업자등록증

* 재무제표

* 지방세완납증명서

* 직원 현황 등 기타 대행책임자의 현황파악이 가능한 자료

* 1~3페이지

6) 구조계산서 (일정 규모 이상 권장)

구조 검토 의견서

- 공 사 명 : [REDACTED]
- 작 품 명 : [REDACTED]
- 설치장소 : 지하주차장 상부(공개공지, 첨부 2참조)
- 하중계산결과 : 구조계산 시 적용된 계수 축하중 : 71.3 KN/㎡ (첨부2, 3참조)
 변경 전 작품의 계수 축하중 : 81.48 KN/㎡ (첨부2, 3참조)
 변경 후 작품의 계수 축하중 : 57.92 KN/㎡ (첨부2, 3참조)

○ 검토내용

상기 작품의 설치로 인하여 기 시공된 지하주차장 상부 구조물의 구조안전 및 건축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상부에 적용된 하중을 검토한 결과

- ① 변경 전 작품의 계수 축하중이 기 적용된 구조계산서의 계수 축하중보다 크므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변경 후 작품의 계수 축하중은 기 적용된 구조계산서의 계수 축하중보다 적으므로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첨부 1. 작품관련 조감도 및 도면
- 첨부 2. 작품설치 관련 도면 & 적용하중
- 첨부 3. 하중 비교표

2008 년 12월



(주) 구조 기술사 연합 법인 
 건축 구조기술사 [REDACTED]
 공 학 박 사 [REDACTED]

부록

7) 심의 채점표

[별지 제7호서식]

건축물 미술장식 심의 채점표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 적정성	예술성	공공성	사후관리	가산점	점수합계	심의판정	부결 및 조건부 사유
	10~20	30~50	30~50	10~20	10	100(+10)	가/부	
작 품 명		조형성 형식미 예술성 내용성 독창성	건축과 조화 공간(환경)과 조화 도시미관기여도 접근성, 소통성	안정성, 보존성 홍보, 교육, 문화 프로그램 계획	공 개 공 모 시 가산점		가결 조건부가결 부결	※ 가능한 자세히 기재

※ 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가격심의소위원회에서 할 경우 심의위원회에 부결을 권고할 수 있음

2011년 월 일

심의위원장 : (서명)

부록

8) 미술장식 설치 변경심의 신청서

[별지 제○호 서식]

미술장식 설치 변경심의 신청서

건축개요	위 치			건물명		
	건축주	성명 :	주소 :	(☎)		
	지역지구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최고 높이		구조		
용 도	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			미술장식품 심의일자		
건축설계자	주 소					
	사무소명	성 명	인	전 화		
변경내용 및 사유	변경 내용	<input type="checkbox"/> 위치이전 <input type="checkbox"/> 작품변경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철거				
	변경사유					
미술품 개 요	변경전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 미술작품 : 회화 점, 조각 점, 공예 점, 사진 점, 서예 점, 벽화 점, 미디어 점, 기타 점 * 환경조형물 : 점 (총 점)			
	총 가 액			설치일		
	변경후 (작품 변경인 경우)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작 가 명	인	작 품 명		작품가액
		전화번호		재료(색상)		규 격
총설치수		* 미술작품 : 회화 점, 조각 점, 공예 점, 사진 점, 서예 점, 벽화 점, 미디어 점, 기타 점 * 환경조형물 : 점 (총 점)				
총 가 액			설치예정일			
「○○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조제○항에 따라 미술장식설치변경 심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 인 ○○시장 귀하 </div>						
구비서류 : 뒷면 참조						

부록

9)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대장(요약 양식)

(앞면)

[별지 제○호 서식]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대장				
작품	① 작품제목		② 작가명	
	③ 작품재료		④ 작품형식	
	⑤ 작품크기		⑥ 작품 규모/ 범위	
	⑦ 계약업체		⑧ 작품가격	
	사진			원
	정면		배면	
	우측면		좌측면	
	작품 설치	⑨ 설치장소		⑩ 설치기간
⑪ 설치업체			⑫ DB 분류번호	
⑬ 보고대상			⑭ 관리실무자	
설치 전, 후 사진				
설치 전		설치 후		
별첨	구비서류 : 뒷면 참조			

부록

(뒷면)

〈작성요령〉

- ① 작품제목 : 작품의 이름을 기입
- ② 작가명 : 한국 국적은 한글로 외국인은 자국어로 기입
- ③ 작품재료 : 기본적인 재료 구분과 구체적인 명칭으로 기입
 - ☞ 기본적인 재료 구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건축물 미술장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사용하는 분류 기준을 사용
 - ☞ 구체적인 재료 작성 예시
 - ㉠ 돌(화강암) ㉡ 금속(스틸, 주물, 브론즈 등) ㉢ 나무(참나무),
 - ㉣ 혼합재료(브론즈, 대리석, 나무재료에 오일스텐마감) 등
- ④ 작품형식 :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 분수대, 상징탑, 기타
- ⑤ 작품크기 : 기본적인 가로×세로×높이(cm)
- ⑥ 작품규모 : 기본적인 오브제 조형물은 기입을 안 해도 됨. 가변적이거나 그 면적이 모호한 경우, 함께 시공한 주변 부지 면적을 기입(기본 m²) 무형적인 경우, 형식(커뮤니티 작업)이나 별도 도큐먼트 자료를 별첨.
- ⑦ 계약업체 : 작품을 계약한 업체 명, 대표자, 연락처 기입(계약 서류 복사본 별첨)
- ⑧ 작품가격 : 작품가격 기입
- ⑨ 설치장소 : 주소포함 정확한 장소를 설명(예 : 건물 앞 화단, ○○동 앞)
- ⑩ 설치기간 : 영구적(건축물과 관계없이 영구적인 작업 : 건물철거 시 작품 기증, 매각, 이전 가능) 반영구적(폐기시점 불분명 한 시한적인 작업) 일시적(템퍼러리한 작업으로 이런 경우 정확한 설치기간 기입)
- ⑪ 설치업체 : 작품을 설치한 업체 명, 대표자, 연락처 기입(계약 서류 복사본 별첨)
- ⑫ DB분류번호 : 공공미술설치 신고 후, 데이터 분류번호 기입
- ⑬ 보고대상 : 작품 설치 후 정기 점검 및 보고 대상 기입(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
- ⑭ 관리실무자 : 작품 설치 후 정기 점검 및 보고 실무자 기입(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등)

〈구비서류〉

- ① 작가 경력서
- ② 대행인(대행업체) 경력서
- ③ 기타 자료(CD, 관계자 연락처 등)

부록

10)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대장(상세 양식)²⁾

<p>Three Dimensional Work of Art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Record</p> <p>To be completed by artist for each completed artwork, in compliance with contract. (Please type or print neatly with permanent ink. Attach additional sheet as needed.)</p> <p>Please complete this form and check for accuracy. Return the completed form with a current resume or curriculum vita, the required photographic documentation and an artist's statement, etc. (See "Documentation" section of contract).</p> <p>A. ARTIST INFORMATION</p> <p>Artist Name : _____ Birth Date : _____ Social Security # : _____ Artist Address : _____ City/ State/ Zip : _____ Phone Number : _____ E-mail : _____</p> <p>B. ART INFORMATION</p> <p>Title of Work : _____ If untitled, please give identifying code/number for each piece. Medium(s) : _____ List all media in order of greatest amount of material to least, i.e., "bronze and glass" or "ceramic w/wood", etc. Dimensions : Height : _____ x Width : _____ x Depth : _____ or Diameter : _____</p> <p><i>Physical Description of the Art Work :</i></p> <p>Location of Artwork : _____ Date of Completion (copyright) : _____ How Long Was Work in Progress? : _____ Artist's Income after Expenses : _____ Estimate of Artist's Hours : _____ Date of Contract : _____ Date Installed/Accepted : _____</p> <p>C. METHOD OF CONSTRUCTION (Please provide details on techniques and equipment used.)</p> <p>C-1 Primary techniques used (i.e., assembled, carving, casting, thrown, welding, etc.): _____ C-2 Equipment used in construction/creation: _____ C-3 If applicable, describe any mechanical or electronic components used, their operation and requirements. Please include parts or product names and supplier: _____ C-4 Fabricator Information Fabricator : _____ Company Name : _____ Artist Address : _____ City/ State/ Zip : _____ Phone Number : _____ E-mail : _____ Description of Procedure/Job : _____ # Castings/ Runs : _____</p>	<p>Accession # _____ Project Name _____ Commission Amount _____ Bk # _____ Record # _____</p>
---	--

2) 미국 워싱턴 예술위원회의 공공미술 보존관리 프로그램 중 미술작품 관리대장 사례, 출처 : The Cambridge Arts Council,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2002

부록

D. MATERIALS**Materials/media used in the fabrication of the work. Be specific.**

(Please supply brand names of materials used when possible.)

- D-1 Principal materials used in fabrication. Describe in detail (i.e. specific metal, brand name, source, or manufacture, etc. Please attach additional sheets/information as required).
- D-2 Other materials used (e.g., screws, nails, glue, wood supports for hanging devices, etc.).
- D-3 Preparation of materials (specify processes and brands of paints/undercoating/coatings/stains; color-code lots and any processes, if applicable).
- D-4 Describe how final surface/patina was achieved.
- D-5 If a protective coating was applied, please describe (include product names and method of application).

E. INSTALLATION

- E-1 Describe any special installation considerations (i.e. viewing height, measured distance from relative objects, landscaping, base/drainage issues, etc.).
- E-2 If work is comprised of more than one piece requiring special assembly, supply documentation on how to install correctly (provide diagram, photograph or sketch).
- E-3 Can the work be exhibited out of doors? Yes/No

F. DESIRED APPEARANCE

- F-1 Describe in specific terms and, if necessary, with drawings or photographs, the physical qualities for which the agency should strive in order to maintain the artist's intent (e.g. matte rather than glossy luster, color of patina). Specifically, what may be an acceptable alteration in form, surface, texture, coloration as materials naturally age?
- F-2 If the work is site-specific, describe in detail the particular relationship of the work to its site, including any significant physical aspects of the site that, if altered, would significantly alter the intended meaning and/or appearance of the work.

G. MAINTENANCE/CONSERVATION INSTRUCTIONS

- G-1 Routine Maintenance :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regarding the methods and frequency of maintenance for the artwork (e.g., removal of dust, dirt; maintenance of protective surfaces; tightening adjusting, etc.)
- G-2 Special/Occasional Maintenance :
Provide detailed instructions and schedule for periodic maintenance and/or more extensive preventive measures (e.g. disassembly and inspection; lubrication/reapplication of protective sealers; repainting; cleaning, etc.) Please provide brand names/products.

H. ENVIRONMENTAL CONDITIONS

Describe existing environmental factors that may affect the condition of the artwork and any precautionary measures which should be taken (e.g., direct sunlight, extremes of rain or snowfall, temperature, air moisture or dryness, acidity of rainfall, flooding, wind, vibrations, pollutants, vehicular/pedestrian traffic animal interaction with artwork-including potential for nesting/droppings, human interaction with artwork-including touching, sitting, climbing, vandalism).

부록

I. CONCEPTUAL INFORMATION

Please provide conceptual information on the work, including subject/source of inspiration.

J. PLAQUE TO READ

"Title"	"year"	"Artist Name"
Acquired under the Wisconsin Art Board's Percent for Art Program		

K. DOCUMENTATION CHECKLIST

The following materials must accompany this form for your contract to be completed. Confirm Items.

- ____ A. Two sets of *at least* two slides representing different views of the work.
Total number per set : _____
- ____ B. Two sets of at least two Blk&W Glossy Photos (4"x6" or larger).
Total number per set : _____
- ____ C. Current Resume or Curriculum Vita
- ____ D. Photographer Release Form (if relevant)
- ____ E. Digital images ON DISK-for documentation/archival reasons, we cannot accept photocopies or printer copies.
- ____ F. Other items-please list all other enclosures

L. DELIVERY AND FINANCES

Date of Delivery /Installation : _____

Financial information

Purchase Price of Artwork : _____

Estimated Expenses : _____
(materials, equipment purchased/ rental, framing, shipping & insurance, studio rental, etc)

Income After Expenses: _____

Estimate of Artist's Hours : _____

_____ signed on this _____
Signature of "Artist" Date

_____ signed on this _____
Signature of Chris Manke, Percent for Art Coordinator Date

TO BE COMPLETED BY ARTS BOARD - upon accessioning into collection:

Confirmation of Documentation A. _____ B. _____ C. _____ D. _____

Agency Materials : Date Sent _____ Acceptance _____

Final Payment to Artist: Date Paid _____ Amount _____

부록

3. 건축물 미술장식 표준계약서 사례

1) 건축주와 미술가(대행인) 간 표준계약서 사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용역 계약서

1. 계약 명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용역

2. 설치 장소 :

3. 제작 및 설치기간 :

4. 용역 금액 : 일금 원정(W)부가가치세는 면제 또는 별도로 함

5. 용역대가의 지급

가. 선금금 : 일금 원정(W) 계약금액의 00%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일금 원정(W) 계약금액의 00%를 심의통과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종도금 : 일금 원정(W) 계약금액의 00%를 제작시작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잔금 : 일금 원정(W) 계약금액의 00%를 설치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선금금 및 1차 중도금은 합하여 심의통과 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임

* 계약 후 완료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선금, 잔금 등 2회로 지급하고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선금, 중도금, 잔금 등 3회 이상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6. 내역 :

작품내역 : 작가명, 작품명, 작품크기, 작품재질 등

* 관계기관의 미술작품 심의를 통과한 내역에 준한다. 또는 불임으로 작품 내역에 대해 별도 작성

7. 계약 이행 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일금 원정(W)

8.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계약금액의 5 % 일금 원정(W)
준공 후 1년간

9. 지체상금율 : 1일 지체시마다 계약금액의 0.3 %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계약조건 의하여 미술장식품 제작 및 설치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1년 00월 00일

“갑” : 발주자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이 사 : (인)

“을” : 작가
주 소 :
주민등록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부록

계 약 조 건

제 1 조(총칙)

“갑”과 “을”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계약에 있어 미술작품의 제작설치라 함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을 예술적, 공공적 가치가 있도록 제작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한 후 “갑”의 준공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용역의 범위)

“을”은 미술작품 심의 및 준공에 필요한 모든 행정업무 및 비용을 책임 처리한다.

제 4 조(권라의무의 양도 제한)

“을”은 이 계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 시공케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조(제작 중 협조사항 및 사전검사)

1. 본 작품의 제작은 “을”이 편리한 장소에서 제작하되 “갑”이 제작과정을 확인하고자 할 시 “을”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금액에는 작품제작과 작품제작 후 설치장소까지의 운반, 설치비, 작품의 좌대, 조명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제작의 경우 추가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작품의 설치를 위한 기초패드, 전기공사를 위한 배관배선 공사 등 미술작품 설치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한 공사는 “갑”이 부담한다.
3. 심의를 통과한 미술품이 규모나 형태상 구조검토가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은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갑”은 최상의 미술작품 제작을 위해 설계도면 등 “을”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갑”은 심의 통과 및 최상의 미술작품 제작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 및 인도)

1.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작품은 “갑”이 설치 전 사전 확인하도록 하고 인수하기 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2. “갑”은 “을”로부터 인수완료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갑”은 검사결과 설계도서 또는 제작도안대로 시공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4. “을”은 재시험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
6.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작품은 “갑” 또는 “갑”이 정하는 제3자에 의한 재질, 규격 등의 일반적인 육안 검수에 합격한 후 현장에 반입설치 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에 의한 준공검사 미통과시 사전검사 합격을

부록

이유로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7 조(소유권 이전)

동 계약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은 “을”이 “갑”에게 제작 납품 설치하여 쌍방입회하여 검수를 완료한 시점으로 한다.

제 8 조(품질보증)

1. “갑”은 “을”이 계약목적물을 설계도서 또는 제작 도안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작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제작 및 설치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을”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2. 어떠한 경우라도 품질상의 하자로 판명되었을 시에 을은 지체 없이 대체납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손해는 “을”이 전액 부담한다.
3. “을”이 불합격된 작품을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불합격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9 조(계약이행 보증금)

1.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납부 또는 제출한다.
2. 전항의 보증금 전체금액 또는 이행보증서의 제출이 지연될시 “갑”은 일방적으로 동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3. 이행보증서의 기한 내 미제출시 “갑”은 전항의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을”의 기성에서 동 보증금 상당액을 기성범위 안에서 우선 공제처리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4. 동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예치한 보증금은 “을”의 계약이행이 완료되고, 하자보수보증 증권을 “갑”에게 제출한 후 반환하며, “갑”은 하자보수보증서의 제출 시까지 동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0 조(변경계약 체결)

“갑”과 “을”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공기 및 공사금액 변경 등)할 경우 상호 협의기로 하며, 필요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1 조(하자담보)

1. “을”은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 이라 한다)을 인수완료 후 그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서 “갑”에게 납부한다.
 1. 보증보험증권
 2. 신용보증증권
 3. 국채 또는 지방채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5. 금융기관의 예금증서
2. “을”은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하자의 경우에는 “을”에게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비를 지급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 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항의

부록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4. “을”은 “을”이 계약이행한 분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 발생으로 “을”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서등의 제출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지급할 대가 지급분에서 동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해당액을 사유 발생 즉시 우선 상계 또는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5. “갑”은 “을”의 계약이행완료 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을”에게 지급할 대가의 지급을 보증금의 납부 또는 제출 시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동 납부 또는 제출이 30일 이상 지연될시 대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즉시 입금받기로 한다.(이로 인한 지연지급등을 이유로 “을”은 “갑”에게 지연이자 등 여하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6. 목적물의 하자가 “을”의 고의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하자보수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을”이 실액변상을 하거나 이를 보수한다.
7. 하자보수기간동안 하자발생액이 본 계약상의 하자보증금액을 초과 하였을 때에는 “을”은 이유 없이 초과금액을 “갑”에게 추가로 현금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이행지체)

1.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이행기한내에 제작 설치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한다)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할 설치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선 공제할 수 있다
4. “갑”은 제1항의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3 조(손해의 부담 및 배상)

1. “을”은 공사의 목적물이 “갑”에게 인도되기 전에 계약의 목적물이나 제삼자에게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전액 부담한다.
2. “을”의 기한 내에 미이행으로 인하여 “갑”의 전체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을 경우, “을”은 “갑”이 산출한 모든 손해액을 지체상금과 관계없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 14 조(공사의 변경, 중지)

1.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을”에게 서면으로써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5 조(계약해제)

1.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제작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을”이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기한 또는 제출기한 내에 미이행한 경우
 - 다.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계약목적물의 설치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 라. “을”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부록

- 마. “을”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설치를 완성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바. “을”이 사업경영상 중대한 사태(부도, 파산, 해산, 화의 신청, 회사 정리절차 신청 등)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 강제집행을 당해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아.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본 공사 관련 채권을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자. “갑”의 승인 없이 “을”이 자기의 경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
 차. 기타 “을”이 본 계약의 근본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내지 중요부분의 의무위반 행위를 할 때
-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써 발생한 손해금액이 제2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을”이 제4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해지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시공을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제 16 조(저작권 및 사용권)

- 이 계약의 완료와 동시에 미술작품의 사용권은 “갑”에게 양도된다.
- “을”은 본 미술작품 및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교육, 문화행사, 인터넷 상의 이미지 게재 등을 위한 인쇄, 촬영 등에 사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다. 단 미술작품의 복제,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갑”과 “을”은 별도의 저작물 이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갑”은 본조 2항을 위반하여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은 미술작품이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갑”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7 조(특수조건)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8 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 분쟁 발생 시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일 반 시 방 서

- 본 계약목적물은 예술작품으로 작가는 창의력과 예술성을 발휘하여 작품을 완성하여야 하며, 타인작품을 모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심의회에 통과되어 설치키로 확정된 작품 중 좌대 및 수경관 시설 또는 휴게기능시설 및 조명 시설 등의 작품부대시설은 계약당시 작성된 내역에 의거 “갑”이 별도 계약변경 시공할 수 있다.
- 본 계약금액에는 설계, 감리, 제작, 구조검토 혹은 구조계산, 운반, 기초(기초콘크리트) 설치 제잡비 등

부록

기타 미술품의 제작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동계약목적물은 운반 및 설치 전 과정에서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과의 접합부에도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본 미술품에 석재(石材)가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는 균열과 잡티가 없는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품용도에 맞는 최적의 석재(石材)를 사전 협의 승인 후 시공한다.
6. 미술품에 철재(鐵材)를 쓰는 경우 철재(鐵材)는 결함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팽택 마감 등 기타 마감처리 방법은 “갑”과 협의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7. 미술품에 쓰이는 각종 재료에 대해서는 사전 “갑”의 검수 승인하에 제작에 임하여야 한다.
8. “을”은 본 공사 주요 제작 설치에 있어 설치 전중후 사진을 촬영 원판과 사진 각 3부를 공사이행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을”은 본 작품을 제작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당초 “갑”에게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된 제작도안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미관 및 표현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 규격과 형태를 조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변경은 “갑”의 서면승락에 의하지 아니하면 변경 할 수 없다.

부록

2) 대행인과 미술가 간 표준계약서 사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제작·설치 계약서

000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용역 대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작가 ()이하 “을”이라 한다)는 성실성의 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명		
■ 설치장소		
■ 계약기간		
■ 발주처		
■ 행정업무대행사		
■ 작품제작자	작가명	
	작품명	
	재질	
	규격(단위:mm)	
■ 심의금액	일금()원	정

제 1 조(계약의 내용)

- 1) 위 공사의 원활한 작품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갑”은 발주처인 ○○○○○와 “을”간의 행정업무 및 작품제작, 설치, 관리감독을 대행한다.
- 2) “갑”은 총 계약 금액 일금()정()中 기획진행비, 행정대행비용 및 대행수수료로 00%를 제외하고 일금()정()을 작품제작, 설치, 창작비 등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의 계약금액에는 제세공과금(원천징수)이 포함되어 있다.

제 2 조(의무)

- 1) “갑”은 계약서에 따라 작품 행정업무진행 및 제작, 설치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2) “을”은 “갑”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갑”의 요청이 있을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 3 조(업무의 범위 및 방법)

- 1) “갑”은 작품컨설팅 및 심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제출된 자료 및 작품제작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합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① 작품제작, 설치계획 검토
 - ② 작품의 규격, 설치위치 등의 적합성 검토
 - ③ 변경사항 발생시 검토
 - ④ 심의 및 행정 업무

부록

제 4 조(대가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되 지불시기 및 방법은 발주처인 건축주와 대행인인 “갑”간의 계약에 준한다.

- 1) 계약금 : 계약금액의 00%(계약완료 후 30일 이내)
- 2) 중도금 : 계약금액의 00%(심의통과 후 30일 이내)
- 3) 중도금 : 계약금액의 00%(제작점검 후 30일 이내)
- 4) 잔 금 : 계약금액의 00%(설치완료 후 30일 이내)

제 5 조(소유권 및 저작권)

- 1) 이 계약의 완료와 동시에 미술작품의 사용권은 건축주에게 양도된다.
- 2) “을”은 본 미술작품 및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교육, 문화행사, 인터넷 상의 이미지 게재 등을 위한 인쇄, 촬영 등에 사용되는 범위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락한다. 단 미술작품의 복제,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 3) “을”은 미술작품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건축주 및 “갑”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의 해석)

- 1) 이 계약의 각 조항에 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및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주와 대행이간의 계약에 준하며, 그 외의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합의로 성립된 각종 서류는 계약의 일부로 해석 적용한다.

제 7 조(계약자의 서명)

- 1) 본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 “갑”과 “을”은 계약내용을 사전에 숙지, 이에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그 수칙에 명시된 제반 사항과 본 계약을 이행완료 할 것을 약정하며,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준수할 것을 확인한다.
- 2)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해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부씩 보관한다.

2011년 00월 00일

■갑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이 사 :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작 가 명 : (인)

부록

3) 시각예술가 권리 법령(Visual Artist Rights Act, VARA)에 따른 공공미술사업 관련 표준계약서 사례³⁾

Sample Provision One

1. *Signage*

The Artist shall prepare and install at the Site, pursuant to the approval and written instructions of the Public Art Authority, a plaque identifying the Artist, the title of the Work, the copyright symbol "©" and the date of completion. The Public Art Authority agrees to maintain said plaque in perpetuity.

2. *Maintenance, Repair and Restoration*

- a. The public Art Authority will use reasonable efforts to maintain the Work in accordance with written recommendations provided by the Artist. Notwithstanding the above,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determine whether repairs to, or restoration of the Work will be made.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consult with the Artist during the first (10) years after acceptance of the Work on all questions involving repairs or restoration, an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use reasonable efforts to obtain the Artist's services for the actual repair or restoration or supervision of such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be obligated to communicate with the Artist only at his last known address, notice of which must be given to the Public Art Authority as provided for herein.
- b. Any repairs on, and restorations to the Work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conservation, subject to the prior approval of the Public Art Authority and Artist as provided for herein.

3. *Alteration of the Work of the Site*

If alterations to the Site are made by the Public Art Authority, and said alterations will affect the character and appearance of the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notify the Artist of such proposed alterations and shall make reasonable efforts to consult with the Artist in the planning of such alterat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e Public Art Authority may at its discretion, relocate, remove from public display,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Work with no less than ninety (90) days prior written notification to the Artist provided, however,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not be obligated to communicate with the Artist except at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notice of which must be given to the Public Art Authority as provided for herein.

4. *Moral Right*

The Public Art Authority will not use the Work in any manner that would discredit the Artist's name or reputation as an Artist or which would violate the spirit of the Work. The Artist's sole remedy for breach of this provision shall be limited to the Artist's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and to require that his (her) name be removed from the Work.

3) The Cambridge Arts Council,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of Contemporary Public Art", 2002

Sample Provision Two

1. *Maintenance and Repair* : As a condition to final acceptance of the Work by the Public Art Authority, the Artist shall provide the Public Art Authority with a list of materials and media used, and a written description of the regular maintenance needs of the Work. Maintenance of the Work shall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rt Authority. The Public Art Authority Artist's approval or consultation, provided such work is performed in the Artist. If necessary repairs canno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Artist's specifications, or if the Artist has provided insufficient information judgement to effectuate necessary repairs.
2. *Removal or Destruction* : The Artist hereby acknowledges that the Work, when installed, will be incorporated within and made a part of the building in such a way that removing the Work from the building, or the destruction or modification of the building may cause the destruction, distortion, mutilation, or other modification of the Work. The Artist therefore agrees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have the absolute right to alter, change, modify, destroy, remove, relocate, move, replace, transport or transfer, in whole or in part, (such actions being referred to herein as "Alterations"), the Work at such time as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deem necessary in order to exercise its powers and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public works and improvements in furtherance of the Public Art Authority's operations.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make a good faith effort to provide the Artist with prior written notice of the Public Art Authority's intent to undertake any Alterations of the Work. To the extent the provisions of this Section ar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federal and state law,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the Artist hereby waives any right to preservation of the Work provided by those laws; provided, however, that the Artist shall retain any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pursuant to and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3. *Public Hazard* : In the event that the Public Art Authority determines that the Work presents an imminent hazard to the public, the Director may authorize the removal of the Work without formal approval of the Artist. The Artist shall be notified within thirty (30) days of any such action, an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then consider options for the final disposition, repair, reinstallation, maintenance or deaccession of the Work. In the event that the Work cannot be removed without being irreparably damaged or destroyed, the Artist hereby agrees to waive any rights the Artist may have under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the Visual Artists Rights Act, provided, however, that Artist shall retain any right to disclaim authorship of the Work pursuant to and under the conditions set forth in the State Art Preservation Act and Visual Artists' Rights Act.

부록

Sample Provision Three

1. Repairs and Maintenance

- A. The Public Arts Authority recognizes that normal maintenance of the Work will involve simple procedures and that such maintenance on a regular basis is essential to the integrity of the Work. The Public Art Authority is responsible for all routine maintenance required on a periodic basis as specified by the Artist in the technical and maintenance specifications record.
- B. The Public Arts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making all necessary repairs and restorations of the Work. The Public Arts Authority's responsibility for repairs and restoration of the Work is, by law, contingent upon receipt of adequate appropriations for this purpose.
- C. Where possible, the Artist shall be consulted as to his/her recommendations regarding repairs and restorations being made during the lifetime of the Artist. To the extent practical, and in accordance with accepted principles of professional conservation, the Artist shall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ccomplish repairs and restorations and shall be paid a reasonable fee for the services.

2. Changes and Resale

- A. The Public Arts Authority shall notify the Artist of any proposed alteration of the site or adjoining areas that would affect the intended character and appearance of the installed Work, and shall consult the Artist in the planning of any such alteration.
- B. Should the Work be intentionally destroyed, damaged, altered, modified or changed the Public Art Authorit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pense incurred in restoring the Work to its original form.
- C. If any change in the Work occurs through mutilation, vandalism or other damage or the Work is not fully restored to its original form in a timely manner, the Artist may elect to enter upon the site at the expense of the Public Art Authority, remove or obliterate the identification plaque referred to in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signature or other emblem identifying the Artist with the Work.
- D. The Public Art Authority agrees that if in the future, the Work is sold during the life of the Artist, the Artist shall be paid fifteen (15%) percent of the appreciated value of the Work.

부록

4.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관련 민원 Q&A

- 이 자료는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 업무 처리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08) 및 「민원사례 모음집」(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10. 6)에서 중요 질의를 선별하고 현행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제시하였음
- 법률이 개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택적 기금제와 관련된 예상 민원을 제시하고 개정안에 근거하여 답변을 작성하였음

1) 건축물의 용도 및 연면적 산정

[사례 1] 공장 내의 사무공간 포함 여부

□ 질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의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4호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법규의 적용을 주용도와 부속용도 각각의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산업단지 안의 공장부지에 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 공장(사무실)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말씀하신 사무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업무시설에 해당할 것으로 여겨지며, 건축허가 부서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아파트형 공장 또는 공장에서 부속용도로 설치된 사무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확하므로 해당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부록

[사례 2] 아파트형 공장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해당 여부

□ 질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2항 2호에서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 ‘부속용도’에 해당되는 경우 법규의 적용을 주용도와 부속용도 각각의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용도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공장’ 단일용도로 건축허가 된 아파트형 공장에서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되는지?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아파트형공장에서 부속용도로 설치된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명확하므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사례 3] 업무시설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이 포함될 경우

□ 질의

- 건축물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사업계획 승인되어 있고 층별 세부용도는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미술장식 설치시 노유자시설, 수련 시설은 제외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연면적을 합산합니다.
- 따라서 층별 세부용도가 상기 각 호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

부록

합산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4] 컨벤션 시설

□ 질의

- 미술장식품 설치 기준으로
- 1. 건물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3호 문화 및 집회 시설임
- 2.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시설로서 연면적에서 전시시설 및 그 부속실, 기계실, 공조실, 지하주차장, 발전기실, 전기실 등을 제외하였음
- 3. 컨벤션(대회의장, 소회의장 및 다목적시설) 시설의 면적을 전시시설의 부대시설로 간주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 면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음
- 4. 3항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오니 법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정하고 있는 각호 시설 중의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술장식 설치대상이 됩니다.
- 문의하신 컨벤션 시설이 대회의장, 소회의장 및 다목적 시설로 구성되었다면, 전시장 보다는 집회장 용도로 사용되므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문의하신 컨벤션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상의 용도별 시설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건축 관련 소관 관청 등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5] 노유자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될 경우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의한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은 미술장식의 설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해당 연면적의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부록

-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중 분양을 목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의원 등)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입주자를 위한 일부의 근린생활시설(사우나, 수영장 등)과 업무시설(사무실, 문화센터 등) 등은 노인복지시설의 부대시설로 보아 건축법상 용도를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미술장식 설치 해당 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 아니면 원래 목적대로 별도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보아 분양을 목적으로 한 근린생활시설 등과 면적을 합산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유자시설에 포함된 각종 부대시설 등이 건축법 시행령 상 어떤 용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미술장식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6] 동일 건축물에 업무판매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 질의

- (가) 주용도가 제1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로 1, 2, 3, 4층은 업무판매시설이며 5, 6층은 교육연구시설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6층의 면적은 미술장식품 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 (나) 주용도가 교육, 연구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로 1,2,3층은 업무판매시설이며, 4,5,6,7층은 교육연구시설이면 미술장식품제외 대상이 되는지요? 아니면 (A)의 사례와 같이 1,2,3층의 면적만 미술장식품 적용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바, 사, 아, 자목을 제외한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해당되며, 교육 및 연구시설용도는 당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가)의 경우 5,6층의 교육, 연구시설은 미술작품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의 경우 교육, 연구시설로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1,2,3층은 업무, 판매시설이므로 미술

부록

작품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현재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 및 연구시설이 이후 용도변경으로 설치 대상면적에 해당될 때는 이를 합산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7] 학생중앙군사시설 영외숙소(공동주택)

□ 질의

- 학생중앙군사학교 영외숙소(공동주택)에 미술장식 설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영외숙소(공동주택) 대지면적 33,465㎡, 건축연면적 20,896㎡
- 영외숙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공동주택이나 7호 숙박시설로 보아 건축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에 해당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3호 다목에 의한 군사시설에 해당하여 설치대상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답변

- 미술장식 설치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영외숙소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사례 8] 공동주택의 연면적 계산 방법

□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의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공금증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부록

합계, 즉 건물 한 동의 전체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며 ‘연면적의 합계’라 함은 각 동의 연면적 전체의 합계, 즉 하나의 대지 안에 수 개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 건축물 전체의 합계가 연면적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의 아파트 단지 안에 4동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 101동 : 8천㎡ - 102동 : 8천㎡ - 103동 : 8천㎡ - 104동 : 8천㎡
건축법상 연면적은 8천㎡ 이며 연면적의 합계는 : 3만 2천㎡

-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인지요?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건축물의 연면적을 구하고자 할 때는 아파트(공동주택)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는 귀하의 의견대로 하나의 단지 내에서 각 동의 아파트(공동주택)의 면적을 합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미술장식 설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9] 공동주택 단지 내의 부대·복리시설 포함 여부 및 하나의 대지 안의 건축물을 동일 건축물로 보는 근거

□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 상의 공동주택’으로 원칙적 문구상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존 회신 내용상으로는 포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1. 상기에서 말하는 공동주택 용도에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부대, 복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 2. 타 질의 회신 내용상 ‘부대시설은 주된 건축물의 용도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 3. 타 질의 회신 내용상 ‘건축법에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부록

□ 답변

- 1.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중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등과 같이 주된 용도(아파트)의 부수시설로 주택법에 의하여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부대시설은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용도(상가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4호 라목에서 부속용도는 주용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부수시설의 용도를 주된 용도인 공동주택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 3.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번 가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 1]

[사례 10] 숙박시설도 각 동의 연면적 합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지

□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숙박시설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 숙박시설의 경우 이격된 여러 동이 있을 경우 각각의 숙박시설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판단하여 각 동별로 적용하면 되는지요?

□ 답변

- 숙박시설은 공동주택과는 별개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이므로 여러 동으로 이루어졌더라도 단일 숙박시설이며, 숙박시설 전체 연면적을 합산하여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장식 설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미술장식 설치비용은 전체 숙박시설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부록

[사례 11] 종합휴양단지 전체를 하나로 보아 하나의 미술장식품 설치가 가능한지?

□ 질의

- 종합휴양단지로 그 안에 콘도(연면적 23만 m²), 호텔(2만1천 m²), 위락시설(7만7천 m²) 등 세부시설이 있는데,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개별 건축물 별로 설치를 해야 하는지? 휴양시설 전체를 하나로 봐서 하나의 미술장식품 설치도 가능한지?

□ 답변

- 콘도, 호텔은 숙박시설로, 위락시설은 위락시설로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입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단서에 공동주택의 경우만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질의하신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하는 개별 건축물 별로 미술장식품 설치 비용을 산정하여 당해 건축물과 연관된 지역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12] 향만시설 내 창고 해당 여부

□ 질의

- 향만시설로 지정 고시된 건축물은 일괄적으로 '판매 및 영업시설'로 분류되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향만시설로 지정 고시된 건축물 중 창고의 경우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답변

- 향만시설 중 창고 기능에 해당하는 면적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이 아닙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부록

[사례 13] 통신시설 면적 제외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제외 면적에 주차장, 기계실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개정 전기통신법에 일정 용도(업무시설이 많음)나 규모 이상은 각 층마다 통신실을 설치하라고 되어있다고 합니다. 통신실 면적은 다양하지만 한 층에 약 10m²인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실 면적도 기계실 등에 포함돼서 제외 면적이 되는지요? 아니면 오피스텔 건물의 통신실은 오피스텔 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미술장식 설치 대상 연면적에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은 제외한다고 열거하고 있는 바,
- 통신실은 미술장식품 설치 제외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현재 설치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이 이후 용도변경으로 설치 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14] 기계실의 범위 및 기계실과 공동 사용하는 복도 등에 대한 면적 포함 여부

□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항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이때 펌프실, 수조실도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에 해당합니까?
- 2.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만 미술장식 설치 제외 면적인지 아니면 유사한 용도의 실도 미술장식 설치 제외 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3. 한 층에 제외 시설인 기계실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의 면적은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인지, 아니면 미술장식 설치 제외 면적인지, 둘 다 아니면 기계실과 근린생활시설 비율로 나누어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을 계산하

부록

여야 하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기계실은 중앙제어 시스템과 각종 기기 냉동기·보일러·급수 펌프·소방펌프·메인 배관이 있는 곳입니다. 질의하신 펌프실과 수조실은 기계실이므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에 대해서만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질의하신 유사한 용도라 함은 그 용도가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에 해당하는지를 엄밀히 따져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 3. 제외 시설인 기계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면적은 엄밀한 의미에서 기계실과 구분되므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 면적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부록

2) 미술장식 비용 산정

[사례 1] 미술장식 절차 및 사군 지역 건물의 적용률

□ 질의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기준(해당건물의 규모) 및 설치비용과 사군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자세한 답변 및 관련 법규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및 설치비용과 사군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및 관련법규는
- 설치기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이 10,000㎡ 이상(주차장, 기계실 등 제외)
- 설치비용 : 건축물 연면적×표준건축비×적용비율
- 사군 관련 ‘건축비용’ 산정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함
-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사군 지역과 기타 지역이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므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2]를 참고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

[사례 2]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을 사업승인시점으로 하는지, 심의신청시점으로 하는지

□ 질의

- 아파트 시공 중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다른 회사가 인수하여 2008년 12월부터 재시공을 하여 200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상기 현장은 2006년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한 아파트 현장인데, 전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2009년에 미술장식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 이 경우 표준건축비는 2006년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2009년 심의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공사가 원청사(토지신탁)와 계약된 미술장식 설치금액은 2006년 표준건축비로 되어있습니다.

부록

□ 답변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위한 표준건축비 산정기준은 감정, 평가 심의 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계약금액은 미술장식 설치금액과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2009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사례 3]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에 대한 문의

□ 질의

- 건축허가가 2007년에 되었고, 설치심의를 2009년에 할 경우 표준건축비를 2007년으로 적용하는지, 2009년으로 적용하는지요?

□ 답변

-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 산정시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의 연면적을 적용하며, 표준건축비는 감정, 평가 심의 신청시점 당해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소관 지자체장에게 미술장식 감정, 평가를 신청하신 2009년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 4] 오피스텔의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2001년 3월에 허가를 받았는데 적용되는 요율이 어떻게 되며, 용도 중 오피스텔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적용되는 요율이 같은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오피스텔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미술장식 설치 대상 건축물입니다.

부록

- 건축물 미술장식 비용 산정은 <연면적(기계실 등 면적제외)×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요율(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적용)>을 적용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항

[사례 5] 공동주택 내 단지가 다를 경우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 금액 산정에 대한 질문
- 1. 동일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3개의 단지(A, B, C단지) 중 C단지가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C단지의 면적을 제외하고 산출하면 되는지 여부 및 C단지에는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2. 미술장식 설치대상 연면적 산출시, 제외되는 면적에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상주차장 면적도 포함되는지 여부
- 3. 미술장식 비용 산출시 최초 심의신청 연도는 2009년, 최종 설계변경 시점연도는 2008년인 경우 표준건축비를 어느 연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와 관련,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하나의 단지 내에서 각 동의 아파트(공동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으로 단지별로 연면적을 산정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각 동의 연면적 합산이 1만 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단지 C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단, A, B, C단지가 아니라 한 단지 내의 A, B, C동이라면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의 단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주차장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지상, 지하를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상주차장 면적도 설치가 제외됩니다.
- 3.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으로 산정하시되, 표준건축비는 미술장식품 심의신청 연도(재심의를 받은 경우, 심의통과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시면 되므로 2009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항

부록

[사례 6] 공동주택 내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될 경우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 금액 산정시, 사업승인시 건축물의 용도부분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이었다면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모두 1/1,000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주택 부분은 1/1,000을 적용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분은 7/1,000을 적용하여 합산하여 하는지 여부

□ 답변

-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같은 복리시설은 개별 건축물의 용도를 따라야 합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의 설치비용 요율(조례로 정하는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 다음 합산한 금액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항

[사례 7] 주상복합건축물의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주상복합건축물을 아래와 같이 건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 비율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가로 보아 7/1,000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면적 : 6,596.60m(연면적 28,342.98m²)
 -공동주택 : 14,771.14m²/상가 6,136.99m²
 -주용도 : 주상복합건물 (판매 및 영업시설, 위락시설/공동주택(아파트))
 -건축규모 : 공동주택 지하층 지상 15층 56세대 상가 지하 1층 지상 15층

□ 답변

- 주상복합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면적을 구분,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합산합니다.

부록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항

[사례 8] 공동주택 단지 내 주구시설의 적용요율 및 주구시설 해당분 별도 설치 여부

□ 질의

-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이지만, 아파트 대지 위치상에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별도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받아 지어지는 아래 주구시설의 경우 아파트처럼 1/1,000을 적용할지, 아니면 7/1,000을 적용할지?
- 이 경우 아파트와 주구시설이 별개 건물로 존재하므로 아파트 해당금액과 주구시설 해당금액을 별개로 하여 따로 작품을 설치해야 하는지?

- 주구시설의 용도 : 상가, 유치원
- 주구시설의 연면적 : 2,691,2425 제곱미터
(아파트 연면적 76,390,6212 주구시설을 합한 연면적 계는 79,081,8637 임)
- 주구시설 대지제공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됨

□ 답변

-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 공동시설인 관리사무소, 경로당은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아파트의 요율을 따라 1/1,000을 적용하여야 하나, 신축 후 개인에게 분양되는 주구시설 등은 업종에 따른 용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7/1,000을, 유치원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즉, 건축비용은 <아파트 연면적(관리사무소, 경로당 포함, 주구시설 면적 및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변전실, 발전실, 공조실 제외)×1/1,000+주구시설 중 상가면적×7/1,00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와 주구시설이 별개의 건물이더라도 한 단지 내의 건물이므로 아파트 해당금액과 주구시설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만큼의 작품(한 개든 또는 여러 개든 상관없음)을 아파트, 주구시설 등에 구매받지 않고 단지 내의 조화되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면 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5항

부록

3) 미술장식 제도의 운영기준 변경시 적용 기준

[사례 1] 조례 개정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 조례 적용 여부

□ 질의

- 1. ‘오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09.8.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1/1,000이상에서 3/1,000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포일 이전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1,000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3/1,000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 이와 관련하여 오산세교1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C-4블럭의 경우 최초사업승인을 ‘07.12.24일에 받았고 ‘08.08.11에 1차 변경 승인을, ‘09.12.10에 2차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 경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이 최초사업 승인을 받은 시점의 조례인 1/1,000이상인지 공포일 이후 2차 변경 승인이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3/1,000이상인지 문의드립니다.
- (2차 변경 승인의 경우 사업변경 내용은 연면적과 관련 없는 아파트 평면도 변경 관련이었음)

□ 답변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 설계 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와 효율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미술장식 심의를 이미 통과 후, 연면적 변경, 용도 변경 등 미술장식 비용 산정에 영향을 주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례 개정 이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심의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에 조례 개정 이후의 효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조례 개정 이후 미술장식품 전체를 재심의 받아야 한다면, 심의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에 조례 개정 이후의 효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다만, 조례 개정 이전에 일부 심의를 통과하였고 일부 작품이 부결되어 재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최초 심의통과 연도의 표준건축비에 조례 개정 이전의 효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록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5항

[사례 2] 건축허가 이후 여러 차례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방법

□ 질의

- 미술장식품을 설치코자 하는 대상건물은 1992.10.31에 연면적 19,694㎡, 지하4층, 지상7층으로 최초 건축허가를 획득하였고, 건축공사비는 122억 원이었습니다.
- 1994.7.30에 연면적 39,116㎡, 지하7층 지상7층으로 제1차 설계변경, 1996.4.16에 연면적 44,641㎡, 지하7층, 지상7층으로 제2차 설계변경, 1999.3.23에 연면적 91,592㎡, 지하8층 지상25층으로 제3차 설계변경, 2000.5.6에 연면적 92,900㎡, 지하8층, 지상25층으로 제4차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당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받아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물입니다. 그러나 본 항목은 1995.12.30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 폐지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시행일 이후 신축, 증축으로 되어 있어 법규 적용에 혼란이 있습니다. 또한 적용법규가 명확하지 않아 미술장식품의 가격산정이 곤란합니다. 아울러 가격산정을 한다면 최종 설계변경시의 연면적을 제외한 요율 및 표준건축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에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시(1972.8.14)는 권장사항이었으며, 동법 시행령 개정일(1995.7.13)이후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미술장식품의 가격산정은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 연도 요율>입니다.
- 연면적은 현행 법령의 개정 취지를 살려 여러 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의 변동이 발생한 최종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미술장식 비용은 심의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 및 요율을 적용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부록

[사례 3] 심의신청 후 운영기준 변경시 처리 기준

□ 질의

-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안건 접수 후 운영기준(승인기준)을 변경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을 당초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변경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 1) 2010. 01. 01 - 심의신청
 - 2) 2010. 02. 01 - 운영기준 변경
 - 3) 2010. 03. 30 - 심의위원회 개최시 적용되는 기준은?
- 또한 운영기준 변경일 이전에 접수되어 '부결'처리된 사항에 대해 운영기준 변경일 이후 재심의 신청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 1) 2009. 12. 01 - 심의위원회 부결
 - 2) 2010. 02. 01 - 운영기준 변경
 - 3) 2010. 03. 01 - 재심의 신청
 - 3) 2010. 03. 30 - 심의위원회 개최시 적용되는 기준은?

□ 답변

- 건축물 미술장식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통상 시행일 및 경과규정을 두고 이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건이 조례 변경 후 재심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미 부결되었던 미술장식 심의를 새롭게 신청하는 게 되므로 특별한 관련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조례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부록

4) 설계변경시 연면적 및 미술장식 비용 산정과 심의 여부

[사례 1] 설계 변경에 따른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미술장식품 설치금액 산정시 설계변경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산정방법이 맞습니까?

1. 연면적증가 : 처음 산정된 금액+(증가된 연면적×변경시점 표준건축비×변경시점 적용비율)
2. 연면적감소 : 최종연면적×당초 허가시 표준건축비×당초 허가시적용비율

□ 답변

- 건축물 미술작품 비용 산정시 연면적은 최종 설계변경시의 연면적을 적용하며, 표준 건축비는 감정·평가 심의 신청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액 산정 방식은 <최종 설계변경 연면적×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심의 신청 연도 적용비율>로 하셔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사례 2] 설계 변경시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설계변경시 미술장식품 금액계산에 관한 질의

예시) 1. 최초사업승인 2000년 3월	2. 최초사업승인 총연면적 - 1,100㎡
3. 기계, 전기실면적 - 100㎡	4. 설계변경 2002년 4월
5. 설계변경시 총연면적 - 1,200㎡	6. 설계변경시 증가된 연면적 - 100㎡
7. 2000년 표준건축비 - 1,072,000원/㎡	8. 2002년 표준건축비 - 1,145,000원/㎡
9.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1,000 적용	10. 최초심의접수년도 - 2002년

- 계산식(1안) : {(최초사업승인 연면적-기계, 전기 실면적)×2000년 표준건축비+설계변경시 증가된 연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
- 계산식(2안) : {(설계변경시 총연면적-기계, 전기 실면적)×2002년 표준건축비}×1/1,000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적용시 계산식 1안과 2안 중 어떤 식을 적용해

부록

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산정할 때 표준건축비는 심의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안 계산이 맞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3항

[사례 3] 연면적 변경에 따른 미술장식 비용 산정

□ 질의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산정 방법 요청
- 연면적 증가 : 처음 산정된 금액+(증가된 연면적×변경시점 표준건축비×변경시점 적용비율)
- 연면적 감소 : 최종 연면적×당초 허가시 표준건축비×당초 허가시 적용비율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실제 소요되는 건축비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의제된 비용입니다.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는 최종 설계 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사례 4] 여러 번 증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증축 연면적을 합산하는지 여부

□ 질의

- 부산시 사상구 소재 보훈병원이 2007년도 12,766.86제곱미터를 증축하였고, 2009년도에 9,425.75제곱미터를 증축하려고 합니다.
- 사상구청에서는 허가건별 면적을 합산하여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부산시

부록

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설계사무소 측에서는 “증축허가 건별로 다르니, 단일건만 적용해서 2007년도 증축분에 대해서만 미술장식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증축분을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단일건만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준공 전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준공 후 증축인 경우에는 최종 증축된 연면적에 대하여 미술장식비용을 산정하므로 1차 증축허가 연면적과 2차 증축허가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 만일 1차 증축허가 후 공사를 완료한 뒤 준공을 득한 다음에 다시 증축허가(2차 증축)를 받았다면 개별 건으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사례 5] 여러 번 설계변경을 받았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연도는?

□ 질의

-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을 받았을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연도는?
 - 허가. 03년. 연면적: 87,263.57
 - 1차 설계변경. 05년. 연면적: 111,899.50
 - 2차 설계변경. 06년. 연면적: 111,688.49
 - 3차 설계변경. 07년. 연면적: 110,696.34

□ 답변

- 금액 산정 방식은 <최종 설계변경 연면적 × 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 연도 적용비율>입니다.
- 설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건축비용을 산정하고, 표준건축비는 심의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부록

[사례 6] 공동주택 증축시 미술장식 설치대상 면적 및 심의 대상 작품

□ 질의

- 서울시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하는 공동주택사업의 미술장식품 금액 산정에 대해 문의합니다.

- 리모델링 전 총 연면적 : 32,906.79제곱미터
- 리모델링 후 총 연면적 : 54,548.36제곱미터
- 증가되는 연면적 : 21,641.57제곱미터

- 위와 같이 연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미술장식품 금액 산정 방식에 있어
 - 1) 리모델링 후 총 연면적인 54,548.36제곱미터로 총 설치비용 산정
 - 2) 증가된 연면적인 21,641.57제곱미터로 총 설치비용 산정 중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 또한 증축시 미술장식 설치대상이
 - 1) 증축 후의 총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지
 - 2) 증축시 증가되는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 또한 증축에 따른 심의 신청시 기존 증축 전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한 관리 규정이나 심의가 별도로 없이 증축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미술장식품만 심의, 설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준공 검사 및 사용 후에 리모델링하는 경우이고 기존에 건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미술장식을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증축으로 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된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가 넘을 경우에 미술장식 설치대상이 되며, 이때 설치비용은 증가된 면적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증가된 연면적 21,641.57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미술장식 설치의무가 있으며, 증가된 면적만큼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2조 1항

부록

[사례 7] 미술장식품 심의 후 설계 및 연면적 변경시 재심의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심의 후 건축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 변경 관련으로 설계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때 미술장식품 심의는 재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미술장식 비용 산정에 있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설계 변경에 따라 연면적이 증가되어 미술장식 비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재산정,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8] 미술장식 심의 후 설계변경으로 연면적이 늘어난 경우 추가로 미술장식을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 2000년도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년도에 준공예정인 건물입니다. 2002년도 고양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설계를 변경하여 연면적이 1,025㎡ 더 늘었습니다. 이 경우 늘어난 연면적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 답변

- 미술장식 설치심의를 있어, 설계 변경시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 × 심의신청 연도 요율>을 적용합니다.
- 따라서 늘어난 연면적을 합한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에 대해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심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록

[사례 9] 설계 변경으로 연면적이 축소된 경우 미술장식 심의 필요 여부

□ 질의

- 건설사업자 변경승인 후 지금에 와서 당초 사업량을 축소 설계변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업량이 축소되더라도 연면적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해당 됨) 이 경우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이 되어 자치단체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미술작품 설치심의를 있어, 설계변경시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심의신청 연도 표준건축비×요율>을 적용합니다.
- 축소 설계변경시에도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미술작품 설치대상이 되며, 해당 지자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항

[사례 10] 건축허가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 미달이었으나 준공 후 용도변경으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면적에 해당될 경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 질의

- 본 건물은 연면적이 약 18,000㎡되는 일반상업건물(지하3층, 지상5층)로서, 주차장과 기계 전기실을 제외한 면적이 약15,000㎡인 건물입니다. 당 건물이 건축허가당시 층별 면적 중 교육연구시설(학원)이 3,4,5층에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6,000㎡정도의 면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당 건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미술장식품 설치면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학원이 교육연구시설로 포함되어 당 건물이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물이 아니었으나 준공 후 학원이 분양과 입주자 변경의 이유로 용도가 업무 및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이 된다면(그렇게 되면 당 건물은 미술장식품 당연적용 건물이 됨) 미술장식품의 설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건축물중 용도가 학원인 경우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에 해당

부록

됩니다.(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학원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함)

- 교육연구시설은 각종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등으로 설치대상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설치대상 면적계산은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해 허가 신청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미술장식품 설치여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부록

5) 건축물 내 설치 장소

[사례 1] 호텔로비 및 연회장에 설치한 회화작품이 미술장식품으로 적합한지?

□ 질의

- 관광호텔 및 종합문화쇼핑센터 건물로 미술장식 설치 작품으로 건물 외부에 조각품 1점, 호텔 1층 로비에 회화작품 1점, 3층 연회장 로비에 회화 작품 4점, 호텔 객실에 판화작품 50여점을 설치할 경우
- 건물 내부 1층(호텔 1층 로비)과 3층(연회장 로비), 호텔 객실에 설치하는 회화 및 판화 작품이 미술장식품으로 적합한지 여부

□ 답변

- 미술장식 설치장소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일반적으로 미술작품 설치에 적합한 장소는 불특정다수의 대중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건축물 외부와 1층 로비 및 고객센터 등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조각품 1점과 호텔 로비의 회화작품은 호텔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이 접하는 공간이므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층 연회장 로비의 회화는 고객 접근성 여부에 따라 해당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호텔 객실에 설치하는 판화는 극히 제한된 이용객만이 향유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없으므로 설치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상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판단 결정사항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부록

6) 설치 가능한 미술장식품

[사례 1] 환경조형물로서의 분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 질의

- 건축물에 설치하여야하는 미술장식품의 범위 중에서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특별한 작가에 의하여 설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의 특성에 부합되는 분수대를 설치하면 되는지?
-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미술장식품의 종류에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수대가 환경조형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미술장식품의 종류 중 환경조형물로써 ‘분수대’설치와 관련 갖추어야할 어떤 조건, 미술가, 설계 등은 법적인 조건이 아니며 가격, 예술성, 해당 건축물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결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 환경조형물로써 ‘분수대’를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미술가에 대한 조건은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p>※ 시행령 개정안</p> <p>-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미술장식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환경조형물은 미술가가 창작한 것으로서 심의를 거친 것이어야 합니다.</p>	
<p>현행 시행령</p> <p>제12조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예술물</p> <p>2. 벽화·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p>	<p>시행령 개정안</p> <p>제12조④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p> <p>1. 회화·조각·공예·벽화 등 미술작품</p> <p>2. 미술가가 창작한 분수대·상징탑 등 환경 조형물</p>

부록

[사례 2] 무상 기증작품을 미술장식으로 대체 심의할 수 있는지

□ 질의

- 시청사 신축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를 위하여 미술장식품(작가 추정가액 : 2억5천만원)을 무상으로 기증받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중입니다.
- 이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장식품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한 그 추정가액을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 가격으로 대체하여 심의를 할 수 있는지.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축 및 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청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무상으로 기증받은 미술장식품으로 당해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대체하여 심의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사례 3] 외국 작가의 작품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 질의

- 미술장식 심의에 외국의 조각가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미술장식품의 설치작가의 자격요건은 법적인 요건이 아니며 해당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가격, 예술성, 건축물이나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결정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는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목적 외에도 한국 미술가에 대한 창작기회 확대와 순수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목적으로 갖고 있으므로 한국 미술가에 대한 의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부록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입법 취지

[사례 4] 건축가나 조경가의 작품으로 심의 신청할 수 있는지?

□ 질의

- 미술작품의 심의를 조경가의 조경시설물이나 건축가가 디자인한 작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도는 창작기회 확대와 순수문화예술의 진흥,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 미술장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미술가에 의해 창작되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술가 이외의 건축가, 조경가 등 비미술가의 심의신청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입법 취지

부록

7) 미술장식 비용의 사용 기준

[사례 1] 미술장식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 간 금액이 다를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및 미술장식 금액에 간접비, 부가세 등 포함 여부

□ 질의

- 건축주와 시공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는 미술장식품 설치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시공사가 지불해야 하는 산재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보험료와 설치공사의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관리비 등의 지출로 인해 두 계약(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간의 계약금액 다르게 됩니다.
- 그렇다면 연면적×심의연도 표준건축비×7/1,000으로 산정되는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은 두 계약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합니다.
- 또한 설치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와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 등 첨부 내역의 A-E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미술장식 가액은 건축주와 미술가(대행인)와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건축주와 미술가(대행인)간의 계약금액이 <연면적×표준건축비×요율>과 같거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술장식 계약시 하도급업체 계약금액에서 적용하는 낙찰률은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도급계약 금액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설치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간접비의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제작, 설치, 운송 및 이에 따른 보험료 등 미술작품 제작, 설치와 관련된 비용은 미술장식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건축주와 미술가(대행인)간의 계약의 형태와 내용에 따라 면제로 하거나, 별도로 하여야 하며, 미술장식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록

[사례 2] 공모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심의가 가능한지

□ 질의

- 업무시설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미술장식 설치비용이 $\langle \text{연면적} \times \text{표준건축비} \times 7/1,000 \rangle$ 으로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여러 작품의 공모를 통해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 5개의 작품이 지원하여, 1작품 당 4백만원씩 출품비용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선정된 작품에 대해 8천만원의 미술장식품 설치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설치비용을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서 미술장식은 각호의 조형예술물과 환경조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금액은 최종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에 사용되는 금액을 말하며,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각 출품작들에 지원되는 비용은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개정 예정인 표준조례안

- 개정 예정인 표준조례안에서는 미술장식 가격심의를 현실화하기 위해 미술장식 심의신청서 <미술장식 설치계약금액 사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개공모에 한해 공모진행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공모진행비를 인정받으려면 공개공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록

8) 공모를 통한 미술장식품 설치시

[사례 1] 현상공모 작품에 대해서는 심의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 질의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제3항 규정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필요한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자치단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또는 공기업체에서 현상공모 방식으로 작품을 선정, 자체적인 심의 위원회에서 우수작품을 심의한 작품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 답변

-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작품은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해당 건축물 또는 환경과의 조화, 기타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되어야 하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판단합니다.
- 따라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현상 공모전 입상작을 미술장식품 설치절차에 따른 작품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 공개공모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 일정 정도 가점을 주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하나, 심의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 공개공모에 대해 가점을 받으려면, 심의시 공개공모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부록

[사례 2] 공모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 질의

- 사기업에서 10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작품으로 심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공모는 공개공모와 제한공모로 구분됩니다. 귀하는 10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므로 지명공모를 한 것에 해당됩니다.
-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공모 가점제를 운영하는 조항을 갖고 있는 경우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 가점제가 있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공개공모에만 적용하고 제한공모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부록

9) 심의에 부결되어 재심을 하는 경우

[사례 1] : 부결된 작품으로 재심의 신청 가능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심의를 통하여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작품으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절차 및 심의와 관련된 사항 등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결된 건에 대하여 동일한 작품으로 재심의 여부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 참고로 미술장식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면 사유 및 문제점이 있을 것이므로 재심의 신청 전에 동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입니다만, 부결사유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이 소명자료를 인정할 지 여부와 재심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사례 2] 일부 부결된 미술장식품을 차기년도에 재심의 신청할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 시점

□ 질의

- 2008년도에 미술장식 심의 신청시 1개의 건축물에 3개의 미술장식품 심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3개 중 2개는 가결되었고, 1개는 부결되었습니다.
- 부결된 1개의 미술장식품을 2009년도에 심의 신청할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시점은 언제인지요?

□ 답변

-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비용을 위한 표준건축비 산정 기준은 감정, 평가 심의 신청 당해 연도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동일 건축물에 설치되는 다수의 미술장식품 중 일부는 통과되고 일부는 부결

부록

되어 재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최초로 심의가 통과된 연도, 즉 2008년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부록

10)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위치변경

[사례 1] 미술장식품 이동 설치 심의사항의 범위

□ 질의

- 해당 건물 내 동일한 벽면에 작품 3점을 나란히 설치할 계획으로 미술장식품 심의를 득하였으나 해당 벽면의 중앙에 소화전이 위치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3점 중 1점을 당초 계획되어 있던 벽면 바로 옆(2미터 내외)에 설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이처럼 같은 엘리베이터 홀 공간 안 2미터 내외에 부분 이동 설치하게 되었는데 별도의 위치변경 심의를 득해야 하는지요?

□ 답변

- 설치된 미술장식의 위치 변경이 당해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단,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 없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질의하신 내용으로 위치 변경의 경미성을 판단하기 충분치 않습니다. 동일한 벽면에 3점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것과 2미터의 근접거리의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1점이 다른 벽면에 설치되는 것은 시각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사례 2] 심의 받은 미술장식의 변경 및 이동 설치시 재심의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원안가결 승인을 받아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심의 받은 위치에서 옆으로 이동하여 설치하였으며(조경 및 아파트 주민 통행 불편이 초래되어 약간 이전됨)
- 미술장식품도 당초 심의 받은 디자인보다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조각품인데 크기

부록

가 약 30cm 정도 차이가 나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변동이 없음)

- 이런 경우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준공검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심의를 신청할 당시의 디자인과 위치 등에 대하여 예술성, 건축물,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의 받으신 사항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미술작품의 위치 변경 또한 당해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 위와 같은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는 심의 없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 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디자인과 위치의 변경 정도가 얼마나 경미한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미술장식의 설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관 지자체에 문의하신 후 필요시 재심의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사례 3] 준공 후 미술장식의 위치 변경 및 축소시 심의 여부

□ 질의

- 아파트 단지 내 미술장식품 이전 관련 문의입니다.
- 우리 시에서 미술장식품 심의를 시작한 것은 2006. 4월이며, 미술장식품 위치 변경 및 축소 문의를 한 아파트는 2004년 준공된 아파트로 당시에는 우리 시에 미술장식 심의위원회가 없었으므로 건축위원회에서 동 사항에 대해 처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미술장식품 이전과 관련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미술장식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조례에 관련 규정 여부를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하신 사항은 미술장식품의 단순하고 경미한 이전이 아니고 중요한 위치 변경 및 축소에 관한 건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록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2항

[사례 4] : 설치된 미술장식품의 위치변경을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한지?

□ 질의

- 미술장식품이 설치된 후, 준공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미술장식품의 위치를 10미터 가량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 준공까지 끝난 작품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

-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은 예술인의 창작기회 확대를 순수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삭막한 도시환경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는 미술장식심의회가 미술장식의 가격, 예술성 뿐만 아니라,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설치된 미술장식의 위치변경이 당해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치변경과 관련하여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미술장식심의회의 심의 없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고 위치를 변경해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부록

11)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작품 변경

[사례 1] 도시계획으로 미술장식이 철거된 경우 다른 미술장식으로 재심의시 표준건축비 산정 기준 연도를 준공년도로 해야 하는지 심의신청 연도로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 2000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미술장식품은 외부벽면에 부조작품으로 20미터 정도 되는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 하지만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 확장으로 작품이 철거되었습니다. 원래는 작품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였으나 20미터가 넘는 부조작품을 따로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 그래서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에서 다른 작품으로 다시 설치하기로 하였는데 설치비용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설치당시에는 2000년 표준건축비로 설치되었는데 지금은 2009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니 비용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이 경우 신축건물도 아니고, 기존 작품이 도시계획상 문제로 작품이 철거되고 새로운 작품을 설치하는데 이전 금액으로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 미술장식의 철거가 건축주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미술장식을 재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미술장식을 철거하기 전에 도시계획에 따른 철거사유를 명확히 하여 변경심의 신청을 하여 심의위원회의 철거 허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민원인이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미술장식을 이미 철거하였다면 원상복구 내지는 동일한 가액의 미술작품으로 변경 설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미술장식 변경에 따른 설치금액은 기존 미술작품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변경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부록

[사례 2] :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의무를 별도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 건축주의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및 사후관리 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간유예 가능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관련 문의드립니다.

- 1) 아파트 벽화를 다른 그림으로 변경
- 2) 부산시 답변 - 변경된 그림이 단순하여 심의에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원상복구를 권함
- 3) 아파트 의견 - 사후관리를 몰랐음(이번 공문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았음), 원상복구를 하겠으나 그동안 구청의 안내를 받지 못한 것과 원상회복 비용이 커서 주민들의 반발이 크므로 도색 예정인 2년 후 같이 하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됨

- 위와 같은 경우 아파트 측이 요구하는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 유예 결정 여부를 부산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1항에 의하면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2항 원상복구나 철거, 변경시에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해당 행정청에서 주기적으로 건축주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주지시킨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미술작품 설치 의무 이행시 사후관리 의무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미술작품의 변경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였으므로 원상복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단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된 미술작품으로 사후심의를 거쳐, 변경 승인 또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원상복구 결정 여부를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부록

12)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 : 분실, 훼손, 철거

[사례 1] 분실한 미술작품에 대한 원상복구

□ 질의

- 소유하고 있는 미술장식 중 도난, 분실한 1점을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청의 명령의 타당성 여부

* A건축물의 미술장식 설치 법적 금액 : 금 277,400천원
 * 설치한 미술장식 7점 금액 : 금 377,100천원(7점)
 * 분실한 미술장식 1점 금액 : 금 27,000천원(회화 1점)

- 건축주 입장 : 분실한 1점의 가액(27,00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설치의무금액인 277,400천원을 충족하므로 분실한 1점에 대한 원상회복이 불필요
- 행정청 입장 : 사용금액과 관련 없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승인을 받아 설치한 미술장식이므로 원상회복하여 사후관리의무를 이행

□ 답변

- 미술장식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지자체 장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조치하도록 하며,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미술장식이 분실된 사유가 먼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분실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이 복구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미술작품 심의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금액 이상으로 심의위원회의 감정·평가를 받은 미술작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377,100천원(7점)으로 받았다면 사후관리 대상도 377,100천원(7점)에 해당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부록

[사례 2] 자연적 원인으로 파손된 미술작품에 대한 보수, 철거 여부

□ 질의

- 2004년에 준공된 200세대도 되지 않는 아파트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였습니다.
- 미술장식의 재질이 범람으로 된 공예품이라 계절별 온도차 등으로 인하여 균열이 가고 파손되어 떨어져 내리고 깨어진 조각이 돌아나 관리자의 손을 찌르는 등 입주민 및 아동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의견은 미술장식을 철거하여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5천여만 원의 추가 비용을 들여 재설치나 보수를 할 여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미관을 해쳐가며 차폐시설을 하여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을 수도 없는 일이라 질의하오니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 훼손시의 조치)에 의하여 보수나 재설치를 해야 하는지?
- 2. 자연적인 원인으로 파손되었으니 상기조의 규정에 의거 철거를 해도 무방한 것인지?
- 3. 만약 보수나 재설치를 하여야 한다면 상기조의 단서인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답변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철거, 훼손, 용도변경 및 분실된 경우 지자체장이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치단체는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해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건축주의 신고 등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건축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항의 경우 건축주의 귀책사유 여부 및 훼손의 정도와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현장 점검 후 필요시 철거 또는 보수 여부에 대해 해당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4항

부록

[사례 3] 권장사항이던 '95.1.5이전에 설치된 장식품이 훼손된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

-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1.5일 이전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화를 하여야 하는지요?
- 문화환경으로 꾸미고자 하는 미술장식품 제도의 취지 및 통상 사후관리 규정은 이전에 이루어진 사안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적용하고 있음

□ 답변

- 동 법 경과조치 규정에 적용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 관례적용을 하여 미술장식품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1995.1.5일 이전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현행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원상회복 의무화하는 것은 법령의 유추 확대 해석금지와 또 다른 규제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바, 당시대 로 건축주에게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사례 4] 설치된 미술장식품을 철거할 수 있는지, 이전할 경우 절차, 비용부담은?

□ 질의

- 아파트 내의 미술장식품이 1층 앞에 설치되어있는데 1층에 사는 주민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아파트 베란다로부터 2m 떨어져 설치되어 있음) 철거 및 이전을 요구하는 바, 이런 경우
 1. 이전한다면 절차는?
 2. 이전한다면 이전비용 부담은? (현재 입주자, 아파트 시공자)
 3. 철거 및 폐쇄는 가능한지?

□ 답변

- 1. 미술작품을 이전하려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이전은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에

부록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2. 이전시는 준공검사가 끝나고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므로 아파트 시공자보다는 현재 입주자가 이전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3. 현행 법률에서는 미술장식을 철거하거나 폐쇄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항

※ 시행령 개정안

-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고, 심의를 거쳐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를 한 경우, 기존 미술작품과 동일한 금액의 새로운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시행령 개정안
제15조(미술장식의 철거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제15조⑤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미술작품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도지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는 제13조 제3항에 의하여 통보 공개된다. ⑤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손상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 승인 시 설치한 미술작품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4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는 사도지사가 제13조에 따라서 건축주가 새로운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록

13) 미술장식 설치 대신 기금 출연시

이 절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될 경우를 예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법 개정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기금 납부 금액 산정 방식

□ 질의

-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기금으로 출연할 경우 기금 납부 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기금 납부를 선택할 경우, 기금 납부 금액은 설치 금액보다 낮으며 기금 납부 요율은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금 납부 금액 산정방식은 <별표2>에서 정한 설치요율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금액 × 1백분의 70)입니다. [별표2]에서 정한 미술작품 설치요율은 공동주택, 시군지역 건축물, 그 외 건축물로 구분되어 다른 요율이 적용되며, 시도 조례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니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별표 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제12조제5항 관련)

1.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2.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미술작품 사용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부록

[별표 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대신 기금에 출연하여야 할 금액(제12조제6항 관련)

-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별표2]의 제1호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임대주택법 상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건축물 소재지	기금출연 금액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지역	[별표2]의 제2호 가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	1) [별표2]의 제2호 나 1)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별표2]의 제2호 나 2)에 의한 미술작품 설치금액의 1백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사례 2] 기부 납부 절차

□ 질의

- 기금납부시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기금출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다는 기금출연약정서를 사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사도 지사가 그 사실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통보하게 됩니다.
- 기금출연은 약정서에 정해진 시기에 해야 하며 늦어도 준공 30일 이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 기금출연을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5일 안에 기금출연확인서를 사도 지사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제5조의3(기금출연 절차방법)①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영 제2조제6항에 의한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한다는 기금출연약정서를 사·도·지사를 통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연은 준공 30일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출연일로부터 15일 안에 기금출연확인서를 사·도·지사를 통하여 건축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록

[사례 3] 지정 기부금으로 납부가 가능한지 여부

□ 질의

- 기금납부시, 기금을 특정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기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납부되며 지정기부금으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 기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납부되더라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 진흥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례 4] 기금납부금액으로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 가능 여부

□ 질의

- 미술작품을 설치하지 않고 기금납부를 할 경우, 해당 건축물에 기금납부금액으로 미술작품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일반기부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기금납부와 함께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와 관련된 모든 의무와 권리가 종결됩니다.
- 따라서 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해당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용 규정에 따라 공공미술 진흥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례 5] 기금납부시 세제 혜택 여부

□ 질의

-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부금을 내면 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는 것으로

부록

알고 있습니다.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법정 기부금에 대한 세제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 납부시 법정 기부금 인정에 따른 세제감면

- 법인 : 순이익의 50% 한도, 기부금 전액 손비처리
- 개인 : 소득금액의 100% 한도,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 미술작품 설치비용을 기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례 6] 심의 부결로 인한 기금납부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 질의

- 미술작품 심의 신청을 위해 A작가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10%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술작품 심의에 2회 부결되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임박해져서 부득이하게 기금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작가에게 지급한 계약금 10%를 제외한 상태에서 기금 납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부가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

- 건축주 직접설치시에는 해당 요율을 적용하며, 기금납부시에는 할인된 요율을 적용합니다. 심의 부결로 인해 기금납부를 선택하신 경우에도 최초의 기금납부 요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작가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하고 요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의 반환 등의 문제는 건축주와 A작가간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이 안 될 시에는 민사상의 문제로 동 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